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01-01

#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도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전 영 주**

2013년 12월 9일

| 연 구 진 | |
|---|---|
| **책임연구원** | 전 영 주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 |
| **공동연구원** | 아 영 아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 | 이 경 희(금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 **연구원** | 정 수 연(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과 조교) |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 1부 연구보고서


요약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내용과 방법 ····· 3
1. 연구내용과 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 2장 선행연구 ····· 6

제 1절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 ····· 6
1.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 6
2. 인권교육 ····· 8
제 2절 학교폭력과 인권 ····· 11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11
2.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 14
3. 학교폭력과 집단역동 ····· 16
제 3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18
1. 정부 주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19
2. 시도 교육청 주도 학교폭력 예방 사업 ····· 24
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 28

제 3장 프로그램 개발 ····· 35

제 1절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인권요소 ····· 35
제 2절 프로그램 원리 및 구성방법 ····· 42
제 3절 프로그램 내용 및 현장적용 ····· 43
1.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 43
2. 프로그램 현장 적용 ····· 49

제 4장 결론 ····· 51

## 제 2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표 (모듈 1) ····· 53
프로그램 구성표 (모듈 2) ····· 54
프로그램 활동지침 ····· 55

**모듈 1. 인권감수성 높이기 ····· 57**

1회기-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 59
활동 1. 인권레알사전 ····· 62
활동 2. 나의 인권온도는? ····· 71
2회기-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 84
활동 1. 인권적 관점에서 보는 학교폭력 ····· 86
활동 2.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89
활동 3. 학교폭력으로 침해되는 인권 ····· 95
3회기- 인권감수성을 찾아서 ····· 107
활동 1. 학교폭력 없는 교실에서 생활할 권리 ····· 110
활동 2.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 114

**모듈 2. 소통과 화합 ····· 125**

4회기- 인권은 소통이다! ····· 127
활동 1. 감정읽기 ····· 129
활동 2. 감각소통 ····· 133
활동 3. 배려와 나눔 소통 ····· 136
5회기-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 147
활동 1.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150
활동 2. 교실조각과 교실 재조각 ····· 156
6회기-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 ····· 172
활동 1. 인권 노래자랑 ····· 175
활동 2.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 ····· 180

**참고문헌 ····· 191**


## 제 3부 부록


세계인권선언문 ····· 199
아동권리협약 ····· 204
인권영화 및 TV 프로그램 목록 ····· 218

# 표 목차

<표 1> 프로그램 구성과 활동 ····· iii
<표 2>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인권요소와 예방 프로그램 활동 ····· iv
<표 1-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반영될 주요 인권요소 ····· 4
<표 2-1>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약 ····· 14
<표 2-2> 학교폭력 행위자 유형별 빈도 ····· 18
<표 2-3> KEDI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내용 ····· 19
<표 2-4> 경상북도 및 대전시 교육청 내 우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 ···· 25
<표 2-5> 중학교 역할극을 통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 29
<표 2-6> 집단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 프로그램 ····· 30
<표 2-7> 공감중심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 32
<표 3-1> 프로그램에 반영될 주요 인권요소 및 영역 ····· 35
<표 3-2> 각 인권요소와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 ····· 44
<표 3-3> 모듈 1의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목표 ····· 47
<표 3-4> 모듈 2의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목표 ····· 48

# 그림 목차

<그림 1>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과정 ····· ii
<그림 3-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정 ····· 43

제1부

# 연구보고서

# 요약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가장 일상적인 인권침해 현상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이 청소년 개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교육권, 평화권을 침해하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친구를 희생양 삼아 스트레스를 풀거나 장난삼아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 및 치료 등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야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이 회복되며, 학교폭력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권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재조명하고 학교폭력의 2/3 이상이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학급단위로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실천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및 인권교육활동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급단위, 방관자 중심,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강의식 교육이 아닌, 동영상, 만화, 퀴즈,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성되었고, 그와 연계된 토론거리를 제공해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주도 방식으로 인권과 학교폭력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권의 맥락에서 학교폭력을 인식하고, 폭력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권 관련 문헌, 학교폭력 예방 문헌 및 관련 포털사이트를 검토하였으며, 우선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행복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등 8가지의 주요 인권요소를 추출하고 이 요소들을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총 6회기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네 학급 15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 면접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프로그램 전반에 가족치료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권관련 활동을 포함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협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각 회기 마지막 부분에 가정에서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넣어 교사가 과제나 가정통신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학생 집단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행자 요인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참여자 학생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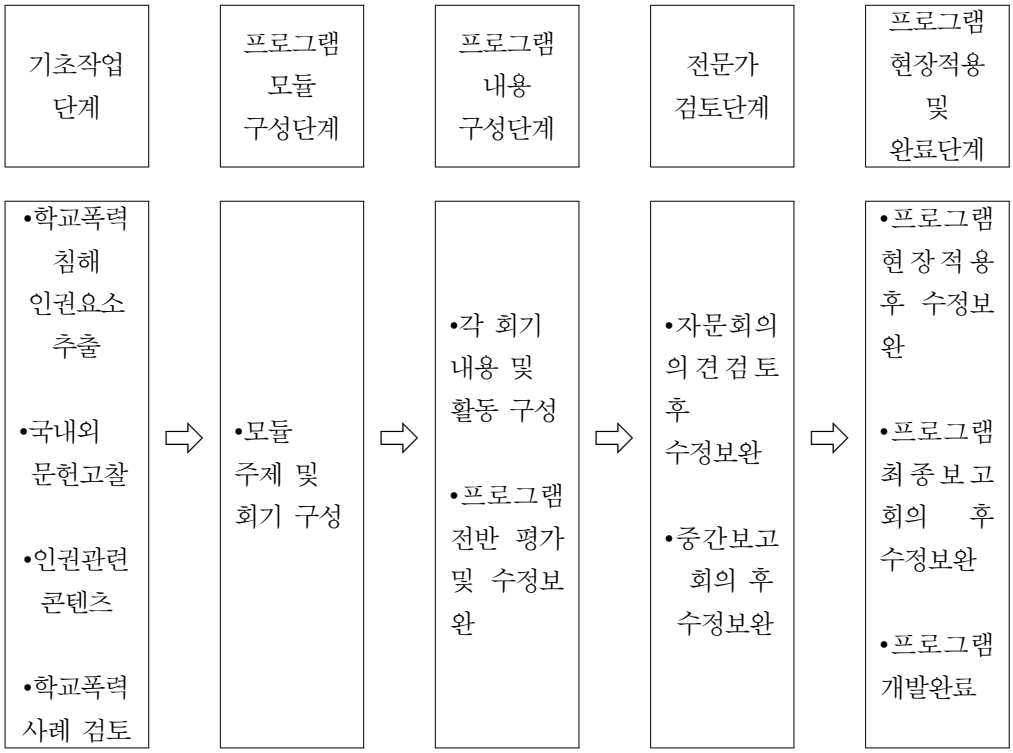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정

제1모듈(1~3회기)은 학교폭력이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도모하며 인권감수성 증진을 유도하는 인지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거나 퀴즈를 통해 인권과 학교폭력에 대해 인식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2모듈(4~6회기)은 감정나눔, 대화법, 또래조정, 교실조각, 인권노래자랑 등 학급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 별로 2~3개의 활동을 넣었으며, 각 활동은 기초, 선택, 심화로 나누어 프로그램 운영자가 학습자의 유형과 상황(중/고등학생, 남/녀, 학교폭력 위험수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회기 별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1회기는 '소중한 너의 나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바로 알고 학교폭력과 인권의 관련성을 짚어보았다. 2회기는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에서 침해되는 인권요소를 인식하고, 장난과 폭력, 차이와 차별 간의 미묘한 차이와 상황을 다루었다.

3회기는 '인권감수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에서의 집단역동과 개인의 참여 역할 유형을 인식하도록 하고, '잠깐맨'과 '계속맨'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모하였다. 4회기는 '인권은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공감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감각소통을 경험해보며, 배려와 나눔의 소통방법을 배우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5회기는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또래조정과 교실조각을 경험해보면서 학생청소년 자신이 폭력해결의 주체임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6회기는 '웰컴 투 존중교실'이라는 주제로 협력과 화해, 용서를 도모하는 활동을 진행해 학급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구성원들이 함께 인권을 지킬 때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표 1> 프로그램 구성과 활동

| 모듈 | 회기 | 활동 |
|---|---|---|
| 1. 인권감수성 높이기 | 1.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 1. 인권레알사전<br>2. 나의 인권 온도는? 동전의 양면 |
| | 2.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 1.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학교폭력<br>2.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br>3. 학교폭력으로 침해되는 인권 |
| | 3. 인권감수성을 찾아서! | 1. 우리 모두의 책임인 학교폭력<br>2.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
| 2. 소통과 화합 | 4. 인권은 소통이다! | 1. 감정 읽기<br>2. 감각소통<br>3. 배려와 나눔 소통 |
| | 5.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 1.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br>2. 교실 조각과 교실 재조각 |
| | 6.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 | 1. 인권 노래자랑<br>2.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 |

<표 2>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인권요소와 예방 프로그램 활동

| 인권의 측면 | 인권 요소 | 영역 | 관련 활동자료(회기) |
|---|---|---|---|
| 권리적 측면 | 존엄권 |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모욕 받지 않을 권리 | 인권레알사전(1), 인권온도계(1), 학교폭력 인권선언문(2) 존엄한 너에게(6) |
| | 평등권 | 비차별 및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 | 다양한 가족(1) 차별과 편견(2), |
| | 자유권 | 학대와 방임 및 착취 방지, | 인권은 동전의 양면(1), 가족인권의 권리와 책임(1) 감정을 느껴봐(4), |
| | 안전권 |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 | 장난과 폭력(2) 잠깐맨은 인권지킴이(3) |
| | 교육권 | 교육받을 권리 | 인권과 학교폭력에 대한 가족밥상 소통(4) |
| | 평화권 | 의사소통의 권리, 연대권 | 잠깐맨을 불러주세요(3), 학교폭력에 나타난 우리의 감정은?(4) 텔레파시 소통놀이(4), 가족회담(4), 학교폭력 사례조정위원회(5), |
| 책임적 측면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잠깐맨과 계속맨(3), 수수방관도 인권침해(3), 우리 모두의 책임인 학교폭력!(3),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5), 또래인권상담소(5), 교실조각(5), 애플데이(6) |
| |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하는 의무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4), 배려와 나눔 소통(4), 안아주기(4),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6), 교실에서 찾은 인권(6) |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모든 학교청소년은 다양성과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장, 억압과 착취가 없는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화합과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의무를 가진다(국가인권위원회, 2012a). 청소년이 권리를 바르게 누리고 행사하려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알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인식해야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멀리하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에 있는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도 수반되어야 한다(경상남도교육청, 2012). 인권교육은 개인의 존엄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며, 청소년이 자유의 한계와 책임의 병행을 배우기 위해서 균형 잡힌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가장 일상적인 인권침해 현상 중 하나로, 개인의 기본 권리인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행복권을 침해하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현상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억압과 지배를 거부하고 정의와 평등을 수용하며,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학교폭력해결에 대항해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의 대상 또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아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관자 중심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여러 동기로 발생한다. 우선 또래문화 압력이 강한 청소년기에 집단 내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학교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외모나 성적, 가정배경 등 타인의 외적인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따돌리거나 괴롭힘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기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남아있어 주관적인 친밀감의 표현이나 지나친 장난이 상대방 친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한다. 때때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약한 친구를 희생양 삼아 가정문제나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지능화, 사이버화 등의 추세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과 등교거부 등 각종 사

회적 병리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권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재조명하고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실천 훈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인권친화적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을 인권의 문제로 명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정부가 2012년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역시 매우 포괄적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을 인성의 문제로 보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할 뿐, 학교폭력이 인권의 문제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인권에 둔감한 상태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점, 청소년을 둘러싼 권위적인 학교조직과 억압적인 입시환경 자체가 비인권적이라는 점, 가정과 학교에서 공공연히 비인권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인성의 문제로 본다면 집단보다 규범에 순응하지 못하는 학생 개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기존의 피해자-가해자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학교폭력을 인성의 문제로 보다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의 문제로 보는 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폭력의 70%가 학급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성원의 10% 내외인 반면 방관자는 6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급의 방관자이다(엄명용·송민경, 2011).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못을 말하기를 두려워해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청소년들 뒤에는 우리 사회의 '나서지 마라, 모른 체해라'는 요구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력자와 방관자들의 태도가 우리사회의 반인권적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취하고 있는 방관자와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증진시켜 이들이 주체적으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가정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자녀이해 지원을 위해 학부모교육을 확대, 다변화하며, 학부모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는 청소년의 보호자도 학교폭력 해결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권적 접근 또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확대하여 가족에서 할 수 있는 인권활동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급단위, 방관자 중심, 시청각자료 중심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교사 및 인권교육활동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행복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등 주요 인권요소를 반영하였고, 가정에서의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도 포함하였다.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와 자문회의를 통해 총 6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1모듈(첫 3회기)은 학교폭력이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도모하며 인권감수성 증진을 유도하는 인지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2모듈(나머지 3회기)은 인권실천을 위한 활동 위주로 행위성향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마다 2~3개의 활동이 있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각 활동은 다시 기초, 선택, 심화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어, 학습자의 유형이나 상황(중/고등학생, 남/녀, 학교폭력 위험수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진행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 면접과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강의식보다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재미있고 쌍방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반 교사가 학교수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실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국어나 도덕과목의 경우는 수업시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조회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 외의 시간에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다.

## 제 2절 연구내용과 방법

본고는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연구보고서 전반에 대한 개괄로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국제인권조약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될 학교폭력 침해 인권요소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총 6회기의 회기별 주제와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 부록은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그리고 인권영화 및 TV 프로그램 목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 연구내용과 범위

### 1) 국제인권조약 검토를 통한 학교폭력 침해 인권요소 추출

인권관련 국제협약은 유엔헌장을 비롯해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매우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가 될 여섯 가지의 인권 요소를 추출하고,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 전반의 방향과 구성내용을 정하였다.

<표 1-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반영될 주요 인권요소

| 인권의 측면 | 인권 요소 |
|---|---|
| 권리적 측면 | 존엄권 |
| | 평등권 |
| | 자유권 |
| | 안전권 |
| | 교육권 |
| | 평화권 |
| 책임적 측면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 |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

###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및 콘텐츠 탐색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 인권문제라는 가정 하에, 학교 및 시민사회 현장에서 교사 및 활동가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교사 및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인권일반 및 인권교육, 청소년과 인권,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정부 주도의 국내외 프로그램 및 시도교육청 주도 학교폭력 예방 사업,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유발이 가능한 다양한 활동기법 제시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우수 프로그램들을 검색, 고찰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관련 콘텐츠(인권교육교재, 인권동화, 인권만화, 인권영화 등)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실 및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탐색하였다.

## 2. 연구방법

### 1) 문헌고찰

인권, 청소년과 인권, 학교폭력과 인권 등에 대한 개념 고찰과 함께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다. 첫째, 국내외 인권교육 문헌과 학교폭력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며 인권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둘째, 국내외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구성, 활용된 기법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사이트(http://www.stopbullying.or.kr), EBS 지식e 채널을 포함해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만화, 영화, 동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 2) 전문가 자문회의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구성을 확정하기에 앞서 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교육시민단체 실무자, 민간 인권기관 대표, 청소년상담기관 대표, 대학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 및 청소년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에서 인권과 학교폭력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자문회의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 3) 면접조사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보기 위해 부산지역 중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 각 학교 당 두 학급씩을 대상으로 3~6주간 개발된 인권증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중학교는 59명을 대상으로 3회기(1~3회기)를 진행하였고, 고등학교는 91명을 대상으로 6회기(1~6회기) 모두 진행하였다. 중학교는 두 명의 교사가 1학년과 2학년 한 학급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고등학교는 한 명의 교사가 1학년 대상으로 두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연구자는 각 교사를 만나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 제 2장 선행연구

## 제 1절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

### 1.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1)]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이고 모든 사람을 향해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며, 법체계의 승인과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도덕적 권리이다(김도균, 2008, 국가인권위원회, 2011a에서 재인용). 그러나 지금 누리는 인권은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인류역사 전개과정에서 확장되어 온 것이다(구정화·설규주·송현정, 2009).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은 지난 세기 집중적으로 집중되어졌다.

서구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영국인 Jebb여사가 아동권리선언을 성문화한 후 이를 192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한데서 비롯된다. 이후 아동권리사상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세계 아동의 해'가 정해진 후 10년이 지난 1989년, UN은 보다 구속력을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통과시켜 1990년 9월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이 조약에 비준하면서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아동을 보호하는 국내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을 갖게 되었고 협약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여 인격발달과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54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주요권리로 분류될 수 있다(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2012). 이 협약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국의 아동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행정·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촉구가 종전의 권고차원에서 의무차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며, 대상 또한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1) '국가인권위원회(2012a).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집'에서 발췌·수정하였음.

실제적 대책의 강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주수길·주명국, 2010).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아동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파 방정환이 독립운동의 이환으로 아동권리옹호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소파는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만이 희망이라 생각하여 아동중심사회를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1922년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되었고,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9년에 선포된 '청소년헌장'은 1998년 인권관점을 취해 개정되었으며, 1998년에는 학생인권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준 것이라 하겠다.

한편 청소년 복지권은 헌법, 청소년헌장,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있다. 청소년 중 학생은 학교와 재학관계로 맺어진 특수한 청소년 집단으로, 학생인권과 학생복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나, 이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11b)의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청소년을 경쟁적·경제적 고등동물로 전락시켜 교육시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무시하는 점,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의 시급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토론문화를 위한 예산 지원문제, 지나친 부모의존 관계가 청소년기의 자기결정력을 약화시키는 점, 개인정보의 무의식적 노출현상을 방지해야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생인권선언문**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여,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은 공공연히 침해당하고 있으며 편견과 인습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성년자가 중심이 됨으로써 일방적 보호, 훈육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맞물려 당국은 학생문제를 투표권자인 성년의 시선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

다. 이에 우리는 학생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지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그에 따른 마땅한 권리를 가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학생 스스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은 나이·성별·학교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학생은 과도기의 세대가 아닌, 인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3.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4. 학생은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5. 학생은 학교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6. 학교에서 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교사나 학부모 등 타인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7.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매체를 접할 수 있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8. 학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9.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노동활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으며 학생이란 신분으로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위와 같은 학생의 모든 권리를 부당한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학교·가정·국가를 비롯한 사회는 위의 권리들을 보장하며 합당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법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천구백구십팔년 십일월 삼일 학생의 날

자료: 중고등학생복지회

출처: 주수길, 주명국 (2010). 아동복지강론. p.33 재인용

## 2. 인권교육[2)]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는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

- UN <인권, 새로운 약속> -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지만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지는 못한다. 또한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권 발달의 역사를 볼 때 인권은 능동적으로 찾는 것이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해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능한 아동기부터 인권교육을 받게 함으로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구정화·설규주·송

2) 국가인권위원회(2012b).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인권, 꽃을 피우다'에서 발췌·수정하였음.

현정, 2009).

인권교육의 목표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명시하듯이 첫째,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므로,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달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한 사회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평등과 우정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서 인권이 완성될 때 인권교육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구정화 외, 2009).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영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하며, 교육, 훈련정보, 인식개선,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한다.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에 대한 지식, 실천기술의 제공, 인권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이해, 인권친화적 행동의 발달, 인권침해와 폭력예방, 인권문화의 보편적 구축 증진을 위해 역량강화에 공헌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d).

인권교육훈련의 3대 구성요소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이다.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제공, 인권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이권보호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둘째, 인권을 통한 교육이란 상호존중의 교육과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교수방법 자체에서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 셋째, 모든 인권교육훈련의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것으로 인권 지향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d).

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습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권감수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 등으로 구분되는데, 상황지각능력이란 어떤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능력이며, 결과지각능력은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항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책임지각능력이란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작하고 이를 실제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홍봉선, 아영아, 2012에서 재인용).

인권교육의 교수-학습원리로 일방향적이거나 지시적인 방법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인권적 분위기에서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고, 교수자는 활동의 촉진자 역할을 하며, 소집단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관심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구정화 외, 2009). 수업방식은 대중매체 등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며, 학습자의 활동중심 수업을 통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한다.

교수방법으로는 인지능력 중심의 교육과 행위성향 중심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구정화 외, 2009). 먼저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은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지식이나 사고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둔 접근법으로,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인권의 개념적 지식 이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사회적 갈등에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고방법, 교실내 토론과 교육활동을 통한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은 인권과 관련된 행위를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행위성향을 갖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교실을 벗어나서 실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관찰하거나, 실제 사례를 다루어보며 간접경험을 하며 토론을 통해 반성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구정화 외, 2009).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대중매체를 널리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며, 예술은 인권교육훈련과 인식증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인권조약과 문서가 규정하는 인권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진다.

(1) 인권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원칙, 국제적, 지역적, 국내 기준 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

(2)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무성을 인식하며 자유, 평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개인 발전을 함양하며 보편적 인권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

(3) 인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추구하고 관용, 반차별, 평등을 고양시킬 것

(4)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주의, 편견과 집단혐오를 자극 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불합리한 상황 및 원인을 제공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에 맞서고 근절하며 불합리, 불의한 행동과 편견에 맞서 제거하는 태도와 상황을 고양할 것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의 영역과 내용이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정화 외, 2009). 김영국(2009)은 한국사회의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으로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가 매우 크고,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이 미흡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구정화 외(2009)는 인권교육을 위한 학교문화의 변화로 교장-교감-교사-학생 간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자율적인 학교문화가 요구되며 민주적이며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습구조도 경쟁보다 자신과 타인이 공존하는 상생적 수업문화로 바뀌어야 하며, 학습행태도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문화에서 교사의 역할은 인권학습을 도와주는 촉진자 또는 매개자가 되며, 수업진행과정에서 비인권적 감정과 행동이 드러나면 안된다.

**인권교육 환경을 위한 교실문화에 대한 확인문항**

1. 학생들 간에 폭력이나 따돌림 행위는 없는가?
2. 특정학생에 대한 편견을 없는가?
3. 학생들 간에 폭력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4.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5. 교사의 지도시 학생들에게 굴욕감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는가?
6. 교사가 학생을 부룰 때 이름으로 부르는가?
7.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존대말을 사용하는가?
8. 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하는가?

출처: 구정화·설규주·송현정(2009).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제 2절 학교폭력과 인권[3)]

###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은근히 괴롭히는 수준에서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준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7.30. 일부개정)이 명시하는 학교폭력의 법률적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

3) 이 절은 국가인권위원회(2012a)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중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의 일부를 수정, 발췌하였음.

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및 폭력행위가 학교청소년의 존엄권, 평등권, 안전권, 자유권, 평화권, 교육권 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대표적인 학교 내 반인권적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폭력 피해학생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 손상을 입히며, 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치유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며, 교육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대다수 방관자 청소년이 그릇된 갈등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하므로 학교폭력이야말로 인권지향적 사회로 가는 걸림돌이라 하겠다.

학교폭력은 크게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 사이버 폭력, 성적 폭력으로 나누곤 한다. 이 중 물리적 폭력은 금품갈취, 신체폭력, 게임을 빙자한 폭력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언어적 폭력 등을 포괄한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과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폭력행태를 의미하며,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부터 중증의 성폭력까지 포괄한다.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이든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의 학교폭력에서는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정서적, 언어적, 사이버 폭력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의 학교폭력의 유형 별 실태보고에 따르면, 신체폭행'(25.8%), '집단따돌림'(21.2%), '괴롭힘'(21.7%), '금품갈취'(12.9%), '언어폭력 및 협박'(11.9%)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에서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보다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및 언어폭력의 비중이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22.6%가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2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학생은 10명 중 2명(22.7%)의 비율로 나타났다.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질문에 대해 20.9%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남학생의 경우 '초4학년-6학년'(26.9%), '중학교 1학년'(11.6%)이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초4학년-6학년'(41.0%), '중 1'(9.7%)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남학생의 경우는 '맞았다'(48.3%)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33.6%)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해를 한 이유는 '장난'(1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위), '오해와 갈등'(3위) 등으로 분석되어, 소통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지각 차이가 중요한 가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화가 나서', '이유 없음', '스트레스 때문에' 등도 제시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장난'(30.9%), '상대학생이 잘못해서'(22.3%)가 높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3.4%), '오해와 갈등'(19.8%)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졸업빵, 계급층, 사이버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학생들은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괴롭힘 행동을 하며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다른 사람의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1,059명중에 과반수이상(62.0%)이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관자 학생들의 인권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함께 말림(17.1%)', '선생님께 알림'(9.9%), '부모님께 알림'(3.1%), '경찰에 신고'(1.0%), '상담센터에 상담'(0.3%)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에 따른 목격 시 대응이 다소 달랐는데, '모른 척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60.7%)보다 여학생(64.1%)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내 일이 아니면 타인, 특히 공동체 약자의 부당한 괴롭힘에 모른 척 눈을 감는 것이 다수 청소년의 선택인 셈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직접적인 가해행위보다 협박, 집단괴롭힘 등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 유형으로 변화되는 추세는 반인권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들은 신체적 외상을 남기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이나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며 지능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12.2.10). 조정실과 차명호(2010)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일반화, 지능화, 사이버화, 흉포화 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비행학생만의 행태가 아니며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입시 스트레스로 억압된 청소년들이 왜곡된 놀이문화로 가학적인 게임을 즐기다가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교육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타인을 희생양 삼아 공격성으로 푸는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사이버머니 강탈 등 다양한 폭력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공간과 넘어 다변화되며 확산되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2-1>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약

| | |
|---|---|
| 피해 실태 | • 지난 1년간 청소년 10명 중 2명(22.6%)이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음<br>• 피해자의 30%가 3개월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음<br>• 남학생은 신체폭력, 여학생은 언어폭력의 유형이 높게 나타남<br>• 학교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보다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br>•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 등으로 나타남<br>• 학교폭력 극복방법으로 부모님의 도움(1위), 담임선생님의 도움(2위), 생활지도 선생님, 자치위원회 신고(3위) 순으로 나타남 |
| 가해 실태 | • 10명중 2명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남<br>• 가해 시기는 남녀 모두 초등학교 4~6학년에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이 시기에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함<br>• 가해자 수는 2명 이상인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집단성을 보임<br>• 가해를 한 이유는 '장난'(1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위), '오해와 갈등'(3위)로 분석됨<br>• 응답자 10명 중 1명은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음 |
| 목격자 실태 | • 학교폭력 목격학생 중 62%가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주변에 알렸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함<br>• 예방교육의 유형 중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 선생님의 교육(1위), 경찰관 교육(2위),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 선생님의 방송 및 시청각 강의(3위) 순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br>•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1위), 관심이 없어서(2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위)의 순으로 나타남<br>•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법은 평소에 친구들과 잘 지낸다(1위), 가해학생 처벌 강화(2위), 학교 안에 전문상담교사나 배움터 지킴이 상주(3위)로 나타남 |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국가인권위원회, 2012a,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재인용)

## 2.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학교폭력이 피해청소년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서와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해학생이나 방관자학생의 인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결과로 분노와 불안, 공포, 우울감, 자책감, 원망감 등을 경험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권재기, 2011; 윤선애, 2007; 조유진, 2011; 진태원, 2008). 또한 복수심을 가지게 되고, 반항적이며 공격적인 모습과 파괴적인 대인관계 형성, 자

아형성의 어려움과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타 학생을 괴롭히기도 한다. 학교폭력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Olweus(2003)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후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부정적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손정민, 2011에서 재인용).

개인의 존엄권이 심각하게 손상된 결과로 폭력 피해자는 죽음을 고려하기도 한다. 김재엽과 이근영(2010)이 서울 및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1,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42.3%가 지난 1주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희·손정민(2011)의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수준이 일반청소년 비교집단에 비해 불안, 우울, 사회부적응 등 모든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재엽·이근영, 2010; 박재연, 2010). 하연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은 상황 중 가장 높은 순위가 학교폭력과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이라고 하였으며, 외국의 문헌 역시 학교폭력에 노출될수록 우울과 자살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Flannery, Wester, Singer, 2004). 이 같은 연구들은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존엄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교육권, 안전권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는 가해학생의 경우, 높은 공격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두엽의 실행기능의 결함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히스테리성, 편집성, 의존적 성격장애 등이 있으며, 우울증과 비행장애가 동반되는 '우울행동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한다(진태원, 2008). 따라서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가해학생은 처벌에 앞서 치료와 심리상담을 요하는 대상으로 접근해야한다.

가해학생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성인기에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조유진, 2011). 해외 연구들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성인기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폭력범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Wong, 2004; Kinlock, Battjes, & Gordon, 2004; 이창훈·송주영, 2009에서 재인용). 노르웨이의 종단연구 분석결과에서 6~9학년 시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소년들의 60%가 24세 때 최소한 한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35~40%가 24세까지 최소 3회 이상 범죄에 가담했다. 반면 6~9학년

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았던 소년들 중에는 10%만이 성인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인기 범죄 가담 확률이 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08).

학교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방관자 집단 또한 건강한 갈등대처를 배울 기회를 놓치며 정상적인 발달이 위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폭력을 목격한 학생도 폭력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또래압력에 의해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겪을 경우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의 저하, 만성적 무력감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평화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권이나 평화권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방관자 학생이 모른 척 하는 행동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권 역시 침해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권 실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임파워먼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방관자 학생들을 학교공동체의 인권지킴이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한편 학교폭력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범죄행위일지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법의 대응은 선도처분이며, UN의 '아동·청소년권리조약 37조'에 따르면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는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b). 국제인권기준이 청소년 사법에서 비범죄화를 주요 원칙으로 한 이유는 청소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자유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빼앗는 행위이며, 미래의 희망까지 포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원칙을 고려할 때 청소년 학교폭력 역시 비범죄화를 원칙으로 교육과 복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다(배경내, 2005, 홍봉선·남미애, 2011에서 재인용).

### 3. 학교폭력과 집단역동

최근 개인보다 공동체 집단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때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연구 경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이나 이들의 특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집단 다수의 구성원이 참가하는 일종의 집단과정으로 인식하고 집단역동에서의 참여자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곽금주, 2008; 엄명용·송민경,

2011). 학급 내에서 스트레스와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이 정해지고 집단적 응징이 일어나면, 많은 학생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괴롭힘 행동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주체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용린·최지영·백수현·김영주(2007)는 학교폭력 피해자 473명에 대한 상담사례분석 연구에서 남학생은 약한 학생이, 여학생은 튀는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의 발단이 되는 사건으로 남학생은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친했던 친구들과의 우정이 깨짐으로 학교폭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 '맞장뜨기'를 통한 신체폭력이 두드러졌고, 여학생의 경우는 피해자를 '찍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남학생들은 힘을 과시하려는 기제, 여학생들은 배타적 우정 관계 내에서 피해학생을 왕따로 만드는 기제와 연결되어있다.

엄명용·송민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역할참여유형에서 학교폭력에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생은 60% 이상을 차지하며,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방어자는 2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왕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 바로 방관자(bystander)들이다. 여러 폭력 연구에서 이미 방관자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듯이, 상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3자는 분쟁을 자극하여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갈등을 감소시키는 조정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선동적인 청중이 되기도 한다(윤성우·이영호, 2007).

방관자 집단은 가해 또는 피해 집단에 비해 비교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있어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는 방관자 집단 또한 집단 내 다양성이 클 것이므로 이들의 태도와 행동 특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왕따의 방관자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상황에서의 방관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다. 방관자가 피해자 편에 서게 된다면 왕따 현상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 왕따에 대한 예방 및 중재에서는 이들이 주체가 되는 접근이 중요하다.

Salmivalli 외(1996)는 학교폭력 역할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엄명용과 송민경(2011)이 한국 초·중·고등학생 1,822명을 대상으로 역할유형을 분석하였다. 표 2-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학교폭력 행위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주는 방관자(60.8%)였으며, 다음으로 방어자(28.2%), 조력자(12.8%), 강화자(9.5%)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5.0%)와 피해자(5.5%)로 나타났다.

<표 2-2> 학교폭력 행위자 유형별 빈도

| 역할 | 역할 설명 | 빈도 |
|---|---|---|
| 가해자 |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 | 5% |
| 조력자 |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자를 도와주는 사람 | 12.7% |
| 강화자 | 가해자의 행동을 격려해주는 사람 | 9.5% |
| 방어자 |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 28.2% |
| 방관자 | 학교폭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 60.8% |
| 피해자 | 학교폭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 5.5% |

출처: 엄명용, 송민경(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3(1), 241-266.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 개입이 가해자/피해자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다수인 방관자 중심으로 선회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학급공동체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길러 인권친화적 교실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는 방관자 역할의 학생들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2a). 이들 방관자가 방어자 역할로 선회될 수 있다면 교실문화는 친인권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제 3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대다수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자유, 평등, 소통, 화해, 협력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차별을 멀리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소통과 배려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급 내 모든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므로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학급 내 집단역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학급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급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폭력의 중요한 주체인 방관자 집단이 대상이 될 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비록 인권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정부 주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1) KEDI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교폭력 발생을 촉발하는 개인 및 환경적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소시키고,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은 강화하는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박효정·정미경·박종효, 2007, 송재홍 외, 2013에서 재인용).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적대적 위인양식과 분노조절 등 부정적 특성을 감소시키고,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돕는 공감과 관점 채택 능력을 발달시키며, 셋째, 학급 내 중재자를 양성하고, 넷째,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급규칙을 마련하며, 다섯째,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내용은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KEDI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내용

| 구성요소(제목) | 내용 |
|---|---|
| 공감/관점채택<br>(입장 바꿔 생각해 봐!) | 집단따돌림(왕따) 사례를 대상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방관자 학생 각자의 입장과 기분,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줌 |
| 사회적 문제해결/의사소통<br>(나라면 어떻게?) | 가벼운 신체폭행과 언어폭행을 중심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방식이 공격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대안적인 반응으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학습하도록 함 |
| 또래중재/상담<br>(우리 반의 평화는 내 손으로!)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을 방관자의 자세와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또래 중재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행동기술을 학습하도록 함 |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br>(항복하고 즐거운 학교!) |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학교환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교육활동과 학교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출처: 송재홍 외(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지사. p.365.

프로그램 운영자가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반 교사가 학교수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동영상 시청이나 애니메이션 중심의 DVD, 교사 주도하의 학생활동 등

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실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조회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각 자료 적용을 통한 토의수업으로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의 직접적 체험과 활동경험 촉진은 부족한 편이다.

### 2) 어울림 프로그램[4)]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공감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다. 이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2.26.)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예방대책('13.7.23.)의 예방부분에 신설되었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영역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예방교육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과 후, 조·종례 시간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어울림 프로그램은 정규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 상반기 각 시도교육청별로 우선적용 학교 14개교에 적용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우선적용 학교 14개교를 포함 14개교 추가 선정을 통해 총 28개교로 실시하였다.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한 결과 2013년 약 300여 학교가 참여하게 되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핀란드의 Kiva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핵심 역량을 도출한 6개 핵심 역량을 내용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학교별(초저/초고/중/고), 학생용 48종(기본24종, 심화24종), 학부모용 24종, 교직원용 24종 등 총 96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미술·음악치료,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교가 여건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한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모듈별 적용 사례 중심의 어울림 매뉴얼을 2013년 내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교과수업, 창의적

4) 한국교육개발원(2013.2). '2012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결과보고서'에서 발췌·수정하였음.
관계부처합동(2013.7).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에서 발췌·수정하였음.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심리·상담 전문성을 갖춘 '어울림 카운슬러'와 교사가 협력하여 운영하게 된다. 어울림 카운슬러는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별(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폭력, 성폭력, 폭력서클 등) 예방 교육 전문강사로 육성-관리된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맞춤형 학부모교육(예비학부모 포함)을 강화하고 국가-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3대 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점차 확대하고,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분야별 교육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학교장 예방 및 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또래보호 등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활동을 위해 또래보호, 결연, 순찰 등 학생-학부모-교원 간 협력활동이나 자치회, 동아리, 또래조정-상담 자치법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학급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이용하고 학부모 봉사활동을 이용하여 상담, 멘토링, 취약지역 순찰을 제공한다. 그 외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도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향후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인력(어울림 컨설턴트)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3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 연수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할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보급하고자 한다. 법적으로는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반영하여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간 이수시간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 2) 핀란드의 키바 코엘루 프로그램[5)]

핀란드의 키바 코엘루 프로그램(이하 키바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핀란드 교육부가 투르쿠대학 연구팀과 개발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이다. 키바(KiVa)는 핀란드어로 '괴롭힘에 맞서다'라는 용어이며, 코엘루(Koulu)는 '학교'라는 뜻이다. 그래서 '괴롭힘에 맞서는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며 '즐거운 학교'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키바 코엘루 프로그램은 단지 1년 동안만 이루어지는 프로젝

5) 김병진(2012.11). '핀란드의 키바 코엘루(KiVa Koulu) 프로그램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에서 발췌·수정하였음.

트가 아니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영구적 프로그램으로 초·중학교 교육단계인 종합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핀란드의 전국 약 2,800여개의 종합학교 중 2,500학교, 약 90%가 키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키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들은 1년간 총 20시간짜리 '키바학교' 수업을 듣게 된다. 왕따에 관한 단편영화 감상,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학생들 스스로 학급규정을 하나씩 만들어간다.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한 훈련과 왕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컴퓨터 게임도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따돌림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교실 전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협력과 평등' 이념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키바 프로그램 시행 1년 만에 따돌림이 20%나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키바는 과정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 쉬우며, 왕따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키바 프로그램은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측면의 연구와 괴롭힘 과정에서 주변 참관자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키바 프로그램은 방관자 학생들의 공감, 자기효능감, 괴롭힘에 대한 저항적 태도의 증진을 강조한다. 방관자들이 왕따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한다.

키바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 내 적용되었다. 수업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시간을 마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담임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업으로, 2년 동안 모두 20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집단역동, 정서 등 일반적인 다양한 관련 주제들과 괴롭힘의 개념, 방지의 원리 등을 다룬다. 이 과정을 통해 괴롭힘이 무엇인지, 괴롭힘은 갈등이나 싸움과 어떻게 다른지, 괴롭힘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동료 학생들이 괴롭힘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략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침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키바 프로그램은 학생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 형태와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 심각한 괴롭힘을 저지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해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1~3학년, 4~6학년, 7~9학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지침 프로그램은 4~6학년용으로 매회 2시간씩 10회에 걸쳐 20시간 프로그램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진행한다. 학생 집단이 괴롭힘 행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증

대하고 도와주는 전략의 개발 및 그 전략 활용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토론, 협동과업 수행, 역할극, 영상 상영 등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특징적인 방법으로 수업 중 혹은 수업 사이에 괴롭힘 방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쉬는 시간 감독자들로 하여금 밝은 색 조끼를 입게 하여 강한 상징을 드러내고 있다. 쉬는 시간 감독자들의 가시권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괴롭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나타내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들 또한 안내 교육을 받으며, 괴롭힘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한 연수도 받는다.

키바 프로그램의 학교팀 구성은 학교 구성원 중 3명의 성인들로 이들은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 책임진다. 담임교사는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을 돕고자 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도 구성한다. 학교팀은 학기 중에 세 번 정도 모임을 갖는 학교 네트워크 팀과도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각 학교팀은 키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별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다. 학부모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부모-교사의 만남 기회도 자주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각 학교 및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줌과 아울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교사들에게 괴롭힘 현상에 대한 통찰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각 단원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론 및 학습활동 등 구체적인 학습 지침이 제공된다. 교사들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자료나 역할극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생각과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학생과의 수업 매뉴얼뿐만 아니라, 괴롭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도 담겨있다.

키바 프로그램은 처벌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다. 학교팀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전략을 사용하는데, 두 전략 모두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는 왕따나 괴롭힘이 종식되었다는 학교팀의 확신이 들 때까지 지속되는데, 처벌은 이러한 방법에도 변화가 없을 때 이루어진다. 처벌의 종류는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학교의 자율에 맞기기 때문이다.

키바 프로그램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학교 담당자들에게 포착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동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며, 괴롭힘 사례들은 피해자 및 가해자와 함께 개별 또는 소그룹 토의를 통해 다루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후속 모임들이 수반된다. 담임교사들은 2명 내지 4명 정도의 사교적이고 영향력 있는 학급 학생들을 통해 피해당한 학생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한다.

키바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전문적으로 준비된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생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행동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가상 학습환경 등 강력한 학습미디어를 활용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목격자로서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단순하게 방관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키바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기존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은 전체 학교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과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다차원적 개입을 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괴롭힘 현상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도 상당히 낮아졌다. 핀란드의 약 2,800여 개의 종합학교 중 2011년 90%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1,500여개 학교는 반복적이며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키바 학교팀과의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 학생들 중 98%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 2. 시도 교육청 주도 학교폭력 예방 사업

### 1) 학교폭력 예방 사례집 발간

시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청 내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 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선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교육청(2012)은 일선학교,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실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2012)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하여, 학생 언어문화 개선, 단위학교 특색사업,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메니페스토제 운영, 또래상담 등 다섯 범주에 걸쳐 20개 학교의 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두 교육청에서 발간한 우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예방 사례집에서 소개한 사업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경상북도 및 대전시 교육청 내 우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

| 범주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
| 경상북도 교육청 | 영천여자중학교 |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학교생활 |
| | 대가초등학교 | 마음은 Open 폭력은 Close 소통으로 하나 되는 참별 친구들 |
| | 인동초등학교 |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더하여 사랑을 곱하면서 학교 폭력문제 어렵지 않아요 |
| | 경산고등학교 | ABC 학교폭력 예방 |
| | 무학중학교 |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 | 하양초등학교 | 친구야, 함께 뛰고 같이 놀자 |
| | 영가초등학교 | 나눔과 배려의 감성교육으로 학교폭력 Zero |
| | 영주교유지원청 Wee 센터 | 내 믿음이 나를 <이 룸> 특별교육 |
| 대전시 교육청 | 천동초등학교 | 천사팔찌로 천사되기 |
| | 갑천초등학교 | 따뜻한 언어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
| | 송림초등학교 | 세종의 얼 계승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Zero! |
| | 송촌중학교 | 학생 언어문화 개선 |
| | 대정초등학교 | 사랑, 행복, 희망의 따뜻함과 학교스포츠클럽의 만남 |
| | 둔원초등학교 | 이젠 함께 웃어요 |
| | 탄방초등학교 | 여섯 천사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
| | 산내초등학교 |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
| | 선화초등학교 | 스포츠, 음악, 원예활동이 펼치는 FUN 프로젝트 |
| | 태평중학교 | '위험군학생'들의 영상영화 제작 동아리 |
| | 변동중학교 | 한마음 어울림 프로젝트를 통한 Good-By 학교폭력 |
| | 가오고등학교 | 가오 공감과 소통의 한마당 발표회 |
| | 동방고등학교 | 행복한 학교 만들기 |
| | 가원학교 |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처방약 |
| | 덕명중학교 | 바른생활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 자율 생활지도 |
| | 한밭여자중학교 | 솔로몬의 지혜로 학생자치문화 실현 |
|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큰 기쁨을! |
| | 자운초등학교 | 서로를 위한 약속 실천! 나Do 너Do 우리Do로 학교폭력 Zero |
| | 복수고등학교 | 바른생활 실천 메니페스토 선서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 | 목양초등학교 | 해품방에 놀러오세요 |

### 2) 학교폭력 학생자치 동아리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은 용기, 정의, 질서를 목표로 학교폭력 Healing 학생봉사동아리를 지원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자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 따로 구성된 5단계 학생봉사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발

간하였다(충청남도교육청, 2012). 학교폭력 힐링 학생봉사 동아리는 학생자치단체와 또래중재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중 희망자가 모여 조직할 수 있다.

5단계 중 첫 단계인 '동아리 의지 세움'은 힐링 학생봉사 동아리의 운영과 홍보, 비전 선포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두 번째 단계인 '용기 힐링'은 'Stop Bullying'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수호천사 그룹 활동, 용서와 화해의 힐링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정의 힐링'은 학생 자치법정 운영, 패트롤 프렌즈(급우 순찰대) 운영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 단계인 '질서 힐링'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클린! 사이버 지킴이,' 소통의 장 만들기 '애플데이,' 담아요! 내 맘을 'Healing Tong,' 굿바이 학교폭력 힐링 공연을 통한 학교폭력 캠페인 송 악보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동아리 희망 더하기'는 학교폭력신고 및 상담, 힐링 봉사동아리 발표회 및 워크숍, 힐링 봉사동아리 활동상황 기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관자집단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의 변화를 도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3) 또래조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조정이란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 사이를 매개하여 평화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것으로 결정내용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해결이 이르도록 돕는 갈등해결방법이다. 이러한 조정을 학교에 도입하여 어른이나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또래조정(peer mediation)이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또래조정의 운영목표와 방법 등을 또래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 연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송재홍 외, 2013).

또래조정 모형의 진행절차 중 준비단계로 우선 또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첫 단계는 또래조정 위원회에 갈등해결을 신청하고, 2단계는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담당 조정위원을 정해 기록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로 또래조정 위원회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 분쟁당사자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고, 4단계는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조정위원회에서 정보를 정리하여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5단계는 조정위원회에서 관련 학생들이 갈등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시에는 교사조정위

원회로 발동한다. 마지막 6단계에서 갈등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인천 연수초등학교의 경우 또래조정자는 중립적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고 방송조회를 통해 위촉장을 수여하며, 축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또래조정자로서 자부심을 높였다. 또래조정위원은 5,6학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보내준 조정 자료를 활용하여 또래조정 안내를 제공하고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조정절차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 조정훈련을 받았으며, 방학과제로도 일상생활 속의 갈등을 다루어보고 해결방안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 4) 의사소통 촉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경기도 교육청 산하 구리중학교는 분노조절(control anger), 의사소통(communication), 배려(consideration) 등 3C 프로젝트를 통해 절제와 의사소통, 문화인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스타(Star)로 양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는 남자중학교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의 운영을 교과목과 비교과목 활동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운영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손재홍 외, 2013).

분노조절을 위해 연극과 놀이치료를 통해 워크숍을 운영하고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스포츠동아리 활동과 벽화활동, 자원봉사, 주말농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게슈탈트 집단상담, 애플데이(사과하는 날), 친구사랑의 날, 미소의 날, 칭찬 우편함 및 칭찬릴레이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배려 프로그램은 절친튜터링, 배려일기 릴레이, 친친 배려 캠프, 친구사랑 페스티발 등 학급과 학교전체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다.

3C 프로젝트는 1년에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주중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방학까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운영과정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회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상주하는 상담사가 있으며, 이곳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이 이루어졌다.

### 5)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3월 혁신학교로 지정한 포천 경북중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매주 목요일 '인권이 숨쉬는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

다(경기도교육청, 2013.2.6.). 149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이 학교는 전문가 초빙특강, 역지사지 역할극, 지역경찰 스쿨스테이 비폭력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한 달에 한번 '왕따 체험의 날'을 정해 직접 피해자 경험을 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학교폭력 2건과 관련학생 6명, 2012년 학교폭력 0건과 관련학생 0명을 기록했다.

'평화교실'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학급 협동의 날에는 한솥밥 비벼먹기 데이, 러닝맨, 마음밭 텃밭 가꾸기 등으로 소통한다. 매 달 24일 사과 데이(apple day)에는 갈등이 있는 친구와 화해와 용서를 통해 갈등해결을 하며, '말의 힘' 활동을 통해 4주간 친구에게 긍정의 말 해주기를 실천한다. 총 49팀 98명의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가 되는 '우정멘토링'은 또래상담과 학습 문화활동을 공유하며 공감과 이해를 촉진한다.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을 배우게 하며, 학생조회와 축제, 졸업식 등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한다. 학생자치 모의법정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익히기도 한다. Wee 클래스와 대안교실을 통해 다각적인 상담활동을 벌이며, 상담교사와 함께 하는 힐링상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진행한다.

## 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 1) 역할극을 통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6]

허미경(2008)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많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U시의 중학교 5개교 1,433명을 대상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Shaftel(1982)이 제시한 역할극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도입과정으로 ① 프로그램 소개, 준비과정으로 ② 촉진활동과 ③ 역할극 상황설정과 준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전개과정으로 ④ 역할극 참가자 선정 ⑤ 관객의 준비자세 확인 ⑥ 역할극 시연 ⑦ 역할극에 대한 토론 및 평가 ⑧ 수정된 역할극 시연단계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마무리 과정에서는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역할극 실연과 토론을

6) 허미경(2008). 역할극을 활용한 중학생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2), 37-52.

통한 참여로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관객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 전체의 집단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촉진활동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1)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며, 2)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다양한 학교 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기술을 익히게 하며, 3) 친구관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중학교 역할극을 통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 | | |
|---|---|---|
| 실시 대상 | N중학교 9학급 349명, Y중학교 10학급 399명, J중학교 8학급 323명, H중학교 8학급 281명, D중학교 3학급 81명 | |
| 소요 시간 | 3시간 | |
| 과정 | 단계 | 진행 절차 |
| 도입 | 프로그램 소개 | · 학생들과 인사하기<br>·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기<br>·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설명하기<br>· 규칙 정하기 |
| 준비 | 촉진활동 | · 응집력 향상을 위한 촉진활동 |
| | 역할극 상황설정과 준비 | ·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선정<br>· 등장인물 성격 알아보기<br>· 역할극 장면 설정 |
| 전개 | 역할극 참가자 선정 | · 역할극 배역 선정과 배역을 맡은 사람들의 전반적 계획 세우기 |
| | 관객 준비 자세 확인 | · 참석자의 관람태도와 관람과제 제시 |
| | 역할극 시연 | · 역할극 시연 준비하기<br>· 역할극 시연 |
| | 역할극에 대한 토론 평가 | · 역할극을 본 후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토론하기 |
| | 수정된 역할극 시연 | · 수정된 역할극 재시연하기 |
| 마무리 |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 | ·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경험을 공유하기<br>· 폭력예방을 위한 시도를 생활에서 찾기 |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역할극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폭력 상황을 참여 학생 본인들이 직접 문제 상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폭력 상황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역할극 시연 후 평가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해결 방법 등을 나눌 수 있었으며,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 단계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한 아이디어와 각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학생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방관자 대상의 또래지지 프로그램[7)]

윤성우·이영호(2007)는 방관자가 집단 따돌림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관자를 대상으로 한 또래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중학교에서 자기 보고에 의해 방관자로 선택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총 8회기의 또래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초반부에는 학생들이 집단따돌림현상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며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였으며 후반부에는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행위를 주거나 전체 학급에서 시행될 수 있는 집단 따돌림의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집단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 프로그램

| 프로그램 대상 | | | |
|---|---|---|---|
| 1회기 | 프로그램 소개<br>집단 따돌림 이해 | 2회기 | 실제 집단 따돌림 사례 논의하기 |
| 3회기 | 일일 왕따 체험 | 4회기 | 역할극 시행하기 |
| 5회기 | 모의 학급 재판소<br>(집단 따돌림 상황 시<br>중재역할에 대해) | 6회기 | 학급 신문 만들기 |
| 7회기 | 왕따 없는 반 만들기 | 8회기 |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기 |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가해자 역할보다 가해자를 따르는 역할을 한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보고하였다고 추정된다. 즉, 집단 따돌림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7) 윤성우·이영호(2007). 집단 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6(2), 271-292.

둘째, 또래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방관자 학생들은 피해자에 대한 인상평가가 증가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인상평가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호감도, 도움 행동, 공감 및 동조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다. 또한 공감이나 동조 현상은 따돌림 현상과 다소 무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따돌림 현상에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또래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급에서의 가해 빈도와 피해 빈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따돌림의 피해빈도는 실험학급에서 약간 감소하고 통제학급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따돌림의 가해빈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통제학급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았다. 이러한 불일치의 결과는 학생들이 피해자의 입장이기 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인 것을 더 솔직하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

넷째, 또래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피해자의 친구지지 및 급우지지는 증가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단기 시행뿐만 아니라 방관자 아이들이 피해자에 대한 인상평가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는 보이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학급에서의 따돌림 현상에 무관심한 방관자를 대상으로 한 또래지지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방관자들이 자신과 관련 없는 소외된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지만 따돌림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 행동을 보이거나 집단 따돌림을 중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는 보이지 못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 짧았고 학급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 또한 초반부와 후반부 간의 이질감 등의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학급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의 실제적인 발생 빈도와 심각성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집단상담의 효과 측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 3) 공감중심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8)]

윤보나·윤형근·권순형 (2009)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하여 공감 중심의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195명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인식, 집단 따돌림 예방 관련 요인, 참여자

8) 윤보나·윤형근·권순형(2009).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공감 중심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8(4), 171-183.

유형, 공감에 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전문가 검증 및 예비 검사를 통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최종프로그램인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표현적 영역을 하위요인을 한 11회기의 프로그램이 구안되었다.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두 학급을 무작위 선정하여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행동검사 및 방관자 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 방관자적 태도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참가자 경험보고서 및 연구자 행동관찰 일지의 내용 분석 결과 실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공감중심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 회기 | 프로그램명 | | 활동내용 |
|---|---|---|---|
| 1 | 행복한 학급으로의 초대 | | · 집단따돌림 관련 영상 시청<br>·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절차 소개<br>· 규칙 정하고, 서약서 작성/둘씩 짝지어서 상대 소개<br>· 게임을 통하여 친밀감 형성, 집단 따돌림 개념 바로 잡기 |
| 2 | 인지적 영역 |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 · 따돌림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후 느낌 나누기<br>· 경청의 중요성을 게임을 통해 인식하고 경청의 태도 연습<br>· 집단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 설명 / 과제 활동 제시 |
| 3 | | 우리 모두의 책임 | · 다양한 시각으로 집단 따돌림 바라보기 - 과제였던 책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소집단별로 이야기하기<br>· 감정 이해하고 표현 / 과제 활동 제시 |
| 4 | | 너의 마음은? | · 집단 따돌림 역할 놀이<br>· 집단 따돌림 발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 설명<br>· 자신이 맡았던 역할 별로 모여 느낌 나누기<br>· 공감의 개념과 중요성 인식 / 과제 활동 제시 |
| 5 | 정서적 영역 | 마음을 표현해요 | · 가해자들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토론내용 살펴보고,<br>· 생각과 느낌 나누기<br>· 나-메시지 배우고 표현하기 / 과제 활동 제시 |
| 6 | | 함께 고민해요 | · 소집단별로 경험 나누고 느낌 이야기하기<br>· 경험을 통해 감정 느껴보기 / 과제 활동 제시 |
| 7 | | 먼저 다가가요 | · 집단 따돌림 사례를 살펴보고, 집단 따돌림 상황에서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말하기<br>·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여 친구의 느낌을 이해하고 마음 받아주기<br>· 과제 활동 제시 |
| 8 | 표현적 | 싫다고 말할 수 | · 집단 따돌림에 대한자신의 반응유형 알아보고, 대처 |

| | | | |
|---|---|---|---|
| | 영역 | 있어요 | 방안 찾기<br>· 거절의 중요성 인식하기<br>· 다른 사람에게 공감적 표현하기 / 과제 활동 제시 |
| 9 | | 그래서 그랬구나 | · 공감 수준 확인하기<br>· 공감적 표현의 방법 익히고, 연습하기<br>· 집단 따돌림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찾아보기 / 과제 활동 제시 |
| 10 | | 내 안의 영웅을 깨워라 | · 상황 심리와 관련된 몇 가지 실험 시청하고 소감 나누기<br>·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하기 |
| 11 | 즐겁고 행복한 학급으로 | | · 지속적인 실천 다짐하기<br>· 집단 따돌림에 대한 생각과 느낌 발표하기<br>· 프로그램 평가하기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분석 결과, 공감중심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은 집단 따돌림 피해-가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집단 따돌림 방관자적 태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이나 공감과 같은 변인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연구 기간을 좀 더 길게 계획하여 분기 별로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제언하고 있다.

### 4) 왕따 예방 프로그램[9]

곽금주(2008)는 한국의 왕따가 가지는 현상적 특성으로 집단성, 한 번 피해자가 되면 지속적인 괴롭힘에 노출되는 지속성, 가해자의 범위가 일반학생으로 확대되는 일반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또래집단 역동을 이용하며, 학급 전체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왕따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상황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무의식, 무책임, 무기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왕따 상황에서 자기인식과 대처방식의 이해 등의 사회인지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방관자들이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동이 왕따를 조장,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프로그램은 방관자 집단의 태도와 행동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왕따 현상에는 그 참여 역할이 중요한데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중심의 구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중간집단(가해지지자, 방관자, 방어자)에 초점을 맞춘

9) 곽금주(2008).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25-272.

구조, 마지막으로 가해자, 가해조력자, 가해강화자, 방어자, 피해자, 방관자의 참여역할 구조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각 2개교 655명이며, 프로그램은 주 1~2회기 씩 총 8회기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사전사후 분석결과, 첫째, 집단 따돌림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훈련집단의 사후 따돌림의 피해 정도가 줄어들었다. 둘째, 대물파손,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에서도 통제집단보다 적게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식과 태도 변화의 경우, 사전·사후와 훈련·통제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또래압력, 또래동조성, 왕따에 대한 인식, 도덕적 이탈에서 훈련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곽금주(2008)는 한국의 왕따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왕따의 실태와 특징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왕따 현상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보급과 실시도 중요하므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보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식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제 3장 프로그램 개발

## 제 1절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인권요소

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가 될 여섯 가지 인권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요소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져야할 주요 인권 영역으로, 이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반의 방향과 구성내용을 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반영될 인권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3-1> 프로그램에 반영될 주요 인권요소 및 영역

| 인권의 측면 | 인권 요소 | 영역 |
|---|---|---|
| 권리적 측면 | 존엄권 |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모욕 받지 않을 권리 |
| | 평등권 | 비차별 및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 |
| | 자유권 | 학대와 방임 및 착취 방지, |
| | 안전권 |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 |
| | 교육권 |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 |
| | 평화권 | 평화를 누릴 권리, 의사소통의 권리 |
| 책임적 측면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 |
| |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하는 의무 |

### 1. 존엄권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제1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5조).”

► UN아동권리협약 :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제6조),”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 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37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권리는 고전적 인권의 하나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누구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과 처벌이란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인격이 부인되어 타인에게 권리나 자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한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제5조)는 자유권규약을 포함한다. 그러나 근래의 학교폭력 수위는 친구 간의 사사로운 갈등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손상과 착취(인터넷 게임, 심부름 등), 모욕, 성추행,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청소년 인격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에 학교폭력은 개인존재의 고유 가치를 인정받으며 모욕받지 말아야 할 존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 야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는 인권원칙(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반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급 안의 역동은 이성과 양심의 질서가 아닌 힘과 야성의 본능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공동체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 학생이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무시하고 교육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폭력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생명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행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2. 평등권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제2조).”**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제1조)고 선언하고 있으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제2조)고 선언한다. 공공생활의 분야에서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은 평등하게 인권과 자유의 인정과 행사를 무효화하고 침해하는 목적을 가진다(제1조, 국가인권위원회, 2011b).

청소년기는 또래문화의 압력이 강한 시기이므로 급우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집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특정학우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폭력의 대상은 외모, 성적, 가정환경, 인종, 심신 장애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쉽다. 주로 사회적 약자 또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는 친구가 대상이 되며, 일단 피해자가 정해지면 집단적 차별과 배척, 착취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비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현상으로서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때에 예방될 수 있다.

### 3. 자유권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제3조).”**
**► UN아동권리협약 :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제37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제3조)’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할 자유를 가지며,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라지 않고 신체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침해당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억류되지 않으며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자유권규약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인 고문과 형벌, 비인도적 처우 및 인체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종종 피해학생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집단이 피해학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로 굴욕감을 주며 심지어 고문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사 피해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유와 평등을 토대로 한 민주적 질서보다 폭력과 억압의 질서가 우위에 있는 학교생활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게 학생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안전권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제3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제9조)"**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은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6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제36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이는 기본 권리의 하나로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특히 아동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부당한 대우, 즉 학대와 폭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일상에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요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하나, 때로 제도적 수단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반인권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5. 교육권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제27조)," "교육은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계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집단 간 이해와 관용, 우애를 증진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활동을 증진할 수 있어야한다(제13조 1항)."

► UN아동권리협약 :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한다(제28조)."

교육권은 중요한 사회적 권리로 인간은 교육을 통해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직업과 경제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인권교육은 공동체 사회에서 인권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서 인권침해와 폭력의 예방 및 평등에 기여한다(UN, 2006). 한편 학교폭력은 또한 아동권리협약 중 '좋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며(3조),'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며(5조),'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6조),'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하고(10조)' 등의 항목을 위배한다.

학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의식 계발을 지향해야하며 학생들은 친구들과 우정을 통해 고유한 기쁨과 가치를 누리며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해주는 질서 속에 행복을 누리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교육환경은 이러한 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적 온전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학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또한 학교는 인권에 관해 교육받는 것 자체가 권리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 6. 평화권

► 세계인권선언 :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제4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이나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12조)”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교육과 지도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놀이와 여가도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평화권은 인간존엄성의 보호와 기타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즉, 평화는 인권이 실현된 곳에서 존재하므로 인권과 평화는 유기적·통합적 관계에 있다. 평화에 대한 인권은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소극적 평화와 개인 간, 집단 간, 개인-집단 간에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조화로운 공존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모두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또한 모든 사람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사적 생활공간의 평온을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폭력사건을 목격하거나 방조하는 모든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실 안에서 억압과 지배가 발생하며, 온갖 착취가 일어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리적, 신체적 평화를 빼앗는 일이며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배경에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적절하지 못한 놀이문화 등이 지적되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이 본인들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주도적 활동을 통해 자율권과 발달권이 보장되는 여가와 놀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7.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제29조)”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지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해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제13조).”

개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선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간

의 논쟁은 대립과 수용을 거듭해왔다. 인권에 대해 제1세대 인권론이 개인에게 직접 보장된 권리로 본 것에 비해, 제3세대 인권론은 개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집단적 권리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결핍되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인권조약의 일부로 보는 것은 일종의 연대권에 대한 보장으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도 의무주체로서 대응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제3세대 인권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연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폭력행위는 연대의식이 약한 교실에서 발생하게 되나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수가 결속하는 왜곡된 방식의 연대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 학생들의 방관자 위치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를 더욱 약화시켜 교육공동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8.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 세계인권선언 :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제30조)."**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지나,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을 위해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제13조)."**

인권담론에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주체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서구에서 인권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이기적 보호와 욕구를 성취하려는 인권개념이 강조되어 왔지만, 한편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30조). 동아시아의 경우 유교 이념의 오랜 영향으로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지향하는 전통이 있으므로 인권의 기본이념과 사상을 수용하되,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권담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학교폭력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폭력행위로 가해청소년이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욕구충족을 위해 타인의 권리 존중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대다수 방관하는 학생들의 평화권과 안전권, 교육권 등 권리가 침해되

고 있다. 자신의 욕구와 권리만 소중할 뿐 타인의 권리와 욕구를 간과하는 문화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요소 중 타인의 권리 존중 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 2절 프로그램 원리 및 구성방법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2/3 이상이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학급단위로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실천 훈련을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각 모듈과 회기는 인권감수성 증진 및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인권실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첫째,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개인과 관계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학교폭력이라는 구체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인지과정, 그리고 둘째, 인권감수성을 통해 인권을 지향하고 옹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실천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원리는 인권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침해 상황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존중과 협력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인지, 정서, 행동을 적절히 구성하였고, 학교뿐 아니라 가정 및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무엇보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방관자가 인권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통해 협력과 화합의 평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동기와 적극적 참여, 진행자의 참여자 활동 촉진 및 상호작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동영상과 만화 등 다양한 매체활용, 토론 및 협동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모둠활동 등을 고르게 넣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회기별 활동을 두 가지 이상 소개하여, 교사가 상황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회기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활동은 기초, 선택, 심화 등으로 수준 별로 구분하여 성별, 학년, 혹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학생활동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일반적 수준의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중학교에서는 각 회기별 활동에 제시된 기초 활동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수준을 정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기초단계를 건너뛰고 심화 단계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선택은 기초 혹은 심화 단계 활동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교사가 각 학급의 상황에 따라 기초, 선택, 심화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회

기 활동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회기의 내용은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활동의 초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각 회기별 가족자료 및 가족활동지를 구성하여 교사 및 진행자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과제 제시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가족 내 소통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될 때 가족원의 인권이 회복되며, 학교폭력의 문제가 맞물려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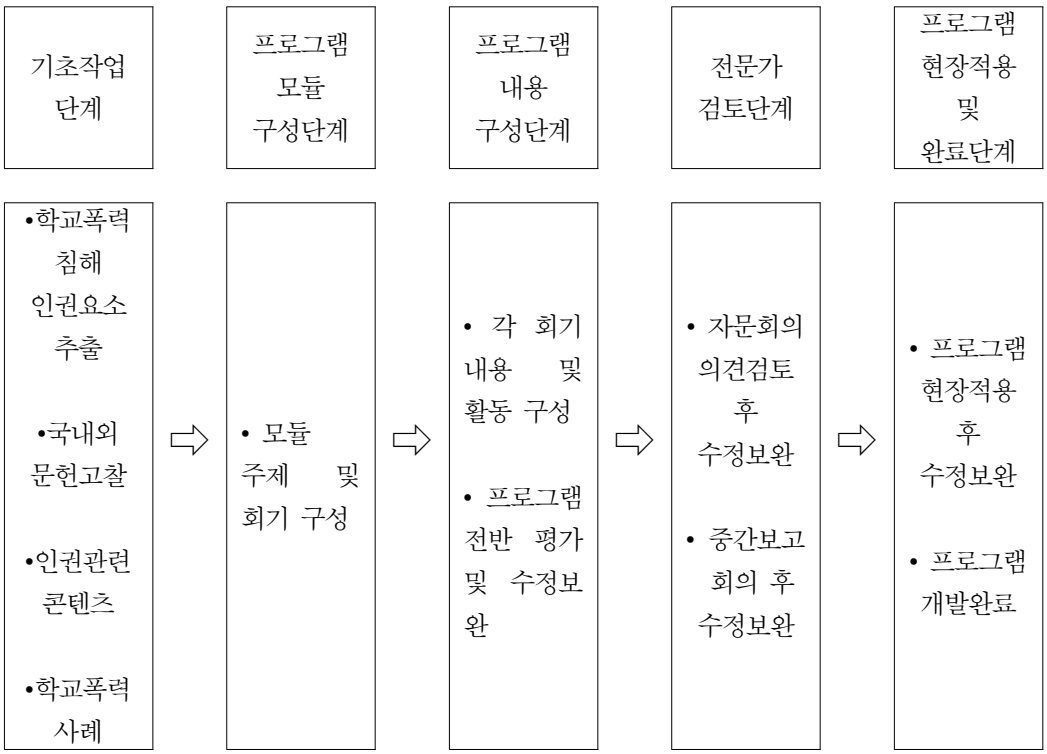


<그림 3-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정

## 제 3절 프로그램 내용 및 현장적용

### 1.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실천 훈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권의 개념을 인지하고 학교폭력이 인권침해 상황임을 인식하는데서 시작하며, 각 회기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

은 학교폭력이 개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행복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인식하도록 돕고 인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하여 학교폭력 행위가 교실 내 모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상을 발견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해 상호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대의 방법, 갈등해결의 방법을 체득하여 관계 속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권 관련 문헌, 학교폭력 예방 관련 문헌 및 포털사이트를 검토하였고,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평화권, 행복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등 8가지의 주요 인권요소를 추출하여 이 요소들을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총 6회기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네 학급 15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 면접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은 모듈형태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및 학교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회기 혹은 활동을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인권요소와 연계된 세부적인 프로그램 활동은 표 3-2와 같다.

<표 3-2> 각 인권요소와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

| 인권의 측면 | 인권 요소 | 프로그램 활동(회기) |
|---|---|---|
| 권리적 측면 | 존엄권 | 인권레알사전(1),<br>인권온도계(1),<br>학교폭력 인권선언문(2)<br>존엄한 너에게(6) |
| | 평등권 | 다양한 가족(1)<br>차별과 편견(2), |
| | 자유권 | 인권은 동전의 양면(1),<br>가족인권의 권리와 책임(1)<br>감정을 느껴봐(4), |
| | 안전권 | 장난과 폭력(2)<br>잠깐맨은 인권지킴이(3) |
| | 교육권 | 가족밥상 소통(4) |
| | 평화권 | 잠깐맨을 불러주세요(3),<br>학교폭력에 나타난 우리의 감정은?(4)<br>텔레파시 소통놀이(4), 가족회담(4), |

| | | |
|---|---|---|
| | | 인권사례조정위원회(5), |
| 책임적 측면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잠깐맨과 계속맨(3), 수수방관도 인권침해(3), 우리 모두의 책임인 학교폭력!(3),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5), 또래인권상담소(5), 교실조각(5), 애플데이(6) |
| |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4), 배려와 나눔 소통(4), 안아주기(4),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6), 교실에서 찾은 인권(6) |

프로그램은 인지중심의 1모듈과 행동중심의 2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은 세 회기씩을 포함, 총 6회기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마다 활동목표, 활동개요, 주요내용, 유의사항,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고, 활동과정 개요를 표로 제시하여 교육 진행에 필요한 진행방법과 준비물, 소요시간,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회기마다 학생자료, 교사자료, 가족자료를 포함하여, 진행자가 활동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각 회기는 다시 2~3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활동은 기초, 선택, 심화 수준의 학생활동지를 포함하고 있어 진행자가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각 활동 앞부분에는 진행자를 위한 교사멘트와 조언(Tip)을 제시하였다.

모듈 1과 모듈 2의 개략적인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 1은 학교와 가정,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인권침해요소를 인식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권이 왜 중요한지를 토론하며,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권이 '권리와 책임'의 동전 양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인권존중은 타인의 인권존중이 선행될 때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 그리고 차별행동 등을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방관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방관자로서 인권침해의 조력자 역할에서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이나 학교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 인권이 상호 존중되어야 할 보편적, 당위적 권리임을 인식하게 된다.

모듈 2는 인권 실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모듈은 인권요소 중 특히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 존

중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다. 인권존중은 모두 다 존중받고 행복해지기 위한 관계적 절대원칙임을 인식하고 인권옹호활동이 소통과 협력을 일구어내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조정행동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권존중 및 옹호활동은 가족 내에서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족 내 인권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활동이 추가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고 모두가 존중되는 교실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갈등 해결의 주체로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각 회기별 주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회기는 '소중한 너의 나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바로 알고 학교폭력과 인권의 관련성을 짚어보았다. 2회기는 '학교폭력에서 인권을 잡아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에서 침해되는 인권요소를 인식하고, 장난과 폭력, 차이와 차별 등의 미묘한 차이와 상황을 다루었다. 3회기는 '인권감수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의 집단역동과 개인의 참여역할 유형을 인식하도록 하고, '잠깐맨'과 '계속맨'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모하였다. 4회기는 '인권은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포옹 등 비언어적 방식으로 감각소통을 경험해보고, 배려와 나눔의 소통방법을 배움으로써 인간의 존엄함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5회기는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또래조정상담과 교실조각을 경험해보면서 학생청소년 자신이 폭력해결의 주체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6회기는 '웰컴 투 존중교실'이라는 주제로 협력과 화해, 용서를 도모하는 활동을 진행해 학급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함께 인권을 지킬 때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목표는 표 3-3 및 표 3-4와 같다.

<표 3-3> 모듈 1의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목표

**모듈 1: 인권감수성 높이기(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안전권, 교육권, 평화권)**

학교와 가정,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인권침해요소를 인식하여 인권감수성 향상하기

| 회기 | 활동 | 목표 | 세부 활동 | 관련 인권 |
|---|---|---|---|---|
| 1.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 1. 인권 레알 사전 | - 인권의 개념을 알아보고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임을 알게 한다.<br>- 학교폭력과 인권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 (기초)<br>- 인권레알사전1<br>- 인권레알사전2 | 존엄권<br>자유권<br>안전권<br>평등권<br>교육권<br>평화권 |
| | | | (심화)<br>- 인권레알사전1<br>- 인권레알사전2 | |
| | 2. 나의 인권 온도는? | -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리는 정도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도를 객관화시켜 본다. | (기초)<br>- 인권온도계와 인권지수 | |
| | | | (심화)<br>- 인권은 동전의 양면 | |
| 2.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 1. 도전! 인권맨! | -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유형을 알아본다.<br>- 고자질과 알림, 다툼과 폭력, 장난과 폭력에 대해 알아본다. | (기초)<br>-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 |
| | 2.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차별과 편견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기<br>- 차별과 편견에 대한 개념이해와 발생이유를 알아본다.<br>- 차별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본다. | (기초)<br>- 학교폭력 원인으로서 차별과 편견 | |
| | | | (심화)<br>- 학교폭력 원인으로서 차별과 편견 | |
| | 3. 퀴즈! 학교폭력! | -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요소에 대해 알아본다.<br>-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한 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인다. | (기초)<br>-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 |
| | | | (심화)<br>- 쉽게 풀어쓴 학교폭력인권선언문 | |
| 3. 인권 감수성을 찾아서 | 1. 학교폭력 없는 교실에서 생활할 권리 | - 학교폭력에 참여하는 역할 유형을 알아본다.<br>- 학교폭력은 집단 역동에 의한 행동임을 인식한다.<br>- 방관자 역할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인식한다. | (기초)<br>-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 |
| | | | (심화)<br>- 침묵하는 방관자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 |
| | 2. 잠깐맨과 계속맨 | - 학교폭력을 강화하는 '계속맨'과 약화시키는 '잠깐맨'의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에서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생에 의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기초)<br>- 방관자의 두 마음 | |
| | | | (선택)<br>- 잠깐맨을 불러주세요 | |
| | | | (심화)<br>- 잠깐맨은 인권지킴이 | |

<표 3-4> 모듈 2의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과 목표

**모듈 2: 소통과 화합(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권리존중에 대한 의무)**
인권 실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 회기 | 활동 | 목표 | 활동자료 | 관련 인권 |
|---|---|---|---|---|
| 4. 인권은 소통이다! | 1. 감정 읽기 | - 감정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한다.<br>- 감정의 민감성을 증진한다. | (기초)<br>- 감정을 느껴봐<br>(심화)<br>- 학교폭력의 감정 | 공동체에 대한 의무,<br>타인 권리 존중에 대한 의무 |
| | 2. 감각소통 | - 감각소통을 중요성을 인식한다.<br>- 감각소통 방법을 학습하여 내적 감정의 소통을 증진한다. | (기초)<br>- 안아주기 역할놀이<br>(선택)<br>-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 |
| | 3. 배려와 나눔 소통 | - 배려와 나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의 소통을 증진한다.<br>- 배려와 나눔 소통을 통해 인권의 권리적 측면과 책임적 측면에 대한 감성을 증진한다. | (기초)<br>- 텔레파시 소통 놀이<br>(선택)<br>- 들어주는 역할놀이(1)<br>- 말하는 역할놀이(2)<br>(심화)<br>- 교실에서의 배려와 나눔 | |
| 5.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 1. 교실공동체 인권옹호자, 또래조정 | - 학교폭력을 또래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br>-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한다 | (기초)<br>-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br>(선택)<br>- 또래 인권 상담소<br>(심화)<br>- 인권 사례 조정위원회 | |
| | 2. 교실조각과 교실 재조각 | - 학교폭력을 신체화시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경험한다.<br>- 학교폭력의 해결주체가 스스로가 되어 봄으로써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한다. | (기초)<br>- 교실조각 Q & A | |
| 6. 웰컴 투 존중교실 | 1. 인권 노래자랑 | - 인권옹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만화를 그려보거나 노래 개사를 통한 인권노래자랑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존중과 화합의 경험을 나눈다. | (기초)<br>- 인권 노래자랑<br>(선택)<br>- 학교폭력 예방 4컷 만화<br>(심화)<br>- 교실에서 찾은 인권 | |
| | 2.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 |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정신을 함양한다. | (기초)<br>-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br>(선택)<br>- 화해와 존중의 애플데이(1)<br>-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2)<br>(심화)<br>- 존엄한 너에게 | |

## 2. 프로그램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하였다. 대상 학생은 중학생 59명, 고등학생 91명 등 총 150명이었다. 중학교는 교과 시간을 이용해 1모듈을 시범 운영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시간을 이용해 1모듈과 2모듈 전부를 시범 운영하였다. 각 회기가 활동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 프로그램 운영자인 교사가 학교 실정과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기초, 선택, 심화 활동 중 하나를 골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활동 분량을 조절하여 시행한다면 45-50분 분량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었다. 진로시간을 이용한 경우, 학생들은 다른 교과 시간과는 차별화를 느끼며 즐겁게 프로그램에 임하였고 학교 수업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에서 인권과 학교폭력을 접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자료로 제시된 동영상이나, 몸으로 하는 활동들이 다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절하며 의미 있었다고 평하였다. 다만 활동 내용이 좀 많아서 충분히 활동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므로 어떤 회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다만 한 시간에 진행할 양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양을 하기 보다는 적당한 양을 선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하고 토의하고 스스로 해결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사정에 맞게 일반 교사, 진로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창의재량 시간이나, 진로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특수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교과 속에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 맞게 각 모듈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은 학교나, 고등학교 대비 학교폭력이 좀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중학교에서는 되도록 모듈 1과 2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모듈별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한 회기 또는 두 회기만을 떼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수업 내용 관련 부분에서 한 회기

만 떼어 내어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담임선생님이 학급 운영에 필요한 때에 한 회기만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한 학교에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한 회기를 독립적으로 실시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교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종결 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중학생 집단에서도 학년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 같았다. 참여자 학생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진행자 요인과 학생들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제 4장 결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인권 문제로 정의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권리 중 특히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안전권, 교육권, 평화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재조명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이들 인권요소를 반영하였다. 학교폭력의 2/3 이상이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학급단위의 방관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동영상, 만화, 퀴즈, 게임 등 다양한 매체 및 그와 연계된 토론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진행자가 손쉽게 활용하고, 학생들도 재미있게 인권과 학교폭력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권과 학교폭력 관련 문헌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과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하였으며, 인권 및 학교폭력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총 6회기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모듈 형태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네 학급 15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가족치료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정에서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매 회기 넣어 교사가 과제나 가정통신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가정에서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학교폭력을 인권침해의 문제로 재조명하여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인권요소를 추출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한 점, 개인의 감정읽기와 학급의 집단역동을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방관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유도한 점, 청소년의 인권실천 훈련에 주안점을 둔 점, 가정 내 인권을 다룬 점 등에서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반면 청소년 집단의 다양성,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등의 요인에 따라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를 수 있어,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초점이 다소 흐려진 부분은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자(진행자)가 교실 안의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청소년의 권리 중 하나이다. 청소년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이 회복되며, 학교폭력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 교육 프로그램

## ❑ 프로그램 구성표 (모듈 1)

| 모듈 | 회기 | 활동 (활동주제) | 학생 | | | | 교사 | 가족 | |
|---|---|---|---|---|---|---|---|---|---|
| | | | 학생 자료 | 학생 활동지 | | | | | |
| | | | | 기초 | 선택 | 심화 | 교사자료 | 가족자료 | 가족활동지 |
| 모듈 1 인권감수성 높이기 | 1회기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 활동 1 (인권레알사전) | 1. 인권 특성<br>2. 세계인권선언문<br>3.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지던 상황 | 1. 인권레알사전 Ⅰ<br>2. 인권레알사전 Ⅱ | | 1. 인권레알사전 Ⅰ<br>2. 인권레알사전 Ⅱ | 인권의 의미 | | 1. 가족과 인권<br>2. 부모-자녀간 인권실천 수준은?(Ⅰ)<br>3. 부모-자녀간 인권실천 수준은?(Ⅱ)<br>4. 가족인권의 권리와 책임<br>5. 다양한 가족 |
| | | 활동 2 (나의 인권온도는?) | 1. 청소년 헌장<br>2. 유엔아동권리협약 | 인권온도계와 인권지수 | | 인권은 동전의 양면 | | | |
| | 2회기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 활동 1 (인권적 관점에서 보는 학교폭력) | 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 | | 1.학교폭력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정답 Tip)<br>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 | | 1.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인권태도<br>2. 쉽게 풀어쓴 가정인권선언문 |
| | | 활동 2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1. 차이와 차별 그리고 편견 이야기<br>2.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 |
| | | 활동 3 (학교폭력으로 침해되는 인권) |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 |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 | 쉽게 풀어쓴 학교폭력 인권 선언문 | | | |
| | 3회기 (인권감수성을 찾아서) | 활동 1 (학교폭력 없는 교실에서 생활할 권리) | 방관이 왜 문제인가? |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 | 침묵하는 방관자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거야! | 1. '잠깐맨'과'계속맨' 놀이 진행 절차<br>2. 방관자들의 마음 | | 우리 가족도 방관자? |
| | | 활동 2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 1. 방관자의 두 마음 '계속맨'과 '잠깐맨'<br>2. '두 마음 교실' 역할극 상황 예시 | 방관자의 두 마음: '잠깐맨'과 '계속맨' | 잠깐맨'을 불러주세요! | 잠깐맨은 인권지킴이! | | | |

## ❑ 프로그램 구성표 (모듈 2)

| 모듈 | 회기 | 활동 (활동주제) | 학생 | | | | 교사 | 가족 | |
|---|---|---|---|---|---|---|---|---|---|
| | | | 학생 자료 | 학생 활동지 | | | | | |
| | | | | 기초 | 선택 | 심화 | 교사자료 | 가족자료 | 가족활동지 |
| 모듈 2 소통과 화합 | 4회기 (인권은 소통이다!) | 활동 1 (감정읽기) | 감정카드 | 감정을 느껴봐! | | 학교폭력에 나타난 우리의 감정은? | | 가족밥상소통 | 1. 가족소통1 감정읽기<br>2. 가족소통2: 포옹하기<br>3. 가족소통3 가족회담 |
| | | 활동 2 (감각소통) | | 안아주기 놀이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 | | | |
| | | 활동 3 (배려와 나눔 소통) | 벼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 | 텔레파시 소통 놀이 | 1. 들어주는 놀이<br>2. 말하는 놀이 | 교실에서의 배려와 나눔 | | | |
| | 5회기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 활동 1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 | 또래 인권 상담소 | 학교폭력 사례조정위원회 | 1. 또래조정이란?<br>2. 학급 단위 또래 조정 운영지침<br>3. 교실조각이란? | 가족갈등을 조정 받고 싶어요! | 1. 우리 집 갈등조정자는 누구?<br>2. 가족조각 |
| | | 활동 2 (교실 조각 및 교실 재조각) | 교실조각 및 재조각 | 교실조각 Q&A | | | | | |
| | 6회기 (웰컴 투 인권존중 교실) | 활동 1 (인권 노래자랑) | '교실에서 찾은 희망' 노래 가사 | 인권 노래자랑 | 학교폭력 예방 4컷 만화 | 교실에서 찾은 인권 | 인권 수호천사 되는 길 | 소중한 우리 가족 | 1. 존엄의 눈으로 보는 우리 가족<br>2. 인권 100%의 우리 가족<br>3. 가족 애플데이 |
| | | 활동 2 (웰컴 투 인권존중 교실) | |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 | 1. 화해와 존중의 '애플데이'<br>2.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 | 존엄한 너에게 | | | |

## ❑ 프로그램 활동지침

### 1. 프로그램 구성

**1) 본 프로그램은 2개의 모듈에 각 3회기로 총 14개 활동으로 구성됨**

- 학교상황에 따라 모듈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회기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각 활동은 한 개 차시로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2) 본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은 회기 개요, 도입, 전개, 마무리 순으로 이루어짐**

- 회기 개요는 활동목표, 활동개요, 주요내용, 유의사항, 기대효과, 활동과정 개요 포함
- 도입은 활동 목표와 내용 소개 및 동기 촉진으로 이루어짐
- 전개는 학생들이 실제 활동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마무리는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됨
- 도입, 전개, 마무리에 진행자를 위한 Tip이 제공됨

**3) 본 프로그램은 한 회기 당 2-3개의 활동으로 구성됨**

- 한 시간 내에 모든 활동을 운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한 시간에 하나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4) 각 활동은 활동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학생 자료, 학생 활동지, 교사 자료 순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 편집은 하나의 활동에 필요한 학생자료, 학생 활동지 순으로 이루어짐
- 교사 자료는 각 회기의 마무리 다음에 제시되며 학생활동지에 대한 정답이거나 회기 내용과 관련한 보조 자료로 이루어짐
- 학생 활동지는 기초, 선택, 심화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교실 및 학생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한 회기 마지막에는 가족대상 자료 및 활동지로 구성됨**

- 가족자료 및 활동지는 회기 목표와 내용에 맞게 구성됨
- 가족활동지는 과제로 제시되거나 혹은 학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용 가능함

**6) 본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가족 대상으로 구성됨**

- 학생대상에서는 학생 자료와 학생 활동지가 제공됨
- 교사대상에서는 교사 자료, Tip 등이 제공됨. 교사 자료는 경우에 따라서 학생 활동지에 대한 정답지일 수 있고 학습활동에 대한 보조자료 일 수 있음(상황에 따라 학생 활동지 정답이 도입 설명 다음 제시되기도 함)
- 가족대상에서는 가족 자료와 가족 활동지가 제공됨. 가족 활동지는 교사 및 진행자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 혹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음

## 2. 프로그램 진행방법

- 한 회기 당 활동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진행자는 상황과 시간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한 회기 당 활동이 2개 혹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활동을 한 차시로 운용하거나, 한 회기 당 모든 활동을 시간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각 활동은 '동영상(4회기는 제외)시청→학생 자료(ppt제공) 읽기→활동지하기'로 진행됨
- 교사멘트는 기초활동지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음

## 3. 프로그램 진행 순서

### 1) 한 회기를 1차시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 각 활동의 기초 순으로 진행하거나
- 각 활동의 심화 순으로 진행하거나
- 선택활동은 기초 혹은 심화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 회기의 각 활동을 1차시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 기초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선택 활동과 심화 활동을 적절히 추가하여 사용가능

### 3) 학년별 사용에서는

- 중학교는 기초 위주로 진행
- 고등학교는 기초 혹은 심화 위주로 진행
- 선택 활동은 모든 학년에서 사용 가능함

### 4)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서는

- 학교폭력 발생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기초 활동 위주의 진행
- 학교폭력 발생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초와 심화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진행

## 4. 프로그램 진행시 공통된 유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 전 4인 한 모둠으로 자리배치 한 후 활동 내용에 따라 2인 혹은 8인으로 모둠활동을 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시작 전 진행자는 프로그램 세부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시작 전 학생 자료와 학생 활동지를 학생 수대로 복사해 둔다.
- 프로그램 모든 내용이 ppt 자료로 제공되므로 진행자는 수업시간에 필요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4회기를 제외한 모든 회기에 동영상 자료(동기유발을 촉진)가 제공되므로 동영상 가용상태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
- 인권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영화 등 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부록 3에 제시하고 있음

# 모듈 1.
# 인권감수성 높이기

## 모듈 1의 프로그램 구성

| 회기 | 활동 (활동 주제) | 학생 | | | | 교사 | 가족 |
|---|---|---|---|---|---|---|---|
| | | 학생 자료 | 학생 활동지 | | | | |
| | | | 기초 | 선택 | 심화 | 교사자료 | 가족활동지 |
| 1회기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 활동 1 (인권레알사전) | 1. 인권 특성<br>2. 세계인권선언문<br>3.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지던 상황 | 1. 인권레알사전 Ⅰ<br>2. 인권레알사전 Ⅱ | | 1. 인권레알 사전 Ⅰ<br>2. 인권레알 사전 Ⅱ | 인권의 의미 | 1. 가족과 인권<br>2. 부모-자녀간 인권실천 수준은?(Ⅰ)<br>3. 부모-자녀간 인권실천 수준은?(Ⅱ)<br>4. 가족인권의 권리와 책임<br>5. 다양한 가족 |
| | 활동 2 (나의 인권온도는?) | 1. 청소년 헌장<br>2. 유엔아동권리협약 | 인권온도계와 인권지수 | | 인권은 동전의 양면 | | |
| 2회기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 활동 1 (인권적 관점에서 보는 학교폭력) | 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 | | 1.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정답 Tip)<br>2.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 | 1.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인권태도<br>2. 쉽게 풀어쓴 가정인권 선언문 |
| | 활동 2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1. 차이와 차별 그리고 편견이야기<br>2. 차이를 차별할 수 없어요!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
| | 활동 3 (학교폭력으로 침해되는 인권) |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 |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 | 쉽게 풀어쓴 학교폭력 인권 선언문 | | |
| 3회기 (인권감수성을 찾아서) | 활동 1 (학교폭력 없는 교실에서 생활할 권리) | 방관이 왜 문제인가? |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 | 침묵하는 방관자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거야! | 1.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진행절차<br>2. 방관자들의 마음 | 우리 가족도 방관자? |
| | 활동 2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 1. 방관자의 두 마음 '계속맨'과 '잠깐맨'<br>2. '두 마음 교실' 역할극 상황 예시 | 방관자의 두 마음: '잠깐맨'과 '계속맨' | '잠깐맨'을 불러 주세요! | 잠깐맨은 인권지킴이! | | |

모듈 1

# 1회기 :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 활동 목표

- 청소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증진한다.

❍ 활동개요

- 대상인원 : 반 인원 전체
- 장 소 : 교실
- 소요시간 : 45-50분
- 준 비 물 : 풀, 싸인펜, 학생용 자료 및 활동지 프린트물, 컴퓨터와 빔(동영상 시청)

❍ 주요내용

- 각 학생이 정의하는 인권 표현하기
-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기
-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이 지켜지는 정도를 객관화시키기
-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와 함께 책임의 필요성 알기

❍ 유의사항

- 학생활동지인 기초 및 심화단계는 학생 및 교실 상황에 맞추어 유연성 있게 선택한다.
- 두 개의 동영상이 제공되므로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 인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교실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할 경우 1회기의 모든 활동을 두 차시에 걸쳐 진행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 청소년이 권리와 더불어 책임을 인식하게 된다.
-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알게 된다.
- 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 활동과정 개요

<table>
<tr><th>단계</th><th colspan="3">주요활동내용</th><th>시간</th><th>비고</th></tr>
<tr><td>도입</td><td colspan="3">- 프로그램 소개<br>- 학습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td><td>5분</td><td></td></tr>
<tr><td rowspan="8">전개</td><td colspan="3">활동1 : 인권레알사전<br>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인권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인권감수성을 높인다.</td><td>20분</td><td></td></tr>
<tr><td>동 영상</td><td colspan="2">1. 최소한의 목록(3분 50초)<br>2. 우리에겐 인권이 있어요!(2분 45초)</td><td></td><td>선택 사용<br>ppt 활용</td></tr>
<tr><td>학생 자료</td><td colspan="2">1. 인권 특성<br>2. 세계인권선언문(전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br>3.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지던 상황</td><td></td><td>ppt 활용</td></tr>
<tr><td rowspan="2">학생 활동지</td><td>기초</td><td>1. 인권레알사전 만들기 Ⅰ<br>2. 인권레알사전 만들기 Ⅱ</td><td></td><td>인권레알사전 정답 p.62에 제공</td></tr>
<tr><td>심화</td><td>1. 인권레알사전 만들기 Ⅰ<br>2. 인권레알사전 만들기 Ⅱ</td><td></td><td></td></tr>
<tr><td colspan="3">활동2 : 나의 인권온도는?<br>청소년 권리와 책임을 읽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실제 생활을 온도계의 숫자에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인권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과 의무임을 알게 한다.</td><td>20분</td><td></td></tr>
<tr><td>학생 자료</td><td colspan="2">1. 청소년 헌장<br>2. 유엔아동권리협약(전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td><td></td><td>ppt 활용</td></tr>
<tr><td rowspan="2">학생 활 동 지</td><td>기초</td><td>인권온도계와 인권지수</td><td></td><td></td></tr>
<tr><td>심화</td><td>인권은 동전의 양면</td><td></td><td></td></tr>
<tr><td>마무리</td><td colspan="3">활동 내용 정리</td><td>5분</td><td></td></tr>
</table>

## 도입

내 용 ▸ 이번 회기 활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인다.
진행방법 ▸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교사멘트 :**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본 프로그램은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인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들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Tip

- 진행자는 교사용 자료 및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읽고 이해를 한 후에 진행한다.
- 동영상은 반드시 가용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 http://blog.daum.net/nhrck.nhrck9972/840(별별이야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리 일상 속 별별 인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인권 개념을 만화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전개 : 활동1

내 용 ▸ 인권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권 레알 사전을 만들어본다.

진행방법 ▸ 동영상(최소한의 목록 혹은 우리에겐 인권이 있어요!)을 시청한다.

▸ <학생 자료 1>(인권특성), <학생 자료 2>(세계인권선언문), <학생 자료 3>(세계인권선언문이 이루어지던 상황)을 함께 읽는다.

▸ <학생 활동지>를 하고 발표한다.

**교사멘트 :**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권에 관한 동영상 시청을 하고, 이어서 세계인권선언문과 인권특성을 함께 읽어본 다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 레알 사전을 만들어보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 인권 동영상은 2개 제시되므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 인권레알사전은 기초와 심화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2개의 활동지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와 심화를 섞어서 혹은 각각 사용할 수 있다.

| 인권 동영상 시청 | |
|---|---|
| **모든 사람 1부-최소한의 목록 (3분50초)**<br>**- 동영상 제작: 지식채널 e** | **우리에겐 인권이 있어요! (2분45초)**<br>**- 동영상 제작: 인권과 평화의식** |
| | |
| 내용: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목록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내용: 인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 http://www.youtube.com/watch?v=7d-z4VIyqmw | http://www.youtube.com/watch?v=7XF5xRv6L0k |

| **<기초 학생 활동지> 정답 설명** |
|---|
| <기초 학생 활동지 1> 2번 그림이 인권문제가 되는 이유<br>그림 1은 호텔예약 안내판으로 안내는 늘 여자, 손님은 늘 남자, 그림2와 그림3은 아동의 보호는 늘 엄마(여자)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br><기초 학생 활동지 2>의 2번 그림이 인권문제가 되는 이유<br>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그림1은 집단 따돌림 문제, 그림2는 신체적 폭력, 그림 3은 놀림이나 괴롭힘의 문제로 세 그림 모두 학교폭력 문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

학생 자료 1

# 인권 특성

**1.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타고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2.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3. 인권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권리이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될 뿐이다.

**4.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으로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a).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림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www.unicef.or.kr)

## 학생 자료 2

# 세계인권선언문[10]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조**: 차별은 안 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다른 사람 혹은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0)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은 부록 1 p.199 참조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쫓겨나지 않는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이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29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1a).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그림 이원복)

학생 자료 3

#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지던 상황

## 1. 세계인권선언이 나오던 당시 배경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한 정부가 자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나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자행된 파시스트 정권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자유' 이후, 루스벨트와 영국의 수상 윈스틴 처칠 사이의 대서양 헌장협약 역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942년 연합국의 유엔 선언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 후 전쟁 막바지가 되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헌장을 만드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46년 4~5월에 인권이사회가 만들어졌으며, 6월에 18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194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6월에 인권선언에 대한 초안위원회가 구성되어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회의에서 문구에 대한 조정과 민감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지속되었다. 마침내 1948년 12월 10일 찬성 48표, 반대 0표, 기권 8표(공산권 국가, 남아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 2.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쟁점

▪ **자연법 대 실증주의** : 인권주장의 근거와 관련된 논쟁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자연의 시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연법의 입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인권은 인간의 나아가서는 국가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적 사고가 있다.

▪ **자유주의 대 마르크스주의** :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쟁점은 중요한 대립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권리는 집단을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한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우선으로 주장하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자유권, 시민권적 권리보장을 우선으로 주장한다.

▪ **서방국가와 제3세계** : 자연법, 실증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모두 서구 사회의 철학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래서 비유럽국가가 가진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인권이 문화와 가치의 차이 없이 세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 핵심은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UN 소속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투표할 때, 몇몇 나라에서 기권은 있었지만,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에 세계인권선언의 의의가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c).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기초 학생 활동지

# 인권레알사전 Ⅰ

## 1. 인권레알사전

☺ 예시 :
나에게 인권이란 (무지개)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답변한 단어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 나에게 인권이란 (　　)이다.<br>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
|---|---|

## 2. 아래 그림들은 왜 인권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림 1

그림 2

그림 3

## 3. <학생 자료 2> '세계인권선언문' 조항 중 우리 학교 및 교실에서 자주 침해되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왜 그런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기초 학생 활동지

# 인권레알사전 II

## 1. 인권레알사전

☺ 예시 :
인권에게 학교폭력이란 (상처)이다. 왜냐하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니까.

| 답변한 단어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 인권에게 학교폭력이란 _____이다.<br><br>왜냐하면 _____ . |
|---|---|

## 2. 아래 그림들이 왜 인권문제이며 어떤 인권 조항에 위배되는지 찾아보세요.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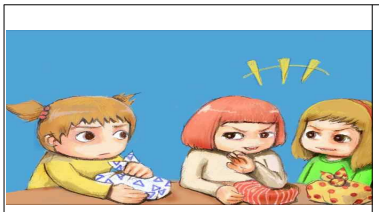 | | |
| 그림 1 | 그림 2 | 그림 3 |

그림출처: http://cafe.daum.net/sunghwachildren/DcDV

## 3. 여러분이 아래 사례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요?

사례 1: **입 벌리고 웃는다고 놀릴 때** 나도 의식적으로 입 안 벌리고 있으려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자꾸 놀림을 받는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이 벌어지는 걸 어쩌란 말인가?

사례 2: **자기가 필요할 땐 친구고, 내가 필요하면 외면할 때** 내가 자기 교실로 가서 책이나 체육복을 빌리려고 했을 때는 안 빌려 주었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우리 반에 와서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너도 안 빌려줬잖아"라고 말했더니 치사하다고 말했다.

사례 3: **자고 있을 때 머리 때리는 친구들** 아마도 중3 때였을 것이다. 컴퓨터 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너무 졸려 학교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머리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했다. 짜증하서 얼굴을 봤는데,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 날 이후 그 애와 말도 안하는 사이가 되었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3).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심화 학생 활동지

# 인권레알사전 Ⅰ

## ▣ 인권레알사전

심화에서는 인권을 추상명사로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추상명사를 사용하여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 예시 : 나에게 인권이란 (사랑)이다. 왜냐하면 늘 주고받고 싶기 때문이다.

| 답변한 단어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 나에게 인권이란 (　　)이다.<br>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
|---|---|

## ▣ 아래 그림들이 왜 인권문제인지를 나누어 보세요.

출처: 웹진 인권(http://edu.humanrights.go.kr). 특!별한 시민들(유승하), 2004.11

심화 학생 활동지

# 인권레알사전 II

▣ 다음에서 폭력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있는 대로 골라보고 그 까닭을 말해 봅시다.

☺ 보기 :

차별, 차이, 편견, 존중, 침해, 관용, 간섭, 배려, 무시, 갈등, 소통, 욕구, 소속감, 타협, 평화

✎ 왜냐하면_____

_____

▣ 아래 그림을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인권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출처: 웹진 인권(http://edu.humanrights.go.kr), 비켜!(유승하), 2004.8

## 전개 : 활동2

내 용 ▸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의 인권행동을 객관화 시켜본다.
▸ 인권에서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이유를 알아본다.

진행방법 ▸ <학생 자료 1>(청소년헌장)과 <학생 자료 2>(유엔아동권리협약)를 읽는다.
▸ <학생 활동지>를 하고 발표한다.

**교사멘트 :**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또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권리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헌장에서는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헌장에서 강조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함께 읽어보고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책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인권에서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ip**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헌장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제공되는 ppt자료를 통해 학생 모두가 함께 읽어보도록 지도한다.
- 마지막 활동이 끝난 뒤 진행자는 인권에서 권리와 책임 혹은 의무가 동시에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진행자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한다.

학생 자료 1

## 청소년 헌장

#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헌장은 모든 청소년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권(참여권), 생존권, 복지권, 노동권, 발달권 등 보편적인 제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정, 학교, 국가, 사회는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게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살아간다.

출처: 문화관광부(1998.10.25). 함께 여는 인권교실

학생 자료 2

## 유엔아동권리협약[11]

협약이란, 국가들 사이에 같은 법을 지키기로 결정한 합의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면 이 협약을 지킨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갖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협약의 54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두 개는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에 관한 권리, 생존에 관한 권리,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개성·능력·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권리,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행복과 사랑과 이해가 함께하는 환경에서 자라고 살 권리, 자기주장을 할 권리, 가정·문화 및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사람은 자랄수록 선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이 점점 커집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책임도 담고 있습니다. 아동은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을 책임, 환경을 돌보기 위해 노력할 책임, 능력이 닿는 대로 많이 배우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며 경험을 책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 또는 종교적 원칙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www.unicef.or.kr)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은 부록 2 p.204 참조

기초 학생 활동지

# 인권온도계와 인권지수

▣ 나는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아래 칸을 채워 봅시다. (온도는 100도가 최고이며, 중간은 50도, 최저 0도입니다).

| 가정 | | 학교 | |
|---|---|---|---|
| 권리온도 | 책임온도 | 권리온도 | 책임온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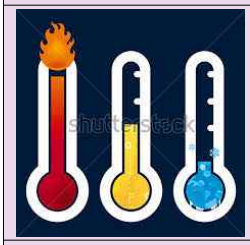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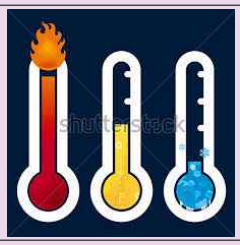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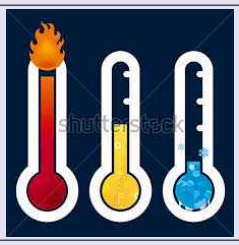 | |
| ℃ | ℃ | ℃ | ℃ |
| 이유 : | 이유: | 이유: | 이유: |

▣ '내가 누리는 권리'와 '내가 지키는 권리'를 비교해 봅시다. 체크 점수는 각 1점이고 다 더하면 자기 점수가 됩니다. 모둠원끼리 공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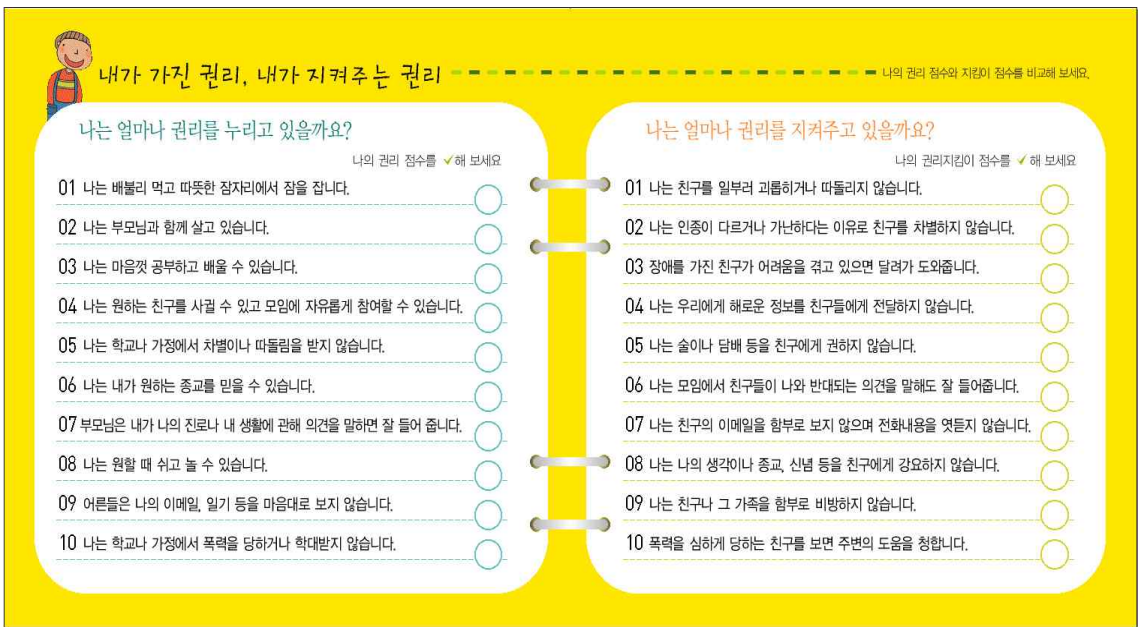


출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06).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

심화 학생 활동지

# 인권은 동전의 양면

▣ 인권의 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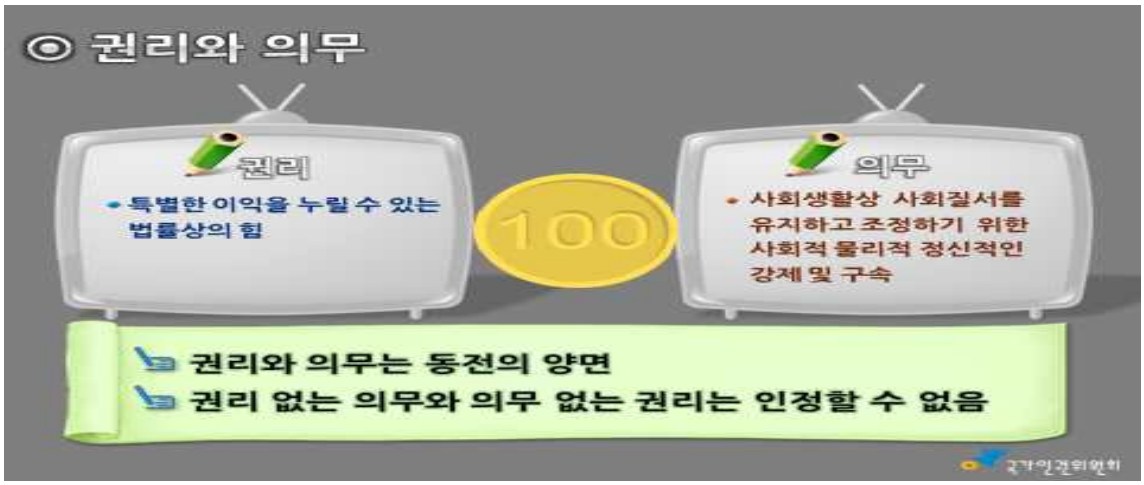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3). 인권교육표준교안ppt

▣ 인권에서 '권리'와 함께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왜냐하면 _____

_____

✎ 왜냐하면 _____

_____

▣ 인권에서 '권리'와 '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인권에게 권리란 ( )이다.

왜냐하면 _____

✎ 인권에게 의무란 ( )이다.

왜냐하면 _____

## 마무리

내　　용 ▸ 활동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진행방법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다음 활동을 소개한다.

**교사멘트 :** 오늘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인권의 중요성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가정과 학교에서 인간존엄성이 어느 정도 존중받고 존중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인권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Tip**

- 몇몇 학생에게 활동 소감을 질문하여 활동에 대한 느낌을 피드백 받는다.
- 가족활동지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하여 가족 내에서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촉진시킨다.

교사 자료

# 인권의 의미

1946년 UNESCO의 탄생과정에서 기구의 성립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권적인 자유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여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도출된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나온다. 여기서 '타고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로서 인간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즉,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 유무, 수입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 종교적 특성,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여야 한다. 또한 인권의 내용이 실체법으로 정해지고 시행되느냐 하는 것과도 상관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소유하는 권리의 최고 가치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될 뿐이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이 약자의 권리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희생위에 확보된 인간의 권리이다. 현재도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고통을 받는 약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인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바로 약자들인 인권 피해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인간인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분적으로 인간의 삶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나의 인권은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결국 전 인류가 인권을 누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이다.***

인권은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다. 인권 침해 현상이 사회적 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불평등 구조로 억압받는 제3세계나, 한 국가 내에서 고통 받는 소수집단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만 인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국가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집단까지 포괄하는  인권개념은 인권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장시켜 인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더 높여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개인과 집단 간의 불가분성을 갖는다.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한 국가 내 구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 인간은 그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한받고 살아간다. 인권은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인권은 제도적 제한과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위협받거나 부정될 때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용할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인권은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게 된다. 즉,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습,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위 밖에 있는 제도나 법률, 관습에 대하여 도전을 통해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사회가  변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사회변화 요구'에 기초하여 행해진 끊임없는 투쟁이 현재의 인권상태를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인권을 점점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b). 사람이 곧 하늘이다.

**가족 활동지 1**

# 가족과 인권

▣ 아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 중 일부입니다. 1989년에 유엔이 만든 법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부모님들께서 아래 조항을 읽어보시고 자녀에게 이러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시고 가정에서 이러한 조항들과 관련하여 실천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빈 칸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 | | |
|---|---|---|
| **[16조 사생활보호]**<br>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br>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 **[18조 부모의 책임]**<br>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 | | |
| **[19조 폭력과 학대]**<br>우리의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4조 영양과 보건]**<br>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9조 교육의 목적]**<br>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 | | |
| **[31조 여가와 놀이]**<br>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32조 어린이 노동]**<br>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br>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 | | |

## 가족 활동지 2

# 부모-자녀 간 인권실천 수준은?( I )

▣ **다음은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토론해 봅시다.**

| 사례 | 이유 |
|---|---|
| 1. 자녀가 집에서는 학교 및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자녀의 동의를 묻지도 않고 자녀 메일이나 SNS에 남겨진 이야기를 몰래 본다. | |
| 2.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녀가 다닐 학원을 부모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닐 것을 종용한다. | |
| 3. 자녀가 가족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자녀가 시험기간이라 시험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
| 4.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를 놀리는 일을 걱정하며 부모에게 말하자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그런 일에 괜히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말한다. | |
| 5. 부모 말을 너무 듣지 않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자녀를 때린다. | |
| 6. 오빠가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부모가 여동생을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 |
| 7. 자녀가 이혼한 가정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친구와 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한다. | |
| 8. 자녀가 힙합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데도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치마를 입게 한다. | |
| 9. 자녀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는 “저런 아이와 놀면 안 돼.”라고 말한다. | |
| 10.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가 친구와 놀러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학원만 다니게 한다. | |
| 11.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를 강요한다. | |
| 12. 자녀의 선호나 적성보다는 부모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녀의 학교나 학과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 |
| 13. 자녀가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무조건 내 자식이 옳다고 주장한다. | |
| 14. 자녀가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게임 중에 사전 통보 없이 전기코드를 뽑아버린다. | |
| 15. 자녀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을 알고는 자녀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 자녀 몰래 자녀의 이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와 만나지 말 것을 통보한다. | |

**가족 활동지 3**

## 부모-자녀 간 인권실천 수준은?(II)

▣ **다음은 자녀가 부모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토론해 봅시다.**

| 사례 | 이유 |
|---|---|
| 1. 가족약속을 통해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 자신은 어지럽힌 게 없다며 대청소에 동참하지 않는다. | |
| 2.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명품 옷을 사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한다. | |
| 3. 학교생활과 공부가 힘들고 삶이 고단해 엄마에게 말로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다. | |
| 4. 소액결제를 위해 부모 허락 없이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했다. | |
| 5. 엄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 |
| 6. 집안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고액과외 시켜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무능하다고 대들었다. | |
| 7. 돈이 필요하면 집안의 물품(부모 돈으로 산)을 팔거나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한다. | |
| 8. 부모에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예: 욕설)을 한다. | |
| 9. 부모님에게 허락 받지 않고 부모 지갑에 손을 댄다. | |
| 10. 등하교 시 부모가 건네는 인사에 대꾸 하지 않거나,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 | |
| 11. 부모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온다. | |
| 12. 부모의 직업이 보잘 것 없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 |
| 13. 부모의 장애가 부끄러워 부모와 함께 외출하지 않는다. | |
| 14. 부모의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학교에 오지 못하게 말렸다. | |
| 15. 자녀가 부모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다. | |

## 가족 활동지 4

## 가족 인권의 권리와 책임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부모님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인권은 자칫 권리적 측면만 강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권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해야 하며, 권리적 측면과 책임적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 의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기도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1. 가족공동체 생활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양보해야 할 권리와 자녀가 부모에게 양보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한 경험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의논하여 가족 인권을 존중하는 가훈을 지어 봅시다.

**우리 집 인권 가훈**

**가족 활동지 5**

# 다양한 가족

가족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가족, 조손 가족,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가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설명된 각 항목의 구성원의 조합 중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 표 해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체크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 사례 | |
|---|---|
| 1. 남편과 부인,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자녀 | |
| 2. 미혼모와 그 자녀 | |
| 3. 52세의 여성과 그녀의 양어머니 | |
| 4. 60대 남성, 30대 딸, 8세 손자 | |
| 5. 84세 과부와 그녀의 개 | |
| 6. 두 레즈비언과 그 중 한 명이 이전 결혼에서 낳은 두 자녀 | |
| 7. 사촌 지간인 두 명의 성인 남성 | |
| 8. 이혼한 남성과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아들 | |
| 9.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사는 두 남녀 | |
| 10. 고인이 된(사망한) 부부의 양가 부모들 | |
| 11. 이혼한 두 여성(서로 친구)과 그녀들의 자녀 다섯 명 | |
| 12. 가출한 청소년들 4명과 함께 거주하는 수녀님 | |
| 13. 자녀가 없으며 직업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는 부부 | |
| **모두 몇 개의 항목에서 가족이라고 인정하셨나요? ( ) 개** | |

출처: Klein, D. M. & White, J. M. 저. 김종천 역(2000). 가족이론, 대학출판사 p.54에서 발췌 수정함.

모듈 1

# 2회기 :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 활동 목표

-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장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한다.
- 학교폭력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인다.

❍ 활동개요

- 대상인원 : 반 인원 전체
- 장　　소 : 교실
- 소요시간 : 45-50분
- 준 비 물 :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 빔 프로젝트, 학생 자료 및 활동지 프린트물, 필기도구

❍ 주요내용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장난에 대해 알아보기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아보기
- 학교폭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요소 인식하기

❍ 유의사항

- 기초와 심화가 함께 제시된 활동지는 학생수준 혹은 교실의 학교폭력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선택 활동지는 기초 활동지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 2회기의 활동은 내용이 많으므로 한 차시 혹은 두 차시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기초 학생 활동지>는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 학교폭력과 인권을 연관시켜 학교폭력이 인권침해 행동임을 인식하도록 강조한다.

❍ 기대효과

- 학교폭력은 인권침해 행동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차별과 편견에 의한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
- 장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

❍ 활동과정 개요

| 단계 | 주요활동내용 | | | 소요 시간 | 비고 |
|---|---|---|---|---|---|
| 도입 | - 프로그램 소개<br>- 학습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 | | 5분 | |
| 전개 | **활동1 : 인권적 관점에서 보는 학교폭력**<br>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유형을 알아본다. 그리고 고자질과 알림, 다툼과 폭력, 장난과 폭력에 대해 알아본다. | | | 20분 | |
| | 동영상 | 학교폭력 vs 장난(1분19초) | | | ppt 활용 |
| | 학생 자료 | 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 | |
| | **활동2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br>차별과 편견에 대한 개념이해와 발생이유를 알아보고 차별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본다. | | | 20분 | |
| | 동영상 | 1. 당신이 했던 차별, 당신이 받았던 차별(1분 50초)<br>2. 코미디에 빠지다: 편견제로(2분49초) | | | 선택하여 사용하기 |
| | 학생 자료 | 1. 차이와 차별 그리고 편견 이야기<br>2.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차별과 편견 정답 p.89 하단에 제공 |
| | | 심화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 | |
| | **활동3 : 학교폭력으로 침해되는 인권**<br>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요소를 알아보고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한 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인다. | | | 20분 | |
| | 동영상 | 1. 학교폭력 예방 페이퍼모션(3분 37초)<br>2. 공존동생(3분 38초) | | | 선택하여 사용하기 |
| | 학생 자료 |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 | 교사 자료 1 (p.100)에 정답 Tip제공 |
| | | 심화 | 쉽게 풀어쓴 학교폭력 인권선언문 | | |
| 마무리 | 활동 소감 나누기 | | | 5분 | |

## 도입

내　　용 ▸ 회기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인다.
진행방법 ▸ 회기의 활동내용을 설명한다.

**교사멘트 :** 오늘의 활동 내용은 학교폭력과 인권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인권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아본 다음 학교폭력이 인권의 어떠한 측면을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개 : 활동1

내　　용 ▸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알아본다.
▸ 장난으로 시작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진행방법 ▸ <학생 자료>(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를 함께 읽어본다.
▸ 학교폭력 vs. 장난 동영상을 시청한다.
▸ <학생 활동지>를 모둠별로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활동 1은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고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때 알리는 행동은 친구를 돕기 위한 활동이므로 고자질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동영상 시청

**학교폭력 vs. 장난(1분 19초)**

**- 동영상 제작: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내용: 남자고등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결국 한 친구를 자살로 몰고 갔으며, 가해자 학생은 범법자가 된 이야기를 짧게 구성한 내용으로 누군가에겐 장난이었을지 모를 그 행동,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음

http://www.youtube.com/watch?v=pYP9GssyYzM

학생 자료

# 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 ▣ 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이란?

학교라는 교육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학교청소년의 존엄권, 평등권, 안전권, 자유권, 평화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대표적인 학교 내 반인권적 현상

## ▣ 학교폭력 유형

출처: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난 아픈데 넌 장난?' ppt 자료

기초 학생 활동지

#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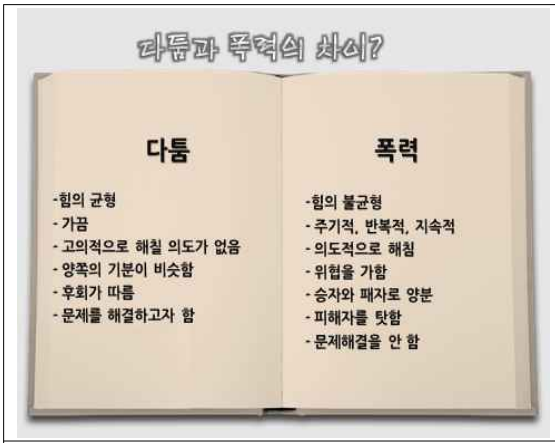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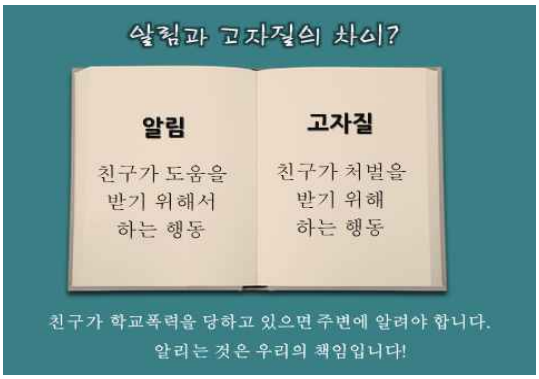


출처: 최성애·조벽(2012). 교사를 위한 감정코칭

1. 동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장난으로 한 행동 중에서 친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것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 폭력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3.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자질'과 '도움을 청하는 행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 활동 후 모둠원끼리 공유해 보세요.

## 전개 : 활동2

내 용 ▸ 학교폭력 원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아본다.

진행방법 ▸ 차별과 편견에 대한 동영상 시청한다.

▸ <학생 자료 1>(차이와 차별 그리고 편견이야기)과 2(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를 읽는다.

▸ <학생 활동지>(학교폭력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를 모둠별로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지금 할 활동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마치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편견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이에 대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당신이 했던 차별, 당신이 받았던 차별<br>(1분50초)<br>- 동영상 제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코미디에 빠지다-편견제로<br>(2분49초)<br>- 동영상 제작: MBC 편견제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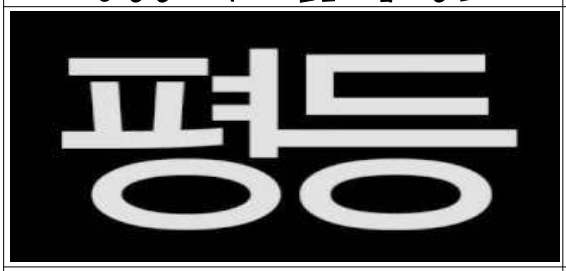 | |
| 내용: 차별의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짧게 보여주는 내용 | 내용: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편견을 코믹하게 구성 |
| http://www.youtube.com/watch?v=Cyg_DhxS3B8 | http://www.youtube.com/watch?v=3W3SvQ3QL9s |

### <학생 활동지> 정답 설명

**<기초 학생 활동지> 2번과 4번 설명**

2번 정답: 2번(1번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가 옳으며, 3번은 '성별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표현해야 하며, 4번은 '답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라고 해야 함)

4번 정답: 처음 그림은 장애인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림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그림이다. 장애인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게 되면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멀리하게 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장애인을 배제 및 소외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심화 학생 활동지> 2번 설명**

처음 그림은 취업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지방대 출신은 능력이 적을 것이라는 편견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두 번째 그림은 부모가 없는 고아출신은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학생 자료 1

# 차이와 차별 그리고 편견 이야기

▣ **차이와 차별 그리고 편견**

차이: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차별: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

편견: 어느 한쪽만을 본다는 말로서 특정 대상에 대해 분명한 이유 없이, 구체적이고 정당한 근거 없이 호감 혹은 비호감을 갖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왜 차별을 할까요?**

1. 차별의 시작은 '다르다'를 '틀리다'로 쓰는 우리의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2. 편견도 차별을 가져옵니다.
3.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4. 자신과 다른 것을 구분 짓는 습관이 차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왜 편견을 가질까요?**

1. 편견을 갖는 게 누군가에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위에 선 집단은 편견을 통해서 다른 집단을 쉽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은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사실일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어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 "살색은 없어요"

크레파스에서 '살색'이 사라진 것은 2002년 11월의 일이다. 기술표준원이 그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색' 대신 '연주황'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살색은 특정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하며,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김해성 목사(당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현 지구촌사랑나눔 대표)와 외국인노동자 3명이 2001년 8월 '크레파스 색깔 가운데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2004년 8월, '딸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김 목사의 큰딸 민하 양(당시 중1)과 둘째딸 민영 양(당시 초등학교 5), 그리고 이들의 또래 친척 등 6명이 인권위를 찾아 연주황에 반기를 든 것. 이들은 연주황이 한자어 표기여서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므로 '살구색'이나 복숭아색'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결국 기술표준원은 2005년 5월17일 '연주황'을 '살구색'으로 개정 고시했다.

출처: 웹진인권(2010.5). '살색은 없어요'

학생 자료 2

##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

기초 학생 활동지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1. 동영상 및 <학생 자료>를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우리)가 했던 차별'과 '내(우리)가 겪었던 차별'을 떠올려 봅시다.

◆ 내(우리)가 했던 차별

◆ 내(우리)가 겪었던 차별

2. 아래 그림 중 '틀리다'와 '다르다'의 의미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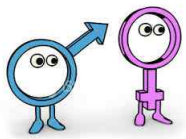 | 4+9=16 |
|---|---|---|---|
| | | 성별이 **틀리다** | 답이 **다르다** |
| 그림 1번 | 그림 2번 | 그림 3번 | 그림 4번 |

3.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시) 염색한 학생은 불량청소년이다.

4. 다음 두 그림의 차이점과, 앞그림에 숨어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차이점:

◆편견:

5. <학생 자료 1>에서 제시한 "살색은 없어요"와 같은, 학교생활에서 보완되어야 할 차별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화 학생 활동지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

1. 동영상 및 학생 자료를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우리)가 했던 차별'과 '내(우리)가 겪었던 차별'을 떠올려 봅시다.

- 내(우리)가 했던 차별

- 내(우리)가 겪었던 차별

2. 다음 만화 속에서 말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50자 이내로 요약해 보세요.

출처 : 웹진 인권(http://www.humanrights.go.kr). 편견을 버려! 편견이 장애물입니다 (유승하), 2005.2

3. 아래는 인권잡지 『웹진 인권』의 표지입니다. 제시된 예시처럼 편견과 차별 그리고 학교 폭력과 인권을 주제로 하여 잡지 표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림과 글을 빈칸에 채워 봅시다.

통권 65호
2010.11*12

사람과 사람의 다름이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차별을 만든다.

- 표지이야기 _ 박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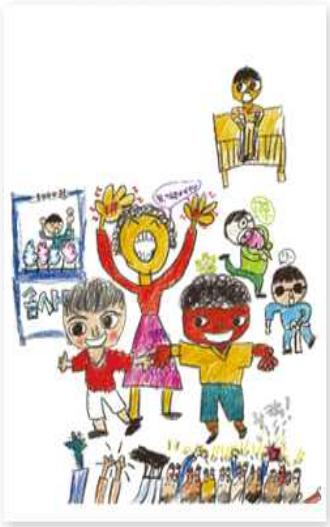

통권 59호
2009.11*12

다리가 아픈 동생은 노래를 잘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는 마음이 곱습니다.
나는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 표지이야기 _ 육청호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4. 아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차별과 편견을 볼 수 있나요?

사례) **'혼혈아 왕따, 자살 비행 급증'**

각급 학교에서 혼혈아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왕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A군(15)이 지난 9일 아파트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두들겨 맞았다"며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A군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올 들어 혼혈아 왕따 관련 자살자는 13명으로 늘었으며 경찰에 접수된 왕따 피해 신고도 하루 평균 10.9건에 이른다고 한다.

출처: 국민일보, 2004.12.9.

## 전개 : 활동3

내 용 ▸ 학교폭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침해되는 인권요소를 파악한다.

진행방법 ▸ 학교폭력 동영상 1(학교폭력 예방 페이퍼모션 UCC) 혹은 2(공존동생)를 시청한다.

▸ <학생 자료>(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를 다 함께 읽도록 한다.

▸ <학생 활동지>를 모둠별로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활동 3은 학교폭력이 인권침해 행동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우선 학교폭력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교폭력의 사례를 통해 침해되는 인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 학생활동지의 정답은 교사 자료에 제시하고 있다. 정답으로 제시된 인권 이외에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인권요소를 답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자는 정답을 하나로 고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활동 3의 모든 내용은 학교폭력에서 침해되는 인권요소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학교폭력과 인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table>
<tr><th colspan="2">동영상 시청</th></tr>
<tr><td>학교폭력 예방 페이퍼모션 UCC<br>(3분 37초)<br>- 동영상 제작: 법사랑 서포터즈 4기 드리:울</td><td>공존동생 (3분 38초)<br>- 共存同生 프로덕션</td></tr>
<tr><td> </td><td> </td></tr>
<tr><td>내용: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페이퍼모션기법으로 간략하지만 의미 있게 전달한 내용</td><td>내용: 못생겼다는, 냄새난다는 이유로, 재수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친구의 이야기</td></tr>
<tr><td>http://www.youtube.com/watch?v=ySX_PiBSZI4</td><td>http://www.youtube.com/watch?v=Xck0NgMfXGI</td></tr>
</table>

학생 자료

#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

## ▣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

| | |
|---|---|
| **존엄권** | ·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의 가치를 보장받는 권리<br>· 사생활 보호 및 폭력이나 모욕 등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 **평등권** | · 비차별 및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br>· 성별, 외모, 성적, 가정환경, 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자유권** | · 학대와 방임 및 착취 방지,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br>·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부당한 대우,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교육권** | · 개인은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가치를 배울 권리<br>·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
| **평화권** | ·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br>· 개인 간, 집단 간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
| **안전권** | · 모든 사람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br>· 고통이나 불행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안정될 권리 |
| **공동체 의무** |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져야함<br>· 공공질서, 공공의 선, 도덕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 | · 어떤 권리와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br>·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기초 학생 활동지

#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 **활동 3의 <학생 자료>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권'을 읽은 후 아래 각 상황들에서 침해되는 인권요소를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문항 내용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교육권, 평화권, 안전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 권리에 대한 존중의 의무

| 문항 | 침해된 인권요소 |
|---|---|
| 1. 나를 괴롭히는 급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교통카드와 스마트폰으로 과자를 사고 게임을 결제한다. | 예) 존엄권, 자유권 |
| 2. 내 피부색이 다르다고 급우들이 '야, 필리핀'이라고 부른다. | |
| 3. 급우들은 내가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 비웃으며 조별활동에서 은근히 제외시켰다. | |
| 4.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 했다. | |
| 5. 급우의 괴롭힘이 겁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 |
| 6. 급우들 싸움에 시끄러워서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 |
| 7. (남학생) 남자가 예쁘게 생겼다면서 친구들이 뽀뽀하고 포옹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 |
| 8. 일진에서 탈퇴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탈퇴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한다. | |
| 9. 친구의 협박에 친구 게임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게임을 하느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 |
| 10. 급우들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한다. | |
| 11. 우리 운동팀 친구들이 탈의실에서 단체로 나를 괴롭히며 라커에 가두었다. | |
| 12. 친구가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위협했다. | |
| 13. 급우들이 나에게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올 것을 강요한다. | |
| 14. 공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공부에만 집중한다. | |
| 15.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분쟁에 관여하거나 참견하는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 |
| 16.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 왕따인 친구를 더욱 괴롭혔다. | |

심화 학생 활동지

# 쉽게 풀어쓴 학교폭력 인권선언문

▣ **세계인권선언문을 보고 각 조항의 내용을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인권조항으로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 | |
|---|---|
|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제2조**: 차별은 안 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
| 예시)<br>제1조: 우리는 모두 귀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모든 학생이 평등하다. | |
|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 |
| | |
|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 **제8조**: 억울할 때는 다른 사람 혹은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 |
|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쫓겨나지 않는다. |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
| | |
|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이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 | |
| **제29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
| | |

## 마무리

내 용 ▸ 활동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진행방법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다음 활동을 소개한다.

**교사멘트 :** 오늘은 학교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차별과 편견을 통해 그리고 '이 정도가 무슨 학교폭력이야'라는 마음으로 쉽게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친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침해하는 인권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분명히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때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Tip

- 시간이 허용되면 오늘 활동 소감을 모둠별로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가족활동지를 과제로 제시한다.

교사 자료 1

#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정답 Tip

▣ **활동 3의 <기초 학생 활동지> '학급 내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응답한 답에 대한 이유를 듣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교육권, 평화권, 안전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 권리에 대한 존중의 의무

| 문항 | 침해된 인권요소 |
|---|---|
| 1. 나를 괴롭히는 급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교통카드와 스마트폰으로 과자를 사고 게임을 결제한다. | 예) 존엄권, 자유권 |
| 2. 내 피부색이 다르다고 급우들이 '야, 필리핀'이라고 부른다. | 평등권, 존엄권 |
| 3. 급우들은 내가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 비웃으며 조별활동에서 은근히 제외시켰다. | 존엄권, 평등권 |
| 4.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 했다.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 5. 급우의 괴롭힘이 겁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 안전권 |
| 6. 급우들 싸움에 시끄러워서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 타인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 교육권 |
| 7. (남학생) 남자가 예쁘게 생겼다면서 친구들이 뽀뽀하고 포옹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 존엄권, 자유권 |
| 8. 일진에서 탈퇴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탈퇴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한다. | 평화권 |
| 9. 친구의 협박에 친구 게임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게임을 하느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 평화권, 자유권 |
| 10. 급우들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한다. | 존엄권, 자유권 |
| 11. 우리 운동팀 친구들이 탈의실에서 단체로 나를 괴롭히며 라커에 가두었다. | 안전권, 자유권 |
| 12. 친구가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위협했다. | 교육권 |
| 13. 급우들이 나에게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올 것을 강요한다. | 자유권, 안전권 |
| 14. 공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공부에만 집중한다.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 15.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분쟁에 관여하거나 참견하는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 16.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 왕따인 친구를 더욱 괴롭혔다. | 타인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 |

교사 자료 2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 5개 영역 20개 분야의 52개 정책을 권고함.

## 1. 권고 배경

2011년 12월 ○○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 부각시켰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가 늘어났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위원회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살피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다른 갈등요소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등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견지의 조망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 2. 추진 경과

2011년 12월 10일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을 심층적·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연구기획단은 교원단체, 학교교원, 각급 교육청 장학사와의 간담회,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의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3회의 내부 토론을 통해 종합정책권고안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4월 6일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NGO,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종합정책권고시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의견도 조회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종합정책권고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며, 전원위원회 2회를 거쳐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 3. 권고 사항

| 구분 | | 권고 | 피권고기관 |
|---|---|---|---|
| I 인권교육의 제도화 | 1. 인권교육 제도 기반마련 | I-1-1.「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로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 I-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함양 및 창의력계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 |
| | | I-1-3. 유1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한다. | |
| | | I-1-4.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실시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
| | 2. 학생 인권교육강화 | I-2-1. 교과서에 실천사례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 I-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 |
| | | I-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 |
| | | I-2-4. 자신의 권리옹호와 타인의 권리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 |
| |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 I-3-1.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의식증진 및 인권교육지도능력 배양을위해 교육대학과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 I-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지도능력배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 |
| | | I-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평가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이수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 I-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 |
| | | I-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 I-4-3. 사회적 약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 |
| II 학생인권증진 | 1.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 | II-1-1.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2. 학생의견수렴장치마련 | II-2-1. 학생인권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당사자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참여 기회보장: 의견수렴은 물론 의견수렴방법, 그 결과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한다. | |
| | 3. 차이와 다양성 인정을 위한 대책마련 | II-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 |
| | 4. 학생인권침해 구제보장 | II-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예방지침 및 구제 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III 교원교권존중 | 1. 교원의 학생지도권 보장 | III-1-1. 「초·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 III-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 학생의 변화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도교육감 |
| |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 III-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의 관련법령을 제정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3. 교육과 훈육 전념 환경보장 | III-3-1. 교원 및 교실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한다. | |
| | | III-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한다. | |

| 구분 | | 권고 | 피권고기관 |
|---|---|---|---|
| Ⅳ 체벌없는인권친화학생지도 | 1.인권친화적·긍정적으로의 학교교육패러다임 전환 | Ⅳ-1-1. 교육과학기술부의'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 Ⅳ-1-2.아동권리인정·학습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한다. | |
| | | Ⅳ-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2.그린마일리지제도 개선 | Ⅳ-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 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 Ⅳ-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한다. | |
| | 3.체벌대체프로그램 지속개발 및 평가 | Ⅳ-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 Ⅳ-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
| | | Ⅳ-3-3. 체벌대체프로그램마련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용어를 개발하여야한다. | |
| Ⅴ 학교폭력예방과 적극적대응 | 1.교육주체간 소통강화 | Ⅴ-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 Ⅴ-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한다. | 교과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 |
| | | Ⅴ-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2.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Ⅴ-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 Ⅴ-2-2. 예능과 스포츠과목을 활성화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 Ⅴ-2-3. 집단따돌림예방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
| | | Ⅴ-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
| | | Ⅴ-2-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 | 3.교원의 역할 강화 | Ⅴ-3-1. 교원의 참여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 Ⅴ-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
| | | Ⅴ-3-3. 학교폭력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
| | 4.학교폭력대응프로그램 도입 | Ⅴ-4-1. 학교폭력의 시간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대응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 Ⅴ-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대응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
| | 5.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Ⅴ-5-1. 학생맞춤형 프로그램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학생의 치유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 Ⅴ-5-2. 위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기숙학교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
| | | Ⅴ-5-3. 피해·가해학생부모에 대한 상담체계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6.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 Ⅴ-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을 다양화시켜야한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전문가 등의 참여보장, 학생의 직·간접참여보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 Ⅴ-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
| | | Ⅴ-6-3. 사생활침해예방, 개인정보최소수집, 민감 정보 처리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
| | | Ⅴ-6-4.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2c).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가족 활동지 1

#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인권태도

**▣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 일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무시해버리지는 않나요? 아니면 바보같이 맞고 다닌다고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비난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부모가 다 책임질 테니 맞은 만큼 똑같이 때려주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이 모든 행동은 자녀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가 걱정할까봐 미안한 마음에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녀의 힘든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마음을 안정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녀가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귀하의 반응에 해당하는 문항에 ✔ 하세요.

| 문항 | 반응 유무 |
|---|---|
| 1. 뭐! 누가 때렸다고? 그런 애들을 가만 두냐? 맞장이라도 떠야지. | |
| 2. 많이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니? | |
| 3. 그러는 애들은 무시해버려. 그럼 널 안건드릴거야. | |
| 4. 부모인 우리가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도 몰랐구나. | |
| 5. 싸우면 똑같은 사람 돼. 싸우지 마. | |
| 6.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 엄마(아빠)가 도와줄게. | |
| 7.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맞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같이 때려! | |
| 8. 엄마가 널 반드시 지켜줄게. | |
| 9. 참아라.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잔다. | |
| 10. 반드시 해결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 |
| 11. 엄마가 당장 해결할게. 누구야? | |
| 12. 네가 맞는 걸 본 친구가 있니? 널 도와준 친구는 누가 있니? | |
| 13.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비판) | |
| 14. 힘든 문제이지만 해결을 배우는 기회로 삼자. | |
| 15. 맞지 말고 때려. 내(부모)가 다 책임질게. | |
| 16. 폭력의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보자. | |
| 17. 이사하고 전학 가자. 외국으로 가든지... | |
| 18. 이번 일로 네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 |
| 19. 앞으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 |
| 20. 앞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 |

짝수 번호 반응 (　　)개, 홀수 번호 반응 (　　)개

※ 짝수번호는 효과적인 반응이며, 홀수 번호 반응은 비효과적인 반응입니다.

출처: 조정실·차명호(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에서 발췌·수정함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아이가 문제라고, 상대가 먼저 맞을 짓을 했다고 피해학생에게 이중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장난이었다고 상황을 축소하거나, 맞는 것보다는 때리는 것이 낫다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폭력을 부추기거나, 내 자녀가 그럴 리가 없다고 눈을 감거나, 내 자식이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니 마음대로 하라고 상황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윽박지르거나 비난하면서 가정에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나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동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시켜주면서, 동시에 자녀가 처한 상황을 들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해결 방법이 폭력이 아닌지 가정에서부터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갈등상황에서 폭력 이외의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친구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귀하의 반응에 해당하는 문항에 ✔ 하세요.

| 문항 | 반응 유무 |
|---|---|
|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래? | |
| 2. 설마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 |
| 3. 우리 애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 |
| 4. 우리 집에서도 내놓은 아이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 |
| 5. (자녀에게) 그 때 누구랑 같이 있었지? 그래서 넌 어떻게 했지? | |
| 6. 맞는 것보다야 때리는 것이 낫지. 피해는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는 것 아니야. | |
| 7. 이 일을 잘 해결하려면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돼. | |
| 8.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아이들 일에 어른이 나서는 것이 잘못된 거지. | |
| 9. 피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 |
| 10. 그냥 장난치다가 그런 것이라던데….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가해자라니. 너무한 것 아니야? | |
| 11.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 |
| 12. 들어보니까 피해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던데. 오히려 우리 애가 피해자다. | |
| 13. (아이에게)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함께 가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자. | |
| 14. 그럴 만한(때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 |
| 15. 우리 아이에게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었구나. | |
| 16.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을 거야.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렸을 리가 없어. | |
| 17. (아이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자. | |
| 18. 그 애(피해 학생)가 문제가 있더라. | |
| 19.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정한 벌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 |
| 20. 넌 빠져. 엄마(아빠)가 사과할게. | |

짝수 번호 반응 (　　)개, 홀수 번호 반응 (　　)개

※ 짝수번호는 비효과적인 반응이며, 홀수 번호 반응은 효과적인 반응입니다.

출처: 조정실·차명호(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에서 발췌·수정함

## 가족 활동지 2

# 쉽게 풀어 쓴 가정인권선언문

**▣ 세계인권선언문의 각 조항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조항으로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 | |
|---|---|
|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제2조**: 차별은 안 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
| | 예시)<br>제2조: 우리 가족은 성별, 연령, 가치 등이 다를지라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
|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 |
| | |
|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 **제8조**: 억울할 때는 다른 사람 혹은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 |
|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쫓겨나지 않는다. |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
| | |
|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이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 | |
| **제29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
| | |

모듈 1

# 3회기 : 인권감수성을 찾아서!

❍ 활동 목표

- 학교폭력의 참여 역할 유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은 모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에서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활동개요

- 대상인원 : 반 인원 전체
- 장 소 : 교실
- 소요시간 : 45~50분
- 준 비 물 :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 빔 프로젝트, 학생용 자료 및 활동지 프린트물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역할 유형들의 마음과 인권침해 상황 이해하기
- 학교폭력에서의 방관자의 역할 중요성 알기
- 방관자의 두 마음,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 유의사항

- 동영상은 기초와 심화 학생 활동용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므로 활동에 맞게 사용한다.
- 방관자의 두 가지 마음인 '잠깐맨'과 '계속맨'의 진행절차를 미리 숙지해둔다.
-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는 모둠별로 진행하거나 몇몇 학생들이 대표로 할 수도 있다.

❍ 기대효과

-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집단역동임을 알 수 있다.
- 학교폭력은 다수의 방관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의해 강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활동과정 개요

| 단계 | 주요활동내용 | | | 소요시간 | 비고 |
|---|---|---|---|---|---|
| 도입 | - 학습활동 설명과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br>-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폭력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역동임을 인식하게 한다. | | | 5분 | |
| 활동1 | **활동1 : 학교폭력 없는 교실에서 생활할 권리**<br>동영상을 시청한 후 학교폭력에 참여하는 역할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학생 모두의 집단 역동임을 알도록 한다. 그리고 방관자의 행동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알게 한다. | | | 15분 | |
| | 동영상 | 기초 | 우리에게 남은 것(3분 20초) | | 기초 학생 활동지에 활용 |
| | | 심화 | 너희는 왜 침묵했니?(5분 43초) | | 심화 학생 활동지에 활용 |
| | 학생 자료 | 방관이 왜 문제인가?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 | |
| | | 심화 | 침묵하는 방관자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거야! | | |
| 활동2 | **활동2 :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br>학교폭력을 강화하는 '계속맨'과 약화시키는 '잠깐맨'의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에서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생에 의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 | 25분 | |
| | 학생 자료 | 1. 방관자의 두 마음 : '계속맨'과 '잠깐맨'<br>2. 두 마음 교실 역할극 상황(예시)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방관자의 두 마음 : '계속맨'과 '잠깐맨' | | 역할극 |
| | | 선택 | '잠깐맨을 불러주세요!' | | |
| | | 심화 | '잠깐맨'은 인권지킴이! | | |
| 마무리 | 활동 내용 정리 | | | 5분 | |

## 도입

내 용 ▸ 활동목표와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동기를 높인다.
진행방법 ▸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 회기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교사멘트 :** 오늘 활동 내용은 학교폭력에서의 역할 참여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 모두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리들 다수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잠깐맨'과 '계속맨'이라는 역할극을 통해 방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 역할 | 역할 설명 |
|---|---|
| 가해자 |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 |
| 조력자 |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 |
| 강화자 | 가해자의 행동을 지지해 주는 사람 |
| 방관자 | 학교폭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
| 방어자 |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
| 피해자 | 학교폭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

출처: 엄명용·송민경(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3(1).

**Tip**

-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을 제공 된 ppt를 활용하여 도입에서 설명해 준다.
- 모둠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혹은 학교 안의 모든 학생들의 참여로 인한 집단 역동임을 강조한다.

## 전개 : 활동 1

내 용 ▸ 방관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진행방법 ▸ 동영상을 시청한다.
▸ <학생 자료>(방관이 왜 문제인가?) 읽는다.
▸ <학생 활동지>를 모둠별로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학교폭력은 주로 교실에서 발생합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대부분 우리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역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방관자들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 동영상 자료는 기초 및 심화 학생 활동지를 위한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활동지에 맞게 동영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모둠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동영상 시청 | |
|---|---|
| **우리에게 남은 것 (3분20초)**<br>**-출처: 사회통합위원회, 한겨레 신문사** | **"너희는 왜 침묵했니?" (5분43초)**<br>**-출처: 대전교육청** |
| | |
| 내용: 여고생인 지은이가 학교폭력으로 자살하기 전 가해자와 방관자 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내용입니다.<br><br><기초 학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 내용: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짧은 소개와 더불어 학교폭력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침묵한 원인을 동조현상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해법도 동조현상에서 찾고 있습니다.<br><심화 학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
| http://www.youtube.com/watch?v=_evfKxPaUBs | http://stopbullying.or.kr/index.php?mid=education_office_data&category=646&page=3&document_srl=245081 |

학생 자료

## 방관이 왜 문제인가?

### "수수방관" 왜 반인권적 행동인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곳은 교실, 화장실, 복도, 운동장 등 대부분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많은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일까? 왜 아무도 교사나 학교에 폭력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 대부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해학생 무리에 합류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때때로 소모적인 일에 끼어드느니 내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 똑똑한 처신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교실은 약육강식의 질서에 따라 폭력이 난무하고 약자는 당하기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이 되게 된다. 그렇다면 방관자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어쩌면 한 명 한 명의 방관자야말로 무언의 동조행위로 교실 안의 폭력이 유지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처: 조정실·차명호(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

### "방관"도 폭력이라고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서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즉 방관자는 이러한 법률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방관자는 자신도 모르게 학교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방관자는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지지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갈수록 더욱 심하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더 괴롭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관자는 학교폭력 사태를 지켜보고 그것을 방관함으로서 잘못된 권력관계에 대해 묵인하는 셈이 된다. 점차 폭력이라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둔감해지고 잘못된 권력관계와 그로 인한 폭력으로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이기주의와 연결된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기초 학생 활동지

#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 <기초 학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우리에게 남은 것)을 시청한 후 다음을 나누어 보세요.

1. 동영상의 주인공들의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은 무엇인가요?

| 주인공 | 역할유형 |
|---|---|
| 1) 김지은 | |
| 2) A(같은 반 친구) | |
| 3) B(같은 반 친구) | |
| 4) C(같은 반 전교1등) | |
| 5) D(같은 반 친한 친구) | |

2. **'우리에게 남은 것'** 동영상에서, 피해학생은 자살을 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 동영상의 B. C. D처럼 학교폭력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방관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동영상 속의 A, B, C, D들이 한 행동은 피해자 및 같은 반 친구들에게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인권 조항에서 찾아보세요.

* 개인 활동 후 모둠원끼리 공유해 보세요.

심화 학생 활동지

# 침묵하는 방관자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 <심화 학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너희는 왜 침묵했니?)을 시청한 후 하는 활동입니다.

1. 동영상에서 소개된 동조현상 실험을 보고 난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2.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방관자 역할은 폭력의 또 다른 얼굴일 뿐 아니라 반 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둠별로 토론해 봅시다.

3. 동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모두를 따라 오답을 말하는 A', '바람잡이 B가 있어야 정답을 말하는 A',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정답을 말하는 A'중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에서 주로 경험한 A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 전개 : 활동 2

내　　용 ▸ 방관자의 두 마음!!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진행방법 ▸ <학생 자료 1>(방관자의 두 마음 : '잠깐맨'과 '계속맨')을 읽고 의미를 설명한다.
▸ <학생 자료 2>('두 마음 교실' 역할극 상황)를 읽도록 한다.
▸ 역할극을 할 사람을 뽑아 교실 앞에서 역할극을 진행한다.
▸ 방관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 '잠깐맨'과 '계속맨' 중 한 역할을 선택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지>를 하고 발표한다.

**교사멘트 :** 앞의 활동들을 통해 학교폭력에서 다수의 방관자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맨'과 '계속맨'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맨'과 '계속맨'이란 방관자의 두 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상황에서 모른 척 외면하고 싶은 마음, 즉 방관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맨'이라 하고, 폭력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 즉 방관자의 역할을 그만두려는 마음은 '잠깐맨'입니다.

<방관자의 두 마음!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진행 절차>
- <학생 자료 1, 2>를 읽도록 한다.
- 역할극을 실제로 시연할 사람들을 뽑는다.(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잠깐맨, 계속맨 등 5명)
- <학생 자료 2>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시연한다.
- 역할극 시연 후 방관자의 두 마음인 '계속맨'과 '잠깐맨' 역할을 맡은 사람은 방관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을 한다.
- 방관자는 '계속맨'과 '잠깐맨' 중 하나를 선택한다.
- <학생 활동지>를 하고 함께 나눈다.

### Tip
- 방관자의 두 마음인 '계속맨'과 '잠깐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 역할극은 제시된 상황 이외에도 다른 주제를 활용할 수 있다.
- '두 마음 교실' 역할극을 수행할 사람을 선발할 때는 연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소나 상황이 허락되면 모둠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 <교사 자료>에 방관자들의 마음이 제시되어 있다.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방관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강조한다.

학생 자료 1

## 방관자의 두 마음 '계속맨'과 '잠깐맨'

**계속맨이란?**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봐 모른척하고 싶은 마음. 즉 방관자의 역할을 계속하려는 마음.

**계속맨의 반응은?**

"선생님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고자질쟁이라고 놀림이나 당하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쓸데없이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보복 당할 수 있어."

"피해자 편에 섰다가 나마저 왕따 당할 수 있으니 그런 애들이랑은 아예 놀지 않는 게 좋아."

"그냥 구경이나 하자."

**잠깐맨이란?** 피해자 편에서 힘을 보태거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 방관자의 역할을 그만두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

**잠깐맨의 반응은?**

"친구들과 힘을 합쳐 말려 볼까?"

"모른 척 했다가는 나도 언젠가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거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어야겠다."

(가해자에게) "그러지마, 쟤가 싫다고 하잖아"

(가해자에게) "넌 장난이지만 쟤는 얼마나 힘들겠니?"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지? 힘 내!"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운동장에 나가 공찰까?"

내가 입을 닫으면

피해 친구는 더 큰 상처를 받고

가해친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림출처: 법무부·교육과학부(2012). 아픔 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 ppt자료.

학생 자료 2

## '두 마음 교실' 역할극 상황 (예시)

역할극 제목: "두 마음 교실"

시간 배경 : 아침 조례시간 전

공간 배경 : 중학교 3학년 어느 교실

나오는 사람: 가해자(B) 1명, 강화자(C, D) 2명, 조력자(E, F) 2명,
피해자(A) 1명, 그 외 모든 학생 방관자

역할극 주인공: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관자의 두 마음(잠깐맨과 계속맨) 등 5명

오늘도 우리 교실 아침시간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A가 B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A(피해자)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외모가 못생겼다고 늘 놀림을 받는 친구이다. B(가해자)는 우리 교실의 일진이다. B는 A에게 자신의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고 있다. 조금 있으니 발로 차기까지 한다. B와 친한 C와 D는 B의 행동을 웃으면서 보고 있고, E와 F도 B옆에서 A를 함께 괴롭히고 있다. A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욕을 듣고 있으며, 머리를 수차례 맞고 있다.

우리 반의 나머지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체 하지 않는다. 모두들 자신의 일을 하느라 정신없거나 몇몇 친구들끼리 어울려 잡담을 하고 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A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만 한 것에 대해 답답해하기도 한다. 그들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알릴까도 생각해보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출처: 허승환(2013). 교육연수원 자격 및 직무연수 강의 자료.

기초 학생 활동지

# 방관자의 두 마음: '잠깐맨'과 '계속맨'

▣ 역할극을 하고 난 후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계속맨'혹은 '잠깐맨'을 선택한 이유는?

2. 역할극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3. '잠깐맨'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잠깐맨'이 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속맨'의 역할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출처: 법무부·교육과학부(2012). 아픔 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 ppt자료.

선택 학생 활동지

## '잠깐맨'을 불러주세요!

▣ 다음은 교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잠깐맨'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모둠원끼리 공유해 봅시다.

사례 1) 별명 부르는 것을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별명을 부르면서 재밌어 한다.

사례 2) A가 못 생겼다고, 재수 없다고, 잘난 척한다고 B는 A를 험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A와 놀지 못하게 한다.

사례 3) 소극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심부름을 대수롭지 않게 시킨다.

사례 4) B가 A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자 A는 그러지 말라고 하자 B는 친구끼리 뭐 그것가지고 그러냐며 오히려 A를 비난한다.

사례 5) 자신을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를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고자질쟁이라고 하면서 비난한다.

심화 학생 활동지

# '잠깐맨'은 인권지킴이!

**▣ '잠깐맨'은 방관자의 태도를 그만두고 인권지킴이로써 행동하려는 마음입니다.**
**<학생 자료 2>의 "두 마음 교실"의 사례에서 '잠깐맨'이 인권지킴이로써 활동을 한다면, '잠깐맨'은 아래 표의 인권요소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인권의 측면 | 인권 요소 | 내용 | 인권지킴이인 잠깐맨의 행동은? |
|---|---|---|---|
| 권리적 측면 | 존엄권 | 인간존엄성과 고유의 가치를 보장받는 권리이며, 사생활 보호 및 폭력이나 모욕 등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
| | 평등권 | 비차별 및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로 성별, 외모, 성적, 가정환경, 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 자유권 | 신체 및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부당한 대우,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 안전권 | 모든 사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고통이나 불행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안정될 권리 | |
| | 교육권 | 개인은 서로를 돕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가치를 배울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 |
| | 평화권 |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는 권리. 개인 및 집단 간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을 권리 | |
| 책임적 측면 | 공동체에 대한 의무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질 권리. 공공질서, 공공의 선, 도덕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 타인권리 존중의무 | 어떤 권리와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마무리

내　　용 ▸ 활동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진행방법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다음 활동을 소개한다.

**교사멘트 :** 오늘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복잡한 집단 역동이라는 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다수는 방관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쉽게 회피하거나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른 체 했던 다수의 우리들도 실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깐맨의 역할을 통해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학교폭력을 실제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찾아보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Tip**

- '잠깐맨'의 역할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한다.
- 가족활동지를 과제로 제시하도록 한다.

## 교사 자료 1

#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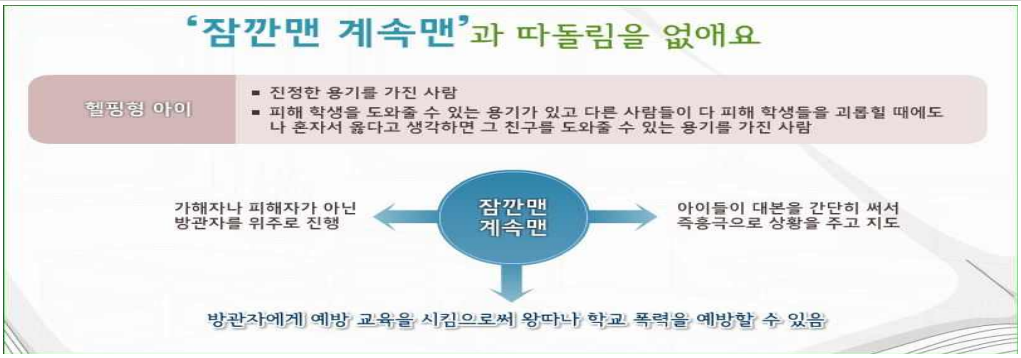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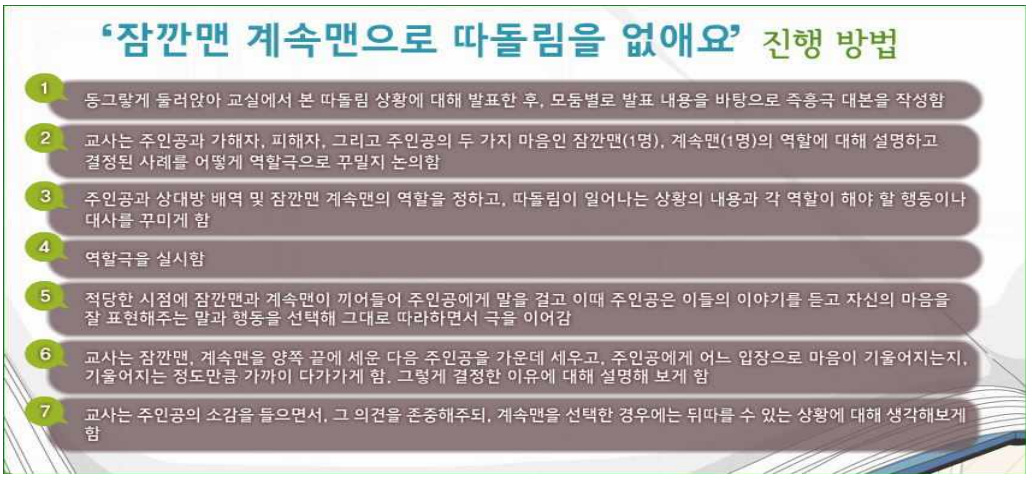


☞ '잠깐맨'과 '계속맨' 놀이는 교사멘트에 설명한 방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교사 자료 1의 진행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무관심도 폭력임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방관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중요함을 알려 주십시오.

출처: 허승환(2013). 교육연수원 자격 및 직무연수 강의 자료.

교사 자료 2

# 방관자들의 마음

▣ 방관자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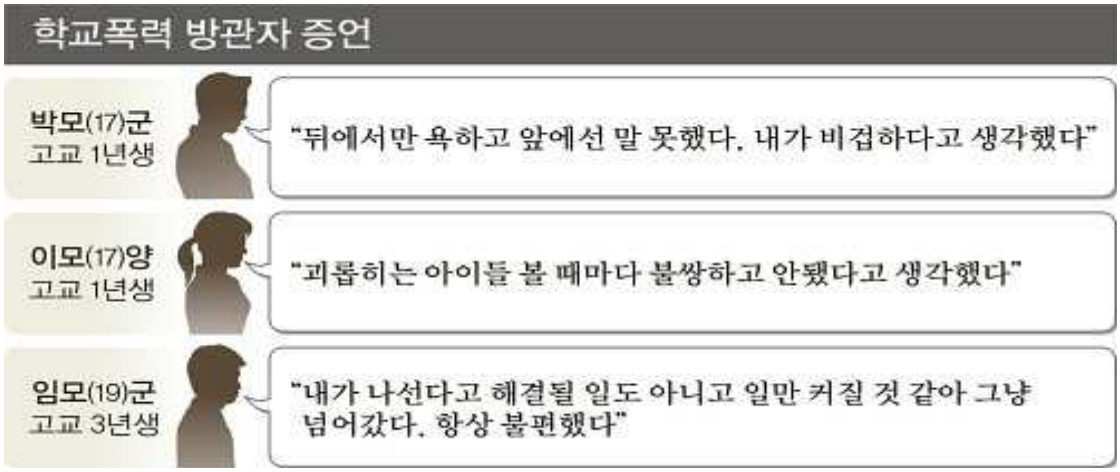

출처: 세계일보(2012.1.6.). 입 다문 아이들.

가족 활동지 1

# 우리 가족도 방관자?

## "방관자 효과란?"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이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가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인 대중적 무관심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가족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진정한 어른의 위치 찾을 때 학교폭력 멈출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 '학교폭력 멈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즉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멈춰!'라고 얘기하였을 때 주변의 학생들이 가해학생에게 함께 '멈춰!'라고 외침으로써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방어하는 방어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취지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보다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을 멈추라는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폭력예방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대하는 이 사회의 어른들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한다.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 같이 진정한 어른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목격하면 타이를 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식이나 조카라는 심정으로 혼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대구신문(2012. 9. 26.)

1. 위 신문기사는 학교폭력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 혹은 침묵하는 다수의 방관자들이 학교폭력 방어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2. 가족생활에서 방관자 역할에 참여한 경험과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 "잘못된 집단주의가 왕따 원인"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65)는 "학교폭력은 과시성이 있어, 가해자는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학대한다. 학교폭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목격하는 아이들이 공포로 움직이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김동균군(19)은 "학생들의 폭력 사태를 보고 '이러니까 때려서 가르쳐야지' '청소년에게 인권은 아직 이르다'식의 접근이 이뤄질까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군은 "학교폭력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경향신문(2011. 12. 27.)

3. 위 신문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단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다수의 아이들이 방관자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가해자는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보다는 폭력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방관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가해자는 폭력이 힘이 아니라 범죄이자 인권침해 행동임을 알 수 있을까요?

4. 위의 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처벌이나 폭력을 통한 방법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족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해 봅시다.

5.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방관자 역할을 해본 경험과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가족들이 함께 공유해 봅시다.

# 모듈 2.
# 소통과 화합

## 모듈 2의 프로그램 구성

| 회기 | 활동 (활동주제) | 학생 | | | | 교사 | 가족 | |
|---|---|---|---|---|---|---|---|---|
| | | 학생 자료 | 학생 활동지 | | | 교사 자료 | 가족 자료 | 가족활동지 |
| | | | 기초 | 선택 | 심화 | | | |
| 4회기 (인권은 소통이다!) | 활동 1 (감정읽기) | 감정카드 | 감정을 느껴봐! | | 학교폭력에 나타난 우리의 감정은? | | 가족밥상 소통 | 1. 가족 소통1: 감정읽기<br>2. 가족 소통2: 포옹하기<br>3. 가족 소통3: 가족회담 |
| | 활동 2 (감각소통) | | 안아주기 놀이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 | | | |
| | 활동 3 (배려와 나눔 소통) | 배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 | 텔레파시 소통 놀이 | 1. 들어주는 놀이<br>2. 말하는 놀이 | 교실에서의 배려와 나눔 | | | |
| 5회기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 활동 1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 | 또래 인권상담소 | 학교폭력 사례 조정위원회 | 1. 또래 조정이란?<br>2. 학급 단위 또래조정 운영지침<br>3. 교실 조각이란? | 가족갈등을 조정 받고 싶어요! | 1. 우리집 갈등 조정자는 누구?<br>2. 가족조각 |
| | 활동 2 (교실조각과 교실재조각) | 교실조각 및 재조각 | 교실조각 Q&A | | | | | |
| 6회기 (웰컴 투 인권존중 교실) | 활동 1 (인권 노래자랑) | 교실에서 찾은 희망 노래 가사 | 인권 노래자랑 | 학교폭력 예방 4컷 만화 | 교실에서 찾은 인권 | 인권 수호천사 되는 길 | 소중한 우리 가족 | 1. 존엄의 눈으로 보는 우리 가족<br>2. 인권 100%의 우리 가족<br>3. 가족 애플데이 |
| | 활동 2 (웰컴 투 인권존중 교실) | |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 | 1. 화해와 존중의 '애플데이'<br>2. 인권 수호 천사 임명장 | 존엄한 너에게 | | | |

모듈 2

# 4회기 : 인권은 소통이다!

❍ 활동 목표

- 공감의 기초인 감정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 배려와 나눔이 학교폭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한다.
- 잘 소통하는 행위가 타인과 나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임을 알게 한다.

❍ 활동개요

- 대상인원 : 반 인원 전체
- 장 소 : 교실
- 소요시간 : 45-50분
- 준 비 물 : 필기도구, 학생용 자료 및 활동지 프린트물

❍ 주요내용

- 나와 너의 감정읽기
- 감각소통 역할놀이
- 배려와 나눔 소통 경험하기

❍ 유의사항

- 4회기는 3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에 맞게 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 놀이가 장난스럽게 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
- 학교폭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폭력은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동임을 알도록 한다.

❍ 기대효과

- 학교폭력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 올바른 소통문화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 활동과정 개요

| 단계 | 주요활동내용 | | | 소요 시간 | |
|---|---|---|---|---|---|
| 도입 | - 학습활동 설명과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br>- 4인 1 모둠으로 자리배치를 미리 해둔다. | | | 5분 | |
| 활동1 | **활동1 : 감정읽기**<br>감정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감정의 민감성을 증진한다. | | | 20분 | |
| | 학생 자료 | 감정카드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감정을 느껴봐! | | |
| | | 심화 | 학교폭력에 나타난 우리의 감정은? | | |
| 활동2 | **활동2 : 감각소통**<br>- 감각소통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학습하여 내적 감정의 소통을 증진함과 동시에 관계의 중요성을 경험한다. | | | 20분 |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안아주기 놀이 | | 역할 놀이 |
| | | 선택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 | 역할 놀이 |
| 활동 3 | **활동3 : 배려와 나눔 소통**<br>배려와 나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의 소통을 증진하고 배려와 나눔 소통을 통해 인권의 권리적 측면과 책임적 측면에 대한 감성을 증진한다. | | | 20분 | |
| | 학생 자료 | 배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 | | | ppt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텔레파시 소통 놀이 | | 역할 놀이 |
| | | 선택 1 | 들어주는 놀이 | | 역할 놀이 |
| | | 선택 2 | 말하는 놀이 | | |
| | | 심화 | 교실에서의 배려와 나눔 | | |
| 마무리 | 활동 내용 정리 | | | 5분 | |

## 도입

내 용 ▸ 활동목표와 내용 및 참여 동기 촉진
진행방법 ▸ 4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 회기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교사멘트 :** 오늘 활동은 우리들이 교실이나 학교에서 소통기술을 증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감정읽기'와 '감각소통' 그리고 '배려와 나눔 소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면 언어적 소통을 주로 말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인 감각소통과 실제로 행동하는 배려와 나눔 소통의 중요성은 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은 이러한 감각소통과 배려와 나눔 소통을 간과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이 있는 의사소통과 내적 소통을 증진하는 감각소통이 학교폭력 및 인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개 : 활동 1

내 용 ▸ 감정의 다양한 표현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한다.
진행방법 ▸ <학생 자료> (감정카드)를 함께 읽도록 한다.
▸ <학생 활동지>를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 감정카드를 통해 학생들이 감정의 다양한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 활동지의 질문들은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가족 활동지>을 과제로 부여하여 가족구성원의 감정을 탐색하게 한다.

학생 자료

# 감정카드

| | | | | |
|---|---|---|---|---|
| 반갑다 | 사랑하다 | 상쾌하다<br>개운하다 | 흐뭇하다<br>만족스럽다 | 의리가 있다 |
| 재미있다<br>신난다<br>살맛난다 | 끌리다<br>흥미롭다<br>궁금하다 | 정겹다<br>다정하다 | 느긋하다<br>여유롭다<br>긴장이 풀리다 | 후련하다<br>통쾌하다<br>속시원하다 |
| 용기가나다<br>기운이 나다 | 경이롭다<br>황홀하다<br>짜릿하다 | 감사하다<br>고맙다 | 가슴뭉클하다<br>감동하다 | 따듯하다<br>푸근하다 |
| 희망적이다<br>기대된다 | 행복하다<br>기쁘다<br>즐겁다 | 인정받다<br>격려받다 | 자랑스럽다 | 활기넘치다<br>생기가돌다 |
| 든든하다<br>뿌듯하다<br>자랑스럽다 | 편안하다<br>홀가분하다 | 보호 받다<br>안심이 되다<br>마음이놓이다 | 흥분되다 | 평화롭다<br>평온하다 |

| | | | | |
|---|---|---|---|---|
| 질린다<br>지겹다 | 긴장되다<br>떨리다 | 답답하다<br>갑갑하다 | 신경쓰이다<br>꺼림직하다 | 지치다<br>피곤하다<br>힘들다 |
| 무섭다<br>겁나다<br>두렵다 | 걱정스럽다<br>근심스럽다 | 막막하다<br>암담하다 | 당혹스럽다<br>어리둥절하다 | 마음이 두갈래다<br>혼란스럽다 |
| 후회스럽다<br>아쉽다<br>안타깝다 | 화가나다<br>열받다<br>격분하다 | 놀라다<br>오싹하다<br>섬뜩하다 | 서먹하다<br>어색하다 | 귀찮다<br>성가시다 |
| 분하다<br>억울하다 | 배신당하다 | 허전하다<br>공허하다<br>허탈하다 | 슬프다<br>서글프다 | 비참하다<br>참담하다 |
| 서운하다<br>섭섭하다<br>실망하다 | 절망스럽다<br>좌절감이든다<br>낙심하다 | 우울하다<br>울적하다 | 마음이 아프다<br>속상하다 | 난처하다<br>난감하다<br>곤혹스럽다 |
| 외롭다<br>쓸쓸하다 | 질투하다 | 싫어하다 | 고집이 세다 | 무기력하다 |
| 힘겹다<br>괴롭다 | 실망하다<br>낙담하다 | 창피하다<br>부끄럽다 | 걱정스럽다 | 짜증난다 |
| 불안하다 | 무안하다<br>민망하다<br>멋쩍다 | 불편하다<br>거북하다 | 조바심나다<br>속타다<br>초조하다 | 심심하다<br>지루하다<br>따분하다 |

기초 학생 활동지

# 감정을 느껴봐!

▣ <학생 자료>의 감정카드를 참고하여 하는 활동입니다.

**1. 모둠 원 각자의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서로 찾아보고 그 이유도 말해 봅시다.**

예) 영희의 대표적인 감정은 '다정하다' 이다,
왜냐하면 늘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므로,

_____의 대표적인 감정은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이므로.

_____의 대표적인 감정은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이므로.

▣ 아래 사례의 주인공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사례 1)

민수는 오늘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점심을 먹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점심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지만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민수는 누가 말을 건네지 않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다. 수석이는 이런 민수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말하고 싶지만 수석이와 친한 친구들이 민수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수석이가 먼저 민수에게 점심을 먹자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민수의 감정은 _____일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이므로.
수석이의 감정은 _____일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이므로.

(사례 2)

은정이는 같은 반 친구인 미숙이가 어제 카스에서 은정이가 물건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다른 친구들이 은정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 같아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전에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은정이는 그 때의 감정이 떠올라 학교에 갈 수 없다.

은정이의 감정은 _____일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이므로.
미숙이의 감정은 _____일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이므로.

심화 학생 활동지

# 학교폭력에 나타난 우리의 감정은?

▣ <학생 자료>(감정카드)를 참고하여 하는 활동입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피해 학생은 어떤 감정일지 빈칸에 감정 형용사를 적어보세요.

| | | | | |
|---|---|---|---|---|
| | | | | |
| 가. 욕설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 나. 약점을 잡아 놀리거나 괴롭힐 때 | 다. 일부러 무시하거나 귓속말을 할 때 | 라.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단체로 친구를 욕하고 이상한 사진을 보낼 때 | 마.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주지 않을 때 |
| | | | | |

그림출처: 법무부·교육과학부(2012). 아픔 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 ppt자료.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아래에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3. 학교폭력이라는 부당한 행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될지 카드에서 골라보고, 그런 감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권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전개 : 활동 2

내 용 ▸ 감각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방법 ▸ 한 모둠에서 2명씩 짝이 되도록 한다.

▸ 감각소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활동 진행방법을 설명한다.

▸ 감각소통 활동을 해본다.

▸ <학생 활동지>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감각소통에 대해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소통은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늘 가깝게 지내고, 늘 보는 친구이므로 우리는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구가 뭘 고민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 지는 친구에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 지는 모습만 보게 되면 오해를 하거나 차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각소통을 경험하면 내면의 힘이 생기고 그로 인해 친구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언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내면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Tip

- 감각소통의 진행방법은 <기초 학생 활동지>의 진행방법을 숙지하고 진행한다.
- <안아주기 역할놀이>는 두 명이 순서를 단계별로 해본 다음 두 팀 혹은 세 팀이 함께 진행하고 그 느낌을 나누어 보도록 진행한다.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놀이는 친구의 손과 얼굴을 눈을 감고 만져보는 활동으로 자칫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활동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친구의 얼굴을 만지는 순서를 진행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귀→눈→코→입→머리카락→얼굴모양의 순서로 제시할 수 있다.
- <가족 활동지>는 '가족소통'과 '가족회담'의 주제로 가족과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므로 과제제시를 통해 가족과의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초 학생 활동지

# 안아주기 놀이

## ▣ 안아주기 역할놀이 진행방법

1.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한명이 다른 사람을 안아준다.

<안아 주는 단계>
1단계 포옹: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리를 가볍게 안아준다.
2단계 포옹: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안아준다.
3단계 포옹: 한 사람이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겨드랑이에,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감싸 X자 모양으로 안아준다.

2. 역할을 바꾸어 위의 3단계를 순서대로 해본다.
3. 두 조(4명) 이상 함께 끌어 안아본다.

## ▣ 안아주기 놀이 후 하는 활동입니다.

**1. 친구를 안아 주었을 때와 친구에게 안겼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2. 안아주는 단계에 따라 느낌에 차이는 어땠나요?**

**3. 두 명이 안았을 때와 여러 명이 안았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달랐나요?**

**4. 대화나 글이 아닌 안아주기를 통해 친구와 대화를 한 느낌과 대화와 글로 하는 소통과의 차이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선택 학생 활동지

#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 ▣ 감각소통: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진행방법

1.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다른 친구의 손을 만져본다.
   ※ 손을 만질 때는 손 모양, 손의 감촉 등을 생각하면서 만져본다. 그리고 손을 깍지 껴보도록 한다.
2. 손을 만져본 다음에는 얼굴을 만져보게 한다.
   ※ 얼굴은 귀, 눈, 코, 입, 얼굴모양, 머리 순으로 만져본다.
3. 역할을 바꾸어 다시 재연한다.

## ▣ 감각소통: 친구의 마음을 읽어봐! 진행 후 하는 활동입니다.

**1. 눈을 감고 친구의 손과 얼굴을 만졌을 때와 친구가 자신의 손과 얼굴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달랐나요?**

**2. 말이나 글이 아닌 눈을 감고 친구의 손이나 얼굴을 만져보는 소통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 생각해보기

❖ 손과 얼굴을 만져본 친구가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였다면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 가해친구가 피해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 방관친구가 피해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 피해친구가 가해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 피해친구가 방관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출처: Satir, V.(1972). Peoplemaking, Science & Behavior Books, Inc. Palo Alto, CA.

## 전개 : 활동 3

내 용 ▸ 배려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려와 나눔 소통을 경험한다.
진행방법 ▸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 <학생 자료>(배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를 함께 읽어본다.
▸ 배려와 나눔 소통 놀이의 진행방법을 설명한다.
▸ <학생 활동지>를 한 다음 발표한다.

**교사멘트 :** 감각소통으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소통은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감각소통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소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와 나눔의 소통은 행동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소통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귀와 마음을 모두 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으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 순서는 배려와 나눔의 개념과 배려와 나눔 소통이 무엇인지를 <학생 자료>(배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를 통해 살펴보고 난 후, <학생 활동지>를 통해 배려하는 소통을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Tip

- 활동3은 <학생 활동지>가 기초(텔레파시 소통놀이), 선택(들어주는 역할놀이, 말하는 역할놀이), 심화(교실에서의 배려와 나눔) 등 전체 4개가 제공되므로 진행자가 시간, 학생과 교실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여 진행한다.
- 모든 역할놀이의 진행방법은 <학생 활동지>에 설명되어 있다.
- 놀이를 하기 전에 진행자가 진행절차와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한다.
- 제시된 모든 활동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배려하고 나누려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생 자료

# 배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

| 배려란? | 나눔이란? |
| --- | --- |
| 타인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바라지도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으며,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시간, 돈, 마음, 힘(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

- 배려와 나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배려와 나눔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실천행동입니다.

## 배려와 나눔 소통이란?

배려와 나눔 소통은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친구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을 바라봐주고, 진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주며 “그랬구나!”,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배려와 나눔 소통은 또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귀찮아서, 괜한 짓 같아서 돌아서거나 모른 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 하는 친구, 소외된 친구, 약한 친구, 나와 조금 다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마음의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초 학생 활동지

# 텔레파시 소통 놀이

## ▣ 텔레파시 소통 놀이

| | |
|---|---|
| 1. | - 짝꿍끼리 등을 맞대고 선다. |
| 2. | - 두 사람 모두가 종이(A4용지, 색종이 등)를 가지고<br>- 한 명은 종이를 접고 찢으며 다른 친구에게 자신이 종이를 접고 찢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
| 3. | - 한 명은 설명을 하고 한 명을 설명을 듣고 그대로 실시한다. |

단계별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위의 행동을 차례대로 3회 반복 합니다.

- 1단계. 설명을 듣는 사람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 2단계. 설명을 듣는 사람은 질문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 ▣ 텔레파시 소통 역할놀이 후 하는 활동입니다.

1. 단계마다 짝꿍과의 종이 모양이 어떻게 차이가 났나요. 그러한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2.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생각해보기

❖ 잘 들어주고 잘 소통하는 행위가, 왜 상대방에 대한 존엄권, 평화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다하는 행동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선택 1 학생 활동지

# 들어주는 놀이

▣ 배려와 나눔 소통: 들어주는 역할 놀이 진행 방법

1. 4명이 한 조가 된다.

2. 역할을 정한다.
※ 말하는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딴 짓하는 사람(1유형), 말은 듣고 있지만 딴 짓을 하는 사람(2유형), 딴 짓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3유형)

3.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재연(시간 제약이 있을 경우 상황에 맞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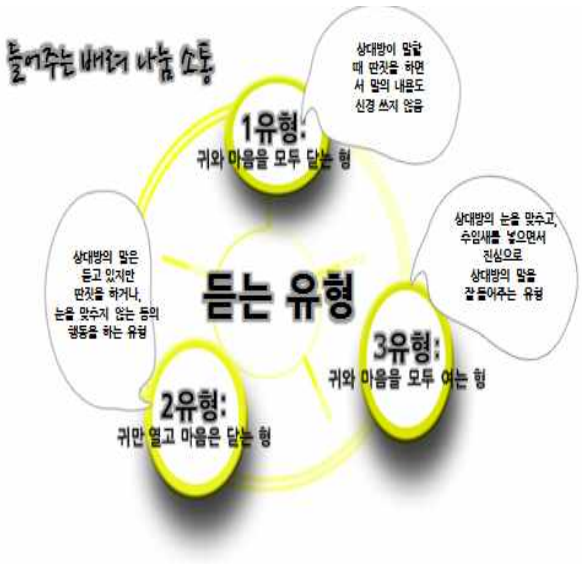


▣ 말을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의 유형의 따라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1. 내말을 전혀 듣지 않고 딴 짓을 한 사람에 대한 느낌(유형1)

2. 귀로는 듣고는 있지만 나의 말에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느낌 (유형2)

3. 내말을 마음으로 듣고 반응도 잘 해주는 사람에 대한 느낌 (유형3)

| 聽 | 잘 듣는다는 것은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
|---|---|

❖ 대화할 때 친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 대화할 때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택 2 학생 활동지

# 말하는 놀이

▣ 잘 말하는 방법(I-message: 나 전달법)

※ 나 전달법은 상대방이 한 사실이나 행동을 먼저 말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실, 행동)하니까, 나는 (감정) 해.

<예시>

▸엄마가 제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니까, 제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행동) (감정)

▣ 모둠별로 의논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 | |
|---|---|
| 사례1 | 은경이는 경석이가 부잣집 딸 혜린이에게 늘 쩔쩔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날도 어김없이 혜린이의 온갖 투정을 들어주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은경이가 한마디 했다.<br>은경: "경석아! 넌 자존심도 없니? 혜린이가 부자면 다냐?"<br>경석: "네가 뭔데 내 행동에 이래라, 저래라야. 재수없어!"<br><br>Q1. 은경이의 말을 나-전달법으로 바꾸어 보세요.<br>☞네가_____하니까, 나는 _____ 해.<br><br>Q2. 경석이의 말을 나-전달법으로 바꾸어 보세요.<br>☞네가_____하니까, 나는 _____ 해. |
| 사례2 | 종수는 부모님께 학원 간다고 집을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친구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약 좀 사달라고 해서 학원에 못가고 친구네 집으로 갔다. 학원방향과 정반대 길에서 엄마랑 마주쳤다.<br>엄마: "종수야 너 왜 여기서 나오니? 지금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니? 너 또 학원 안 갔구나. 집에 가서 혼 좀 나야겠다."<br>종수: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어린아이에요? 왜 화부터 내세요."<br><br>Q1. 엄마의 말을 나-전달법으로 바꾸어 보세요.<br>☞네가_____하니까, 나는 _____ 해.<br><br>Q2. 종수의 말을 나-전달법으로 바꾸어 보세요.<br>☞엄마가_____하니까, 나는 _____ 해. |

심화 학생 활동지

# 교실에서의 배려와 나눔

▣ 교실이나 학교에서 배려와 나눔을 받아본 경험과 그때의 느낌을 적어 봅시다.

| 배려와 나눔을 받아본 경험과 느낌 | |
|---|---|

▣ 교실이나 학교에서 배려와 나눔을 나눠준 경험과 그때의 느낌을 적어 봅시다.

| 배려와 나눔을 나눠본 경험과 느낌 | |
|---|---|

▣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배려와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방안 | |
|---|---|

## 생각해보기

❖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배려와 나눔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권리를 강요하기에 앞서 타인의 권리를 우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마무리

내　　용 ▸ 활동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진행방법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다음 활동을 소개한다.

**교사멘트 :** 오른 활동 내용은 감정읽기와 감각소통 그리고 배려와 나눔은 무엇인지, 배려와 나눔을 위한 소통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을 읽고 감각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듣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을 잘 사용하면 배려와 나눔의 소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은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특히, 교실에서 여러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그 해결 주체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Tip

- 몇몇 학생에게 활동소감을 질문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본다.
- 가족활동지를 과제로 부여한다.

가족 자료 1

## 가족밥상소통

### " 성공적인 가족밥상소통 10가지 습관"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식사의 날' 만들기
2.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식사하기
3.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식사하고, 정리하기
4. 식사시간에는 TV끄기, 전화 받지 않기
5.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기
6.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기
7. 열린 질문으로 자녀들이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기
8. 공감과 경청으로 자녀의 기운 북돋아 주기
9.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기
10.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 시간 만들기

### " 자녀와의 대화 이렇게 시작해요~"

**1. 생활 중심의 편안한 주제로 대화하기**

- 부모가 먼저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해요
- 식탁에 차려진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 가족들이 계획한 한 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응원해요

**2. 서로 칭찬하기**

- 구체적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칭찬해요
- 눈을 보면서 칭찬이 진심이라는 것을 전달해요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3.1.4).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가족 활동지 1

## 가족소통 1 : 감정읽기

### "가족끼리 감정을 읽어주세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읽어 주지 않아서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표현하는 방식은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지속하게 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으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게 되지만,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며,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또는 충동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1. 우리 가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한 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2. 왼쪽의 그림을 참고하여 우리 가족의 얼굴을 감정이 잘 표현되도록 그려 봅시다.
   다른 가족구성원이 표현한 자신의 얼굴 감정에 대해 느낀 점을 공유해 봅시다.

3. 우리 가족이 서로의 감정을 잘 읽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족 활동지 2

## 가족소통 2 : 포옹하기

### "아버지와 포옹하기"

청소년기부터 자녀와 부모간의 애정이 담긴 스킨십(포옹, 입맞춤, 손잡기 등)이 부쩍 줄어듭니다.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스킨십이 많이 줄고, 이는 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아동기 이후 감소된 비언어적 소통을 자극해주는 방법으로 특히 아버지와 포옹하는 몇 차례의 시도만으로도 가시적인 역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포옹하기" 진행 절차>

1. 아버지와 마주본다.
2. 1분간 가슴을 맞대고 깊이 포옹한다.
3. 팔을 풀기 전에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 아버지와 포옹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머니, 할머니 등 다른 보호자와 하도록 한다.
※ 하루 중 'hug time'을 정해서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버지와 포옹하기"를 마친 후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아버지와의 포옹을 한 느낌은 어떠했나요?**

**2. 가족원 중 특히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포옹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3. 가족원 모두가 함께 포옹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가족 활동지 3

## 가족소통 3 : 가족회담

### "가족회담(Family Conference)"

가족회담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식적이며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이는 애들러(Adler)학파의 이론에 근거한 기법으로, 가족 안에서도 민주적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타협할 수 있는 협상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감정적 파국을 막고 갈등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며 질서 있고 평화로운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족들이 공통된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 방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싸우는 일 뿐만 아니라 협조하는 기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가족의 합의점을 찾는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담 진행 규칙>**

1. 모임을 위한 정기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그 시간동안 외부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2. 회담에는 가족원 모두 포함시키지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결석한 사람은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3. 회담에서 내려진 결정은 일방적으로 깨뜨려서는 안 되며 재협상은 다음 회담에서 이루어진다.
4. 모든 가족이 안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족회담이 진행될 동안 모든 구성원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5. 모든 가족원은 진실한 마음으로 결정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6. 회담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주지한다.
7. 가족회담을 운영할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Sherman, R. & Fredman, N.저, 김영애 역(2006). 부부·가족치료기법,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 가족회담 후 하는 활동입니다.

'학교폭력과 인권'을 주제로 당신의 가정에서 가족회담을 개최해 보세요.
가족회담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모듈 2

# 5회기 :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 활동 목표

- 교실조각을 통해 학교폭력은 집단 역동에 의해 발생됨을 인식하게 한다.
- 또래조정활동을 통해 학급 내 학생들의 인권옹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인권실천 행동임을 알게 한다.

❍ 활동개요

- 대상인원 : 반 인원 전체
- 장 소 : 교실
- 소요시간 : 45-50분
- 준 비 물 : 필기도구, 카메라, 학생 자료 및 활동지 프린트물,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 빔 프로젝트,

❍ 주요내용

- 또래조정을 이해하고 조정방법을 경험한다.
- 교실조각을 통해 교실에서 경험한 학교폭력 상황을 신체로 표현하게 한다.
- 교실재조각을 통해 학교폭력의 해결 주체가 학생 개개인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 유의사항

- 또래조정과 교실조각은 1시간 내에 두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진행자는 활동 전에 또래조정과 교실조각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미리하고 이에 대한 개념 및 진행절차를 숙지하도록 한다.
- 교실조각의 경우 모둠별 혹은 대표를 뽑아서 활동을 할지 미리 정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
- 학생 개개인 모두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학교폭력의 해별방안에 대한 실천노력이 인권을 실천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 활동과정 개요

| 단계 | 주요활동내용 | | | 소용시간 | 비고 |
|---|---|---|---|---|---|
| 도입 | - 학습활동 설명과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br>- 4인 1모둠으로 자리배치를 미리 해둔다. | | | 5분 | |
| 활동1 | **활동1 :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 조정자!**<br>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미리 감지하고 또래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다수의 방관자가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또래에 의해 해결해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을 스스로 행동화할 수 있도록 한다. | | | 20분 | |
| | 동영상 | 2013년 또래조정 홍보동영상 (3분 48초) | | | ppt 활용 |
| | 학생 자료 |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 | | 역할 놀이 |
| | | 선택 | 또래 인권상담소 | | |
| | | 심화 | 학교폭력 사례 조정위원회 | | |
| 활동 2 | **활동2 : 교실 조각과 교실 재조각**<br>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상황을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신체로 표현하게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교실 재조각을 통해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또한 문제해결방안을 위한 실천노력들이 인권의 어떤 측면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한다. | | | 20분 | |
| | 동영상 | 교실조각(2분 22초) | | | ppt 활용 |
| | 학생 자료 | 교실 조각 및 재조각 | | |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교실조각 Q&A | | 역할 놀이 |
| 마무리 | 활동 내용 정리 | | | 5분 | |

## 도입

내 용 ▸ 활동목표와 내용 및 참여 동기 촉진
진행방법 ▸ 모둠별로 자리를 배치한다.
▸ 회기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교사멘트 :** 오늘 활동은 교실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틀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우리들일 것입니다.

오늘 활동 내용은 또래조정과 교실조각이라는 활동입니다. 또래조정과 교실조각이란 용어가 많이 생소하죠? 그래서 활동 전에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들 활동에 대해 알아본 후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개 : 활동 1

내 용 ▸ 또래조정 활동을 통해 또래화합과 갈등해결 능력을 높인다.

진행방법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동영상('13 또래조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한다.

▸ <학생 자료>(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를 함께 읽는다.

▸ 또래조정 놀이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또래조정 놀이를 한 후 <학생 활동지>를 함께 나눈다.

**교사멘트 :** 또래조정이란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친구가 도움을 주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이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또래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활동을 통해 또래조정의 장점과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동영상 시청

**2013 또래조정 홍보동영상(3분48초)**

**- 동영상 제작: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갈등해소센터, 갈등해결센터**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갈등해소센터, 갈등해결센터가 여러 학교와 함께 만든 또래조정 홍보 영상물

http://www.youtube.com/watch?v=x6Ju9u43sZQ

<또래조정 진행 절차>

1. <학생 자료>를 진행자가 설명해 준다.
   ☞ **또래조정의 수칙은 함께 읽도록 하고, 조정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2.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또래 간 갈등상황을 정한다.
   ☞ **모둠별로 주제를 정할수도 있으며, 같은 주제로 모둠별 활동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3. 조정과정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예를 들어, 차례대로 말하기, 상대방이 말할 때 끼워들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비폭력적인 언어와 행동하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상호노력 하기 등**
4. 놀이 진행 후 <학생 활동지> 하고 나누기
   ☞ **이때 진행자는 또래조정은 인권요소 중 평화권을 실천하는 행동이며, 청소년 자율권을 행동하는 활동임을 강조한다.**

학생 자료

# 교실공동체의 인권옹호자, 또래조정자!

## "또래조정(peer mediation) 이란?"

또래란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무리'이며, 조정은 갈등분쟁 상황에서 제3자가 당사자들 가운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또래조정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또래 친구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 또래조정 역할놀이 진행 방법

1. 4명이 한 조로 구성한다.
2. 갈등상황을 정한다.
   (실제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상황이나,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심화 학생 활동지>의 사례를 활용)
   예) 소문 퍼뜨리기, 험담, 별명 부르기, 약한 학생 괴롭힘, 빌려간 것 돌려주지 않기 등
3. 역할을 정한다.(조정자, 가해자, 피해자, 관찰자=기록자) -조정자가 진행한다.
4. 조정과정에서의 규칙정하기(조정자)와 동의하기(가해자와 피해자)
   규칙의 예) 차례대로 말하기, 상대방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상호노력하기 등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라는 규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나요?"
5. 갈등상황에 대해 입장별로 차례대로 말을 듣고 요약해주기
   -조정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을 듣겠습니다.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조정자는 듣고 요약하기 "지금 철수군은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말했을 뿐인데 영수군이 고자질쟁이라고 놀려서 속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다음은 영수군이 말해주시겠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상황 말하기
6. 갈등 당사자 서로가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한다.
   -조정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바라는 것 말하기
   -조정자는 듣고 요약하기
7.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말하도록 한다.
   -조정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건데요, 생각나는 모든 것을 주저 말고 말해 주세요, 단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 생각하는 해결책 말하기
8. 해결책에 대해 평가한 후 서로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한다. 그리고 조정자는 동의한 해결책을 요약해 준다.
   -조정자 두 분 모두 오해가 생겼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9. 합의문 작성하기(<기초 학생 활동지>활용)
10. 발표하기

기초 학생 활동지

# 친구야 우리가 해결하자!

▣ 또래조정 역할 놀이 후 하는 활동입니다.

1. 또래 조정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지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예) 우리끼리 해결함으로써 청소년 자율권이 보장됨

2. 또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또래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것(개인정보유출, 비밀보장 어김 등)

3. 또래조정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갈등을 우리들이 직접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또래조정은 인권요소 중 평화권을 실천하는 행동이며, 우리의 자율권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 또래조정 후 모둠별 합의문을 적어 보세요.**

## 또래조정 합의문

| | | | |
|---|---|---|---|
| 조정자 | | 조정날짜 | |
| 당사자 1 | | 당사자 2 | |

위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아 래 -

1. _____

1. _____

1. _____

1. _____

1. _____

년 월 일

당사자 1 _____

당사자 2 _____

**○ 학년 ○ 반 또래조정부**

선택 학생 활동지

# 또래 인권 상담소

**'나에게 고민을 얘기해 봐!" 진행 방법**

1. 4명 혹은 8명을 한 조로 구성한다.
2. 조별로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고민거리를 낸다.
3. 자신이 그 상황이라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각자의 대처방법이 어떤지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한다.
4. '원무지계' 전략을 통해 고민해결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 본다.

**'원무지계' 전략**

원: 원하니 것이 무엇이니?(문제의 명료화)
무: 무엇을 해봤니?
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계: (언제,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5. 계획한 것을 실행하도록 약속한다.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

1. 우리 모둠에서 나온 고민거리는 무엇이며, **'원무지계'** 전략은 무엇인가요?

2. 우리 반 친구에게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친구의 고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친구의 고민 내용을 친구 동의 없이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것

심화 학생 활동지

# 학교폭력 사례 조정위원회

**▣ 다음 사례를 읽고 조별로 아래 사례를 어떻게 조정할지 토의해 보세요.**

《사례》 학교운동장에서 두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선배를 노려봐서 선배가 그 아이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구타했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맞고 쓰러져 있는 아이들 발견하고 누가 때렸냐고 물어 보았다.

▶ 피해자

학교운동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평소에 싫어하던 동아리 선배가 지나가고 있어 노려봤다. 그 선배가 자기를 노려봤다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학교 외진 곳으로 데려가 나를 구타했다. 친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맞고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누가 때렸냐고 물어서 그냥 모르는 아이들이 때리고 도망갔다고 말씀드렸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일이 커질까봐 거짓말을 했다. 선배가 또 괴롭힐까봐 걱정된다.

▶ 가해자

학교운동장에서 동아리 후배가 놀고 있었다.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나를 째려보는 것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따라오라고 해서 학교 외진 곳으로 데려가 구타했다. 때리고 나니 뒷일이 걱정돼서 도망쳐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5). 한 번 더 생각해봐.

**▣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조정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는 무엇일까요?**

예)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사례조정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 모두에게 해명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 또래 조정과정이 청소년의 인권옹호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폭력을 유발하는 잘못된 구조와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전개 : 활동 2

내 용 ▸ 학교폭력 민감성 증진을 위한 교실조각
▸ 학교폭력의 해결 주체가 되어보는 교실 재조각

진행방법 ▸ <학생 자료>(교실 조각 및 교실 재조각)를 함께 읽는다.
▸ 동영상(가족조각 연습 동영상)을 시청을 한다.
▸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모둠별로 조각가를 뽑고 교실조각을 한다.
▸ 개개인이 조각가가 되어 교실조각을 재조각한다.
▸ <학생 활동지>을 하고 발표한다.

**교사멘트 :** '교실 조각'이란 학교폭력의 경험을 신체로 감정이나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교실 재조각'은 교실조각에서 갈등상황을 신체로 표현해 놓은 것을 이번에는 조각당한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 주체가 되어 어떻게 신체표현을 하면 학교폭력이 예방 혹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교실조각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모둠별로 조각가를 뽑아 조각가가 학교폭력을 조각한 다음, 조각당한 개개인이 어떻게 조각을 다시 하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조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동영상 시청 | |
|---|---|
| | **가족조각 연습 동영상 (2분 22초)** |
| | 학생들에게 가족조각을 응용하여 교실조각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영상을 응용하여 교실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이 신체를 통해 표현하고, 해결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체를 다시 표현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다. |
| | http://www.youtube.com/watch?v=g9J1bTtdW-o |

**<교실 조각 및 재조각 진행절차>**

1. 팀별로 역할을 정한다(조각가 1명, 학교폭력의 참여유형 중 가해자와 피해자는 1사람씩 정하고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는 팀의 구성원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되 방관자를 가장 많은 숫자로 정하도록 한다).
2.. 조각가가 조각을 하도록 한다.

> ☞ 이때 조각가는 구성원의 참여역할 유형 이름을 프린터해서 몸에 달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조각가는 구성원을 찰흙이라고 생각하고 조각가가 원하는 대로 자세, 공간위치, 얼굴표정, 손짓, 발짓 등을 과장되게 표현하도록 하고, 팀원들은 조각가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한다. 또한 조각가는 필요할 경우 책이나 의자 등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각을 완성하면, 조각 당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재조각을 하도록 한다.

> ☞ 이 때 진행자는 교실 재조각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자 개개인이 스스로 신체 표현을 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교실 재조각 시 참여자들에게 역할 변화는 할 수 없고 단지, 위치, 눈빛, 표정, 손, 발 표현 등은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준다.

4. <학생 활동지>를 하도록 한다.

5. 발표하고 나눈다.

**Tip**

- 교사가 교실조각에 대한 이해와 진행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도록 한다.
- 교실조각은 모둠별로 할 수도 있으나, 몇몇 학생을 뽑아서 할 수도 있다.
- 진행자는 조각가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역할유형6가지를 말해주고 모둠별로 역할을 정하도록 지도한다.
- 조각가는 구성원의 신체와 함께 책이나 의자 등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 활동이 장난스럽게 되지 않도록 조각하는 동안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팀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조각가가 되어보도록 한다.
- 교실조각 주제는 조별로 정할 수도 있지만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학생 자료

# 교실 조각 및 재 조각

## "교실 조각 및 재조각이란?"

'교실조각'이란 우리들이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어떤 경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말이 아닌 신체로 감정이나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해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조별로 조각가를 한 사람 뽑은 다음 조각가가 팀원들의 몸이 찰흙이라고 생각하고 얼굴표정이나 손짓, 발짓, 몸의 위치 등을 조각하는 것이다.

'교실 재조각'은 교실조각에서 갈등상황을 신체로 표현해 놓은 것을 이번에는 조각당한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 주체가 되어 어떻게 신체표현을 하면 학교폭력이 예방 혹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조각하는 것이다. 즉, 교실조각은 조각가가, 교실 재조각은 참여자 개개인이 조각가가 되는 특성을 가진다..

교실조각을 조각가가 완성하고 나면, 역할 참여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체표현을 변화시키면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 다음, 스스로 조각가가 되어 신체표현에 변화를 주어 재조각하게 된다.

**▣ 학교폭력 참여 역할유형의 교실 조각의 표현 예시**

| 학교폭력 역할 | 역할 설명 | 교실조각의 표현 예시 |
|---|---|---|
| **가해자** | 적극적 주도적으로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가는 사람 |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시늉을 한다. |
| **조력자** | 가해자의 추종자로서 가해행위를 도와주는 사람 | 가해자 옆에서 가해자가 하는 행동대로 따라 한다. |
| **강화자** | 가해자 행동을 지지해주는 사람 | 가해자를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행동을 취한다. |
| **방관자** | 학교폭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 |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학교폭력 현장을 등지고 뒤돌아 서있다. |
| **방어자** |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 |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감싸주는 행동을 취한다. |
| **피해자** | 학교폭력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 엎드려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 |

▣ 조각가는 아래 이름표를 해당되는 사람 옷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기초 학생 활동지

# 교실조각 Q&A

▣ 조각가가 질문에 답해 주세요.

| | |
|---|---|
| Q | 처음 조각 작품과 두 번째 조각 작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 A | ▸ |

▣ 조각을 당한 사람들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 | |
|---|---|
| Q | 처음 조각 당한 역할이 실제 학교폭력 역할유형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 A | ▸ |

| | |
|---|---|
| Q | 신체로 표현해본 학교폭력에서 당신이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 A | ▸ |

▣ 모두(혹은 조별)가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 | |
|---|---|
| Q | 두 번째 조각된 작품의 제목을 인권과 연결하여 지어 보세요.<br>그리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 | ▸ |

## 마무리

내 용 ▸ 활동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진행방법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다음 활동을 소개한다.

**교사멘트 :** 오른 활동 내용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학교폭력을 또래조정과 교실조각을 통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관련 개인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방관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또래조정자로, 혹은 해결 주체로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줄 때 학교폭력은 예방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활동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우리 교실에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호 존중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ip

- 학생들에게 마무리 시간에 교실조각 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TV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마무리 활동을 하면 프로그램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단 촬영을 할 때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 가족 활동지를 과제로 부여하여 가정에서의 상호존중 경험을 촉진시킨다.

교사 자료 1

# 또래조정이란?[12)]

## Ⅰ. 또래조정 이해

### 1. 또래조정과 또래조정자

- 또래조정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또래 친구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임.
- 학생들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왕따를 당하는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고, 그 해결에 대해서도 그 또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또래 학생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전에 조기에 개입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또래중재를 최초로 실시한 미국의 롱아일랜드 브라이언트 고등학교에서 또래중재의 중재 성공률은 86% 정도로 전문 중재의 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함.

**▣ 또래조정의 장점(코엔)**

- 또래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종합 학습으로 실제로 갈등 해결 성공률이 90%를 넘는 학생 주도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 또래조정은 학생들에게 읽고, 쓰고, 셈하기라는 기본적인 문해 능력 이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갈등해결 능력을 가르친다.
-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서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돋운다.
- 학교의 교육적 영향력을 제고시킨다.
-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식을 건설적으로 하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시킨다.
- 자아존중감을 강화한다.
-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기대한다.
- 학교의 평화와 인권문화 환경을 증진시킨다.
- 또래조정은 갈등 해결을 학교 상황에 아주 잘 맞도록 최대로 조화를 이루는 문제해결 기제를 제공한다.

### 2. 갈등 해결 교육과 또래조정

1) 갈등해결교육

-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르침.
- 의사소통 기술, 분노/감정 조절, 다양성과 다른 의견 존중, 문화 이해, 협상 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을 함양함.

2) 또래조정 프로그램

- 학생들에게 갈등 해결 기술과 조정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갈등을 스스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

3) 평화교육

- 평화교육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평화교육은 폭력을 유발하는 잘못된 구조와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교육임.

12) 학급 내 또래조정자를 위한 '또래조정자 수첩'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ttp://stopbullying.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3. 평화교육/갈등 해결 교육/ 또래조정의 초점

· 주입식 교육이 아닌 비판적 문제제기식 교육
· 현재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 방법을 찾는 대안 교육
· 일방적 교육이 아닌 참여자 중심의 참여 교육
· 당장의 행동 변화보다는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가치 교육
· 폭력적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 교육

### 4. 또래조정 프로그램의 목표

· 갈등과 갈등 해결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향상시킴.
· 학교 폭력과 징계 문제를 감소시킴.
· 학교 분위기를 개선함.
· 사회 적응력과 예비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킴.
· 학생들의 학습 수행력을 증가시킴.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 교육.

## Ⅱ. 조정의 원칙

### 1. 조정(Meditation)이란 무엇인가?

· 영어에서 중재를 뜻하는 meditation의 'med'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으로 meditation은 가운데 있다는 뜻임.
· 조정은 갈등 분쟁 상황에서 3자가 당사자들 가운데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함.
· 즉 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3자가 개입해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이며 따라서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함.
·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갈등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관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 조정의 특성

1) 조정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과정
· 조정이 성립되려면 우선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함.
· 학교에 또래조정이 제도화되어 있다면 갈등 상황에서 교사나 학생, 또래조정자가 조정을 권할 수 있겠지만, 그 조정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권은 갈등 당사자에게 있음.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과정임.
·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가진 문제와 생각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을 당사자들 스스로 함께 찾아내고, 함께 결정함.
·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 그 결정에 대한 책임과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음.

2) 더 말하고, 들을 수 있음
· 조정은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함께 갈등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직면한 갈등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임.
·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소통하지 못함. 강한 감정이 앞서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등등 실제 원하는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함.
· 그래서 더더욱 표현은 가시가 돋혀 거칠어지고, 소통을 통해 함께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관계 단절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경우도 나타나기 쉬움.
· 조정 과정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에 관해, 상대에 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이 되며, 자신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 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줄이며 문제 해결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일 때 더욱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음.

3) 승패가 아니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내올 수 있음
· 조정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객관적 진실을 탐구하는 자리가 아님.
· 즉 조정은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나 요구를 각각 이정하고 이에 근거한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임.
· 그래서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은 각각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들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

**3. 조정자?**
· 당사자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합의에 도달하는 협상 과정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돕는 중립적인 사람임.
· 조정을 하는 동안 조정자는 '중간 입장'에 서 있어야 함. 조정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됨. 두 갈등 당사자가 조정자가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느껴야 조정과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임. 조정자의 중립성이 조정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됨.

**4. 조정의 3원칙**
1) 중립성(Neutrality, Impartiality)
· 조정자의 중립성은 조정의 성립에 중요한 원칙임.
· 조정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2) 자율성(Voluntariness, Autonomy)
· 갈등 해결의 주체는 갈등 당사자이고 결정권도 당사자에게 있음.
· 스스로의 의지로 합의, 결정했을 때 실행력도 커짐.
3) 비공개(Confidentiality)
·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묵은 오해나 감정, 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함.

출처: 교육부(2013.05.30). 또래조정서포트연수기본과정교재

교사 자료 2

# 학급 단위 또래조정 운영지침

**❑ 학급 단위로 또래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발과정에서 유의할 점**

1. 학급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선발해야 함
2. 다양한 문화와 계층을 대표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함
3. 모범적이거나 성적이 높은 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
4.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움을 좋아하는 학생도 포함하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5. 조정자가 되려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6. 반에서 1~2명의 또래 조정자를 지원, 추천, 선출에 의해 선발함
7. 교사는 또래조정자 계약서, 학부모 허락 서신, 또래조정자 임명장 등을 준비함

**❑ 학급 단위에서 또래조정자 선발과정**

1. 학생들의 또래 조정 지원 또는 급우들의 추천
2. 선발위원회(담임, 반장, 부반장 등으로 구성)에 의한 선발
3. 급우들에 의한 선거를 통한 선출

**❑ 교사가 또래 조정자를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학급 공고를 낸다.**

**또래조정자, 어떤 학생이 적합한가?**

1. 친구를 돕고 싶은 사람
2.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3.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5. 자기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
6. 친구들에게 신뢰받는 사람
7. 비폭력문화의 학교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사람
8.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
9. 새로운 것에 탐구심이 있는 사람
10.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긍정적 변화를 하고 싶은 사람

**신청서**

___학년 ___반 _____는 학급 또래조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저는 위의 조건 중 ___,___,___,___,___ 번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 학급 단위 또래조정 운영지침 만들기 (예시)**

1. 학급 또래조정위원회 구성 (예: 담임교사, 반장, 부반장, 또래조정자 1~2명)
2. 학교분쟁 해결절차 및 또래조정 세부절차 확정
3. 또래조정 시기, 장소, 시간 등의 확정 (예: 분쟁발생 후 절차, 상담실, 방과 후 등)
4. 조정자 선발과 참여자 규칙 (예: 조정자 선정과 규칙, 역할과 기술 등)
5. 또래조정자 처우 (예: 봉사활동 인정 등)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2012).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

교사 자료 3

# 교실조각이란?

**교실조각은 가족치료기법 중 하나인 가족조각(Family Sculpting)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가족조각은 가족 구성원들과 물건 등을 사용하여 가족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가족 간의 정서적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동과 감정을 표현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위치에 가족 구성원들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배치시키면 마치 '살아있는 가족 초상화'를 그리는 것 같이 가족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 기법은 말 대신 몸으로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어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나친 언어화, 방어 및 비난적인 투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 기법은 교실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학급은 각 구성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들끼리 형성하는 개별적인 관계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급 구성원들이 교실조각을 연출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에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학급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법을 행하는 동안 학급을 하나의 단위로 결속시켜준다. 동시에 학급구성원들로 하여금 교실 조직 내의 각자의 어떤 경험을 찾아내고 관찰하고, 해석하게 되면 학급으로부터 자신만의 경험을 분리시켜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상황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교실에서의 친구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교실조각은 유용할 수 있다. 교실조각은 또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학생개개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교실조각은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미묘한 감정문제를 알아볼 수 있으며, 교실에서 발생한 폭력상황을 실제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을 가진다.

**교실조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학급구성원 모두에게 '우리들이 학급 내에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사용목적을 설명해준다. 모든 학급 구성원은 자기가 보는 학급의 모습을 가족조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은 차례대로 나머지 구성원들을 한 사람씩 자기가 이해하는 교실의 학교폭력 모습에 따라 배치시킨다. 이렇게 학급 구성원들을 배치하다보면 구성원들의 자세나 구성원들 간의 공간적 관계성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구성원들은 조각가가 배치한 위치에 있다 보면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된다. 조각가는 구성원들이 마치 찰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하고 찰흙으로 조각하듯이 구성원들의 신체를 움직여서 공간배열, 생동감, 정서적 원근감을 나타내도록 지시한다. 다른 방법은 조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구성원들을 비언어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조각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 작업할 때 치료자는 조각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자세를 취하여 준다. 조각가는 조각이 마음에 들 때 까지 구성원들의 위치나 자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때 조각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조각가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차례가 되면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둔다. 조각작업 후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급모습을 조각해볼 수도 있다.

위 내용은 김영애 역(2006). '부부·가족치료기법'에서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함

가족 자료 1

# 가족갈등을 조정 받고 싶어요!

## "가족갈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국번 없이 1577-9337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자동연결이 됩니다. 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시간을 협의한 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상담은 신청 후 첫 상담이 진행되기까지 짧게는 약 일주일, 길게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대기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기시간은 지역 센터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상담을 예약할 때 반드시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위원과 전화로 간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면접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의 장점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 내 문제를 가족상담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별한 심리검사(MBTI, 적성검사 등)를 저렴한 검사료를 내고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표 참조)

## 풀기 어려운 가족갈등 어디서 도움 받나?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권역 | 센터명 | 전화 | 권역 | 센터명 | 전화 |
|---|---|---|---|---|---|
| 중앙 | 건강가정진흥원 | 02-3140-2200 | 서울 |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79-3501 |
| 서울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71-0812 | 서울 |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065-3400 |
| 서울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06-2017 | 서울 |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35-4142 |
| 서울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8-8167 | 서울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279-3891 |
| 서울 |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764-3524 | 서울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76-3761 |
| 서울 |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797-9184 | 서울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78-2193 |
| 서울 |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43-3844 | 서울 |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290-1660 |
| 서울 |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395-9447 | 서울 |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576-2852~3 |
| 서울 |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22-7595 | 서울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2-5482 |
| 서울 |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599-3301 | 서울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57-0760 |
| 서울 |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95-6800 | 서울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03-7747 |
| 서울 |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30-0450 | 서울 |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458-0622 |
| 서울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83-9390 | 서울 |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987-2567 |
| 서울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3412-2222 | 인천 |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508-0121 |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이어서>

| 권역 | 센터명 | 전화 | 권역 | 센터명 | 전화 |
|---|---|---|---|---|---|
| 인천 | 남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467-3904 | 인천 |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5-851-2730~3 |
| 인천 |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547-1017 | 인천 | 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2-932-1005 |
| 인천 |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932-1005 | 인천 |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875-2993 |
| 인천 |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763-9337 | 인천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569-1545 |
| 광주 | 광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959-9337 | 광주 | 광주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351-9337 |
| | | | 광주 | 광주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430-2963 |
| 광주 |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369-0072 | 광주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234-5790 |
| 경기 |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503-0070 | 경기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008-8018 |
| | | | 경기 | 평택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615-3956 |
| 경기 | 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429-8931 | 경기 | 이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637-5525 |
| 경기 | 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98-1737~8 | 경기 |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90-2966 |
| 경기 |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56-3874 | 경기 |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75-5957 |
| 경기 | 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677-9336 | 경기 | 연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35-0093 |
| 경기 | 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17-4522 | 경기 |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58-5681 |
| 경기 |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63-3801 | 경기 |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23-7131 |
| 경기 |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88-8524 | 경기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245-1310 |
| 경기 |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267-8787 | 경기 | 포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32-2062 |
| 경기 |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949-9161 | 경기 |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78-7117 |
| 경기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78-9766 | 경기 | 여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86-0321 |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경기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55-9327 |
| 경기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26-4212 | 경기 |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90-8213 |
| 경기 |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996-5920 | 경기 |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92-1811 |
| 경기 |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2615-0453 | 경기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969-4041 |
| 경기 | 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510-5871 | 강원 | 영월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3-375-8400 |
| 강원 |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3-681-9333 | 강원 |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3-764-8612 |
| 강원 | 삼척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3-576-0761 | 강원 |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 강원 | 속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3-639-2680 | 강원 | 양구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3-481-8665 |
| 부산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203-4588 | 부산 |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802-2900 |
| 부산 |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782-7002 | 부산 | 영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414-9605~7 |
| 부산 | 사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28-0042 | 부산 |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513-2131 |
| 부산 |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851-5002 | 광역 |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70 |
| 부산 |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758-3073 | 대구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355-8042 |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이어서>

| 권역 | 센터명 | 전화 | 권역 | 센터명 | 전화 |
|---|---|---|---|---|---|
| 대구 | 대구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471-2326 | 대구 | 달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3-636-7390~1 |
| 대구 |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795-4300 | 대구 | 대구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431-1230 |
| 대구 |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593-1511 | 대구 | 대구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327-2992 |
| 충북 | 진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43-537-5435 | 충북 |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3-857-5960 |
| 충북 |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3-645-1995 | 충북 |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3-263-1817 |
| 충북 |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41-332-1366 | 충북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1-548-9772 |
| 충북 | 서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41-953-3808 | 충남 | 홍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41-631-9337 |
| 충남 | 보령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1-934-3133 | 충남 |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41-670-2523 |
| 충남 |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1-733-7800 | 충남 | 공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1-853-0881 |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00 | 충남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1-360-3200 |
| 전북 | 정읍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535-1283 | 전북 | 남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631-6700 |
| 전북 | 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61-1033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182 |
| 전북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838-6046 | 전북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443-5300 |
| 전남 | 장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61-395-2244 | 전남 | 구례군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 전남 | 완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61-555-4100 | 전남 | 장흥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61-864-4813 |
| 전남 | 해남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61-534-0215~6 | 전남 |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247-2311~1 |
| 전남 |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797-6800 | 전남 |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750-5352~5 |
| 전남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690-7159 | 경북 | 상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4-531-3543 |
| 경북 | 청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4-373-8131 | 경북 | 의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4-832-5404 |
| 경북 | 영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4-636-5435 | 경북 | 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4-431-7740 |
| 경북 |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4-443-0541 | 경북 |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4-823-6008 |
| 경북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4-244-9702 | 경북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4-975-0833 |
| 경남 |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5-573-8400 | 경남 | 창녕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5-533-1305 |
| 경남 | 하동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5-8806521 | 경남 | 산청군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 경남 | 창원시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 055-244-8745 | 경남 | 함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5-963-2057 |
| 경남 | 통영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5-640-7740 | 경남 |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5-749-2385 |
| 경남 |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5-356-8765 | 경남 |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5-329-6355~6 |
| 경남 |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 055-266-8335 | 제주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5-8005 |
| 제주 |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60-6485 | 광역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2-252-9989 |
| 광역 | 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4-862-9336 | 광역 |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2-274-3136 |
| 광역 |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70 | 울산 | 울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52-229-9620 |

가족 활동지 1

# 우리집 갈등 조정자는 누구?

## "갈등이란?"

葛(갈)藤(등)은 칡덩굴(갈)+등나무(등)의 합성어로 등나무 덩굴을 말한다. 즉, 칡덩굴이나 등나무덩굴처럼 우리의 마음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생각, 주장, 이해관계 등이 서로 부딪치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갈등이란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사람, 혹은 둘 이상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의견의 불일치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전쟁처럼 큰 것일 수도 있다. 갈등은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여러 복잡한 고민거리들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 학교에서도 갈등은 늘 일어나는 정상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갈등이 생길 때 싸우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종종 친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든다. 반면, 갈등을 잘 다루게 되면 문제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데이비드 존슨 외 저, 추병완 역(2000). 갈등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백의.

**▣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과 우리 가족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우리 가족이 원하는 가족 갈등 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활동지 2

## 가족조각

### "가족조각이란?"

가족조각은 가족 구성원들과 물건 등을 사용하여 가족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가족 간의 정서적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동과 감정을 표현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위치에 가족 구성원들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배치시키면 마치 '살아있는 가족 초상화'를 그리는 것 같이 가족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 기법은 말 대신 몸으로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어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나친 언어화, 방어 및 비난적인 투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 기법은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조각가가 되어 평소 조각가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신체로 표현해 보세요. 조각가는 조각된 내용을 설명하고 가족원의 생각을 들어 보세요.

▣ 가족조각 후 조각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을 다시 조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가족 상호 간의 원하는 바를 나누어 보세요.

▣ 가족조각에서 나타난 우리 가족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토의해 봅시다.

▣ 가족이 성장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듈 2

# 6회기 :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

❍ 활동 목표

-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상호 존중한다.
- 인권 존중교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알게 한다.
-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 주체는 학생 스스로임을 인식하게 한다.

❍ 활동개요

- 대상인원 : 반 인원 전체
- 장　　소 : 교실
- 소요시간 : 45-50분
- 준 비 물 : 필기도구, 학생 자료 및 활동지 프린트물,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동영상)

❍ 주요내용

- 협력과 화합을 위한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인권 노래 개사하기 및 노래자랑
- 인권존중교실을 만들기 위한 20초 퍼즐 맞추기 및 6행시 짓기
- 인권 존중교실을 만들기 위한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 만들기 및 친구 존엄성 적기

❍ 유의사항

- 동영상은 기초와 심화 활동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활동에 맞게 선택하도록 한다.
- 노래 개사하기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동영상(귀요미 송)에는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신고내용으로만 개사를 할 수 있으므로 진행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인권적 관점에서 개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노래 개사는 제공되는 동영상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20초 퍼즐 맞추기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기대효과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 인권 존중교실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활동과정 개요

| 단계 | 주요활동내용 | | | 소용시간 | 비고 |
|---|---|---|---|---|---|
| 도입 | - 학습활동 설명과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br>- 4인(혹은 8인) 1 모둠으로 자리배치를 미리 해둔다. | | | 5분 | |
| 활동1 | **활동1 : 인권 노래자랑**<br>협력과 화합의 활동으로 학교폭력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교실을 만드는 노래를 개사해보고 모둠별로 인권 노래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 | | 20분 | |
| | 동영상 | 기초 | 학교폭력 예방 귀요미송 (4분 26초) | | ppt 활용 |
| | | 심화 | 교실에서 찾은 희망 (3분 32초) | | ppt 활용 |
| | 학생 자료 | 심화 | '교실에서 찾은 희망' 노래 가사 | | ppt 활용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인권노래자랑 | | 노래 개사를 통한 노래자랑 |
| | | 선택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4컷 만화 그리기 | | 그리는 방법은 선택 학생 활동지에 제시 |
| | | 심화 | 교실에서 찾은 인권 | | 합창 경연 대회 |
| 활동 2 | **활동2 :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br>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과 인권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없는 인권 존중교실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증진한다. | | | 20분 | |
| | 학생 활동지 | 기초 | 웰컴 투 인권존중교실! | | 20초 퍼즐 정답 p.180에 제공 |
| | | 선택1 | 화해와 존중의 '애플데이' | | 친구에게 사과편지 쓰기 |
| | | 선택2 |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 | | 교사자료 제공됨 |
| | | 심화 | 존엄한 너에게! | | 진행순서는 학생 활동지에 제시됨 |
| 마무리 | 활동 내용 정리 | | | 5분 | |

## 도입

내　　용 ▸ 활동목표와 내용 및 참여 동기 촉진
진행방법 ▸ 4인(혹은 8인)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회기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교사멘트 :** 오늘 활동은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입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노래 개사를 통한 노래 경연대회와 인권 존중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ip**

- 모둠 구성원은 교실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 모둠 구성은 프로그램 활동 전에 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전개 : 활동 1

내 용 ▸ 노래 개사 및 인권 노래자랑

진행방법 ▸ 활동 내용을 설명한다.
▸ '귀요미 송' 동영상을 시청한다.
▸ 모둠별로 노래를 개사한다.
▸ 활동이 마무리되면 모둠별로 노래를 발표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직접 노래를 평가하도록 한다.

**교사멘트 :**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래 가사를 바꾸어 노래자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동영상을 시청한 후 모둠별로 간단한 노래를 정해 개사를 해보고 노래 경연대회를 진행해보는 활동입니다. 모둠별로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Tip**

- 노래는 동영상의 '귀요미 송'으로 해도 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자발적으로 정하면 참여 동기를 더욱 높일 수 있다.
- 노래 경연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선택 활동지를 통해 '4컷 만화' 그리기를 해볼 수 있다.
- 기초 및 선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수원중부 학교폭력 예방 귀요미 송)은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폭력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신고 내용만으로 노래개사 및 4컷 만화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 동영상 시청 | |
|---|---|
| **수원중부 학교폭력 예방 귀요미송 (4분26초) - 동영상 제작: 경기도 경찰청** | **World Vision Korea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송 (3분 32초) - 동영상 제작: 한국월드비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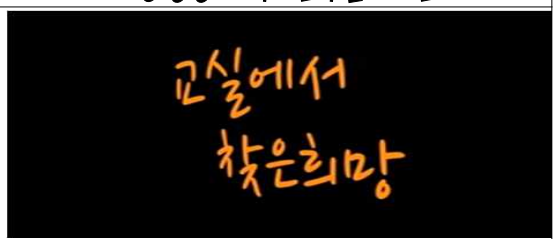 |
| 경기도 경찰청에서 귀요미송을 학교폭력 예방 주제로 개사하여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으로, 2분40초까지 듣고 활동 가능합니다. <기초 및 선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 한국월드비전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만든 캠페인 송으로 노래 가사를 보여주니, 몇 차례 반복해서 함께 불러보고 대회를 개최하세요. <심화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
| http://www.youtube.com/watch?v=PNkz5b6IC38 | http://www.youtube.com/watch?v=ns7-CtidMWM |

기초 학생 활동지

# 인권 노래자랑

▣ 위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권옹호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을 주제로 모둠별로 노래 가사를 개사해 봅시다. 귀요미 송이나 그 외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를 활용하고, 개사 후 모둠별 노래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노래제목 | |
|---|---|
| 가사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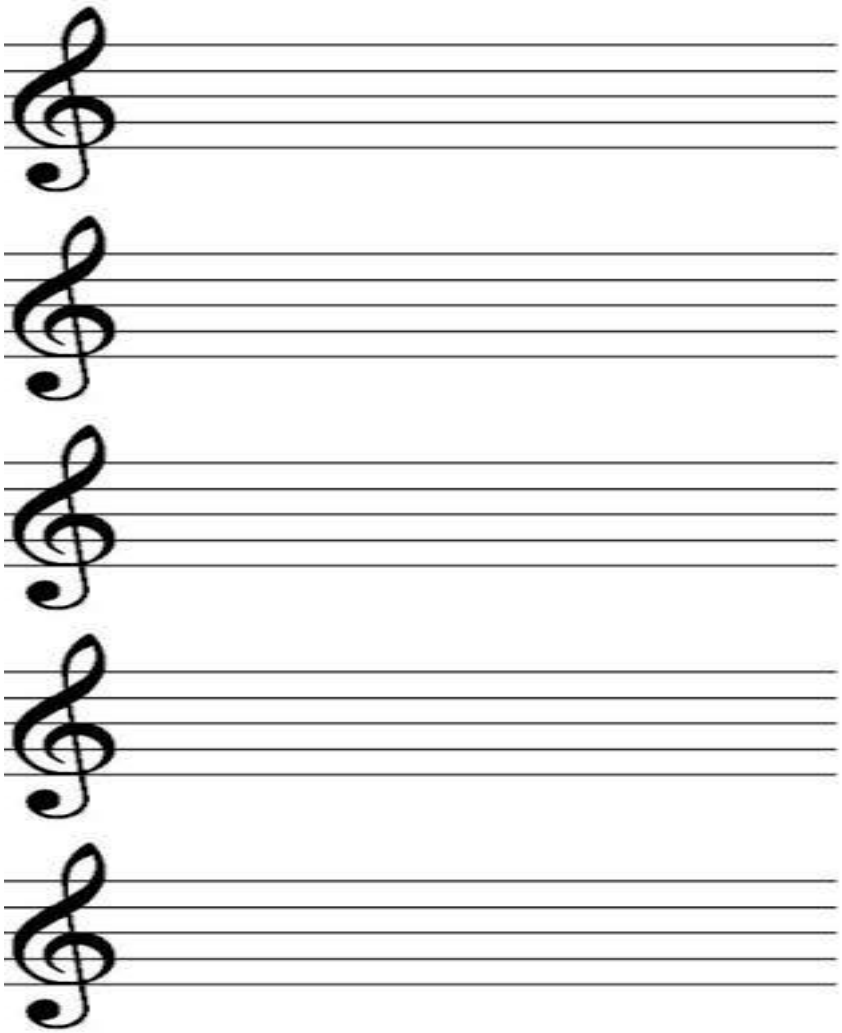 |

선택 학생 활동지

# 학교폭력 예방 4컷 만화

▣ 위의 동영상 시청 후, **'인권옹호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을 주제로 4컷 만화를 그려 봅시다.

| 제목: | |
|---|---|
| ① | ② |
| ④ | ③ |

*** 그리는 방법**

1. ① → ④로 연결되게 그린다.
2. '①은 상황 -> ②는 그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감정 -> ③은 인권옹호활동으로 해결 -> ④는 해결 후 해결의 싸인' 순으로 그린다.
3. 번호에 2의 내용이 각각 부각되게 그린다.

학생 자료

# 교실에서 찾은 희망(노래가사)

▣ **<심화 학생 활동지>를 위한 동영상 "교실에서 찾은 희망" 노래 가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가사와 함께 노래를 불러 본 다음 모둠별로 합창 경연대회를 열어 보세요. 율동을 곁들이거나 개사를 해서 활동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 '교실에서 찾은 희망' ♬ 노래 가사

**(1절)**

1.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교실을
너와나 함께 두 손 잡고 만들어 봐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 oh

2.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서로가 다르다고 차별 하지 말아요.
서로 열린 맘으로 차이를 인정한다면
이해할 수 있죠

3. 조금의 관심이면 모두 행복해져요
우리가 밝은 세상 만들어 봐요.
친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기
이제부터는 무관심해 지지 말아요.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할거에요

4. 조금의 관심이면 모두 행복해져요
우리가 밝은 세상 만들어 봐요.
넌 나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가득 넘치는 교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요

5. 넌 나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가득한 학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며
너와 나 우정을 나눠~ (영원히)

**(2절)**

1. 친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기
이제부터는 무관심해 지지 말아요.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할거에요

2. 조금의 관심이면 모두 행복해져요
우리가 밝은 세상 만들어 봐요

심화 학생 활동지

# 교실에서 찾은 인권

▣ 동영상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시청하면서 <학생 자료>에 제공된 노래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난 후 하는 활동입니다.

▣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 자료>의 '교실에서 찾은 희망' 노래 가사를 **'교실에서 찾은 인권'** 이란 제목으로 모둠별로 개사를 해보세요.

| ♬ '교실에서 찾은 인권' 노래 가사 ♬ | |
|---|---|
| 1절 | 2절 |

## 전개 : 활동 2

내　　용 ▸ 20초 깜짝 퍼즐 맞추기, 6행시 짓기,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 존엄한 너에게

진행방법 ▸ 활동 내용을 설명한다.

▸ 20초 퍼즐 맞추기를 한다.

▸ 6행시 짓기를 한다.

▸ 6행시 짓기를 가장 잘한 조를 학생들이 뽑도록 한다.

**교사멘트 :**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중에 친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친구가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늘 가까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서로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Tip

- 20초 퍼즐 맞추기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180p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 20초 퍼즐 맞추기는 처음에는 짧은 문장을 낸 다음, 긴 문장 순으로 제시한다.
- 6행시 짓기는 다른 주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은 스스로에게 줄 수도 있으며,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을 지정해서 줄 수도 있다.
- 애플데이 활동은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학교폭력으로 힘들었을 친구에게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 애플데이 활동에서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적을 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 참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존엄한 너에게'의 진행방법은 <심화 학생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다.

**<20초 퍼즐의 정답>**

1번 정답: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2번 정답: "작은 관심 커다란 힘"

3번 정답: "너와 나 우리 모두 소중한 친구"

4번 정답: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기초 학생 활동지

##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

# "20초 퍼즐 맞추기"

▣ 아래 퍼즐의 문장을 20초 안에 맞추어 보세요.

## '인권 존중교실' 6행시 짓기

▣ 6행시를 지어 발표해 봅시다.

인 –

권 –

존 –

중 –

교 –

실 –

선택 1 학생 활동지

# 화해와 존중의 '애플데이'

## "애플데이란?"

애플데이(Apple Day)란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정한 날로 매년 10월 24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 하고 화해하는 날입니다.

애플데이가 필요한 이유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나로 인해 마음 아팠을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징표로 사과를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학교 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충청남도교육청(2012). 방관자 없는 용기 있는 학교문화 만들어요.

▣ **학급에서 나로 인해 마음 아팠을 친구 혹은 학급 내 따돌림을 당한 친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한 사과편지를 적어보고 전달해 보세요.**

선택 2 학생 활동지

##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

# 인권 수호천사 임명장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위 사람은 우리 학급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지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을 다짐하는
인권 수호천사로 임명합니다.

**- 인권 수호천사의 다짐 -**

- 나는 _____
- 나는 _____
- 나는 _____
- 나는 _____
- 나는 _____

년 월 일

인권 수호천사 : 인

## 국가인권위원회

심화 학생 활동지

# 존엄한 너에게!

## < 진행 순서>

1. 4명(혹은 8명)명이 한 모둠이 되어 빙 둘러 앉는다.
   (둘러앉기가 어려울 경우 책상을 마주보게 하여 진행한다.)
2. 마음을 정돈하고 숙연한 자세를 유지한다.
3. 모둠원 모두가 참으로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4. 다른 사람들을 존엄의 눈으로 평가한다.
5. 활동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6. 활동지를 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옆 사람에게 돌린다.
7. 활동지에 적힌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님은 참으로 존엄해'라는 형식으로 적어준다. (단, '~하기 때문에' 라는 문장은 반드시 세 가지 이상을 기술한다.)
8. 이런 방식으로 모둠원들이 돌아가며 활동지의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의 존엄함을 적어준다.
9. 모둠원들이 적어준 자신의 존엄함의 내용을 읽고 느낌과 소감을 발표한다.
10. 일어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맞절을 한다.(목례로 대처해도 된다.)

## 존엄한 _____를 평함

예) "늘 먼저 인사해주는 점을 보아(혹은 ~ 때문에) 철수님은 참으로 존엄해"

"학교폭력으로 힘든 친구에서 먼저 말을 건네는 점을 보아 영수님은 참으로 존엄해"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b).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내용을 참고함

## 마무리

내 용 ▸ 활동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진행방법 ▸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팀별로 손을 맞잡고 “친구야 사랑해!”라고 말하도록 한다.

**교사멘트 :** 오늘 활동은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곁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인권을 지키는 행동가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평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인권 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야 사랑해’라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진행자는 모둠 구성원들이 양손으로 옆 사람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한 다음 곁에 있는 친구에게 웃으면서 ‘친구야 사랑해’라고 소리 내에 말해보도록 지도한다***). 지금 마음처럼 친구들을 아껴주고 인권이 존중되는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단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Tip

- 마무리 활동 소감을 질문하여 학생들의 느낌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활동이 마무리 된 후에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여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 가족 자료 및 가족 활동지를 통해 가정 내에서도 화합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교사 자료

## 인권 수호천사 되는 길

# '인권 수호천사 되는 길'

**인권 수호천사가 되는 1단계!**

**남을 괴롭히는 친구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1.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친구가 놀림을 당할 때 같이 웃지 않는다.
3.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인권 수호천사가 되는 2단계!**

**남몰래 도와주는 것입니다.**

4. 괴롭힘 당한 친구에게 친절한 말과 태도를 대한다.
5. 괴롭히는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다.
6.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인권 수호천사가 되는 3단계!**

**친구들과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혼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한다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7. 괴롭힘 당한 친구와 함께 어울린다.
8. 공개적으로 괴롭힘 당한 친구 편을 들어준다.

*No innocent Bystander! (죄 없는 방관자는 없다!)*

학급 및 학교의 평화를 지키는 인권 수호천사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출처: Coloroso, B., Harper Collins.(2003). The Bully, the bullied, and the bystander.
Fried, S. & Fried, P.(1996). Bullies and Victims, Evans and Company.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5). 한 번 더 생각해봐. 교육과학사

가족 자료

## 소중한 우리 가족

###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한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인연과 그리고 우연히 필요하다. 내가 태어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대충 계산해 보자.

**아버지+어머니=2명**
**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4명**
**할머니의 부모+할아버지의 부모+외할머니의 부모+외할아버지의 부모=8명**
**(2명+4명+8명+16명 …… 약 5000천년을 기준으로 3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계산식은 1700항 정도까지 더해야 한다.)**

내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연이 필요했는지를 짐작이 가는가? 내 몸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조상들의 모든 유전자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노력들 또한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신 나는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나에게 미친 인연을 단순히 혈연관계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조상 전체가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에, 그것의 도움을 받아 나의 혈연적 관계도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과 노력이 응축된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전달된 것이다.

나의 삶은 자연적 섭리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수만은 기적의 산물이다.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나라는 생명체가 수정될 확률은 25억분의 1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도 주변작용이 미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 모른다. 나는 수많은 기적의 산물이다.

나의 삶이 후손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노력들은 모두 나의 유전자와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나의 삶은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 출발점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일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 사람이 곧 하늘이다.

**가족 활동지 1**

## 존엄의 눈으로 보는 우리 가족

▣ 6회기 <가족자료>를 읽고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보세요.

▣ 가족이 함께 모여 아래 활동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행방법>
- 가족 수대로 아래 활동지를 복사하여 가족 이름을 적어 둔다.
- 이름이 적힌 가족에게 "~때문에 ○○는 존엄하다."라고 적는다.
  (적어도 5가지 이상 적기)
- 돌려가면서 종이에 적힌 가족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적는다.
- 다 적은 뒤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눈다.

### 존엄한 우리 가족인 _____를 평함

예) "엄마가 아픈 것을 알고는 쓰레기를 먼저 버려줘서(혹은~때문에) 우리 아들은 참으로 존엄해"

가족 활동지 2

## 인권 100%의 우리 가족

▣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인권이 충만한 가족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지 적어 보세요.(빈 종이를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 충만 모습을 적어보고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 "인권 100%의 우리 가족 모습" | |
|---|---|
| 아빠의 모습은? | 엄마의 모습은? |
| 자녀 ○○의 모습 | 자녀 ○○ 모습 |

▣ 인권 100%의 가족 실현을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 생활 실천을 다짐해 보세요.

| "인권 100%의 가족 실현을 위한 나의 인권생활 실천 다짐" | |
|---|---|
| 아빠의 인권생활 지침 | 엄마의 인권생활 지침 |
| 자녀 ○○의 인권생활 지침 | 자녀 ○○의 인권생활 지침 |

가족 활동지 3

## 가족 '애플데이'

### "가족 애플데이란?"

애플데이(Apple Day)란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정한 날로 매년 10월 24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 하고 화해하는 날입니다.

애플데이가 필요한 이유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나로 인해 마음 아팠을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징표로 사과를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학교 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충남교육청(2012). 방관자 없는 용기 있는 학교문화 만들어요.

가족 애플데이 역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 및 비난을 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반성하고 '나로 인해 힘들고 마음 아팠을 가족'에게 사과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중 '나로 인해 힘들고 마음 아팠을 사람'에게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적어 보세요.**

# 참고문헌

## 문헌


경기도교육청(20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자료집.

경기도교육청(2013.2.6.).

경상남도교육청(2012). 함께 여는 인권교실. 꿈나르미 경남교육.

경상북도교육청(201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실천 우수 사례집.

경향신문(2011.12.27.). 잘못된 집단주의가 왕따 원인.

교육부(2013.05.30). 또래조정 서포트 연수 기본과정교재.

곽금주(2008).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55-272.

관계부처합동(2013.7).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9).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5a).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2005b).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5c).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국가인권위원회(2011a).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2011b).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2012a).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2012b).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인권, 꽃을 피우다.

국가인권위원회(2012c).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2013). 인권교육표준교안PPT.

국민일보(2004.1.29.). 혼혈아 왕따, 자살 비행 급증.

권재기(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김병진(2012.11). 핀란드의 키바 코엘루(KiVa Koulu) 프로그램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김영애 역(2006). '부부·가족치료기법'.

김재엽, 이근영(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김재엽, 이근영(2010b).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대구신문(2012.9.26.). 진정한 어른의 위치 찾을 때 학교폭력 멈출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201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 사례집.
데이비드 존슨 외 저, 추병완 역(2000). 갈등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백의.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김현옥(2012). 아동청소년복지론.
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피해자 상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3), 703-722.
문화관광부(1998.10.25.). 함께 여는 인권교실.
박종효(2008). 미국의 학교폭력 위기개입 전략. 문용린 외 저 (2008).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박재연(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1), 345-375.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난 아픈데 넌 장난?' ppt자료
법무부, 교육과학부(2012). 아픔 없는 우리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 ppt자료.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5). 한 번 더 생각해봐. 교육과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2013.1.4).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세계일보(2012.1. 6.). 입 다문 아이들.
송재홍, 김광수, 박성희, 안이환, 오익수, 은혁기, 정종진, 조봉환, 홍종관, 황매향(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지사.
엄명용, 송민경(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3**(1), 241-266.
웹진인권(2010.5). 살색은 없어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06).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
윤보나, 유형근, 권순영(2009).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공감 중심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8**(4), 171-183.
윤선애(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교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성우, 이영호(2007). 집단 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271-292.
이은희, 손정민(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 -탄력성 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2), 149-171.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3).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조유진(2011).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과 권리, 15**(1), 67-88.

조정실, 차명호(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서울: 학지사.

주수길, 주명국(2010). 아동복지강론. 경기도 파주시: 양서원.

진태원(2008). 학교폭력 치료상담. 문용린 외 저 (2008).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011년 학교폭력 실태 발표 및 대책강화 촉구 기자회견 - 실태현황 및 특징.

충청남도교육청(2012). 2012 방관자 없는 용기있는 학교문화 만들어요. 학교폭력 힐링 학생봉사동아리 운영 매뉴얼.

최성애, 조벽(2012). 교사를 위한 감정코칭

하연희(2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2.6). 관계부처합동.

한국교육개발원(2013.2). 2012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

한국청소년상담원(2012).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

허미경(2008). 역할극을 활용한 중학생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2), 37-52.

허승환(2013). 교육연수원 자격 및 직무연수 강의 자료.

홍봉선, 남미애(2011). 청소년복지론. 경기도 고양시: 공동체.

홍봉선, 아영아(2012).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청소년 인권감수성의 관계, 2012 위기청소년 지원관련 세미나.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Coloroso, B., Harper Collins.(2003). The Bully, the bullied, and the bystander.

Flannery, D. J., Wester, K. L., & Singer, M. L.(2004).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559-573.

Fried, S. & Fried, P.(1996). Bullies and Victims, Evans and Company.

Klein, D. M. & White, J. M. 저, 김종천 역(2000). 가족이론. 대학출판사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Satir, V.(1972). Peoplemaking. Science & Behavior Books, Inc. Palo Alto; CA.

Sherman, R. & Fredman, N.저, 김영애 역(2006). 부부·가족치료기법,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인터넷 사이트 및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blog.naver.com/bakbht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사이트 http://www.stopbullying.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EBS 지식e채널 home.ebs.co.kr/jisike

<1회기>
- 국가인권위원회
  http://edu.humanrights.go.kr
- 그림출처 http://cafe.daum.net/sunghwachildren/DcDV
- 우리에겐 인권이 있어요!, (2006.9.6.). 초등학생용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우보우(視友保友). 인권과 평화의식.
  http://youtube.com/watch?v=7XF5xRv6L0k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 최소한의 목록, (2010.11.29.). 박계영. 지식채널e,
  http://www.youtube.com/watch?v=7d-z4VIyqmw

<2회기>
- 공존동생, 共存同生 (2012.7.12.). 프로덕션.
  http://www.youtube.com/watch?v=Xck0NgMfXGI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당신이 했던 차별, 당신이 받았던 차별. (2011.3.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
- 코미디에 빠지다-편견제로(2013.3.26.).
  http://www.imbc.com/broad/tv/ent/comedyfall
- 학교폭력 예방 페이퍼모션 UCC (2012.1.23.) 4기법사랑서포터즈 드리울. UCC,
  http://www.youtube.com/watch?v=ySX_PiBSZI4
- 학교폭력 vs. 장난. (2012.10.16.).
  http://youtube.com/watch?v=pYP9GssyYzM

<3회기>

- 대전교육청(2013.1.10). 너희는 왜 침묵했니?
  http://stopbullying.or.kr/index.php?mid=education_office_data&category=646&page=3&document_srl=245081
- 우리에게 남은 것. (2012.11.28.). 제3회 사회통합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http://www.youtube.com/watch?v=_evfKxPaUBs,
  http://stopbullying.or.kr/index.php?mid=education_office_data&category=646&page=3&document_srl=245081

<4회기>

- 없음

<5회기>

- 가족조각 동영상(2011.10.3.).
  http://www.youtube.com/watch?v=g9J1bTtdW-o
- 2013 또래조정 홍보동영상-중고등학생용(2013.9.10.)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갈등해소센터, 갈등해결센터.
  http://youtube/x6Ju9u43sZQ

<6회기>

-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송. (2013.9.2.). World Vision Korea.
  http://www.worldvision.or.kr
- 학교폭력 예방 귀요미송(2013.4.25.) 수원중부경찰서 청소년계.
  http://www.youtube.com/watch?v=PNkz5b6lC38

제3부

# 부록

## <부록 1> 세계인권선언문

#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인류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일들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열망하는 것은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 공포와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왔으면 하는 것이다. 폭정과 억압에 대항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법치에 의해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들끼리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 존엄과 가치,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를 누리며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생활수준을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 유엔 회원국들도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것을 서약했다. 그런데 이러한 서약을 제대로 지켜가려면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유엔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사회가 이 서약을 항상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적, 국제적 조취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하며 동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지킬 권리,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모든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그리고 형사상 혐의를 받을 때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직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서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피난하거나 망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

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2) 성인 남녀는 혼인을 할 때,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며,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로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업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 보장 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쉬워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장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지킬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또는 민주 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에게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부록 2>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와 제24조),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격”(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 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2 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나.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라.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 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 빈곤아동, 고아 등을 위한 회교국의 위탁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 해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지정이 입양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아가 인격을 존중 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아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안을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를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의학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영아와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다.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

기 위한 조치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산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2.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규정들

을 확립해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나.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 연장자부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무력분쟁 하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 받은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나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않는다.

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 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는다.

(2)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적 지원 및 다른 적절한 지원 하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지체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나이나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충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4. 아동복지측면에서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 받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해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그 후 사무총장은 후보를 지명한 당사국 표시와 함께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해 협약당사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5.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 다수 표 및 절대 다수 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이루어진 진전상황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해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해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다른 유엔기구들에게 그들의 활동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이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해당보고서를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그 외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51 조**
1. 유엔사무총장은 비준이나 가입 시 각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52 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문을 접수한 날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 53 조**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진 이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했다.

## <부록 3> 인권영화 및 TV 프로그램 목록

인권영화

| 제목 | 감독 | 각본 | 상영시간 | 제작방식 |
|---|---|---|---|---|
| BomBomBomb | 김곡 | 김선 | 21분 | |
| 동물농장 | 권오성 | | 15분 | 클레이/퍼펫 애니메이션 |
| 험난한 인생 | 노동성 | 노동성 | 15분 | |
| 샤방샤방 샤랄라 | 권미정 | | 17분 | 2D디지털 애니메이션 |
| 배낭을 맨 소년 | 정지우 | 정지우 | 26분 | |
| 이빨 두 개 | 강이관 | | 27분 | |
| 육다골대녀 | 이애림 | 이애림 | 10분 | 디지털컷아웃 애니메이션 |
| 그녀의 무게 | 임순례 | 임순례 | 23분 | |
| 사람이 되어라 | 박재동 | 박재동 | 10분 | 2D 애니메이션 |
| 진주는 공부 중 | 방은진 | 방은진 | 30분 | |
| 달리는 차은 | 김태용 | | 35분 | |
| Bully (원제: The Bully Project) | Lee Hirsc | | 98분 | |
| 그랜토리노 (원제: Gran torino) | Clint Eastwood | | 116분 | |
| 인어베러 월드 (원제: In a better world) | Clint Eastwood | | | |
| 고백 | 나카시마 테츠 | | 106분 |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박종원 | | 119분 | |
| 돼지의 왕 | 연상호 | | 96분 | 애니메이션 |
| 학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 원해수 | | | |

출처: 구본권·김민아·김현진·신윤동욱·여균동·조윤호(2012). 별별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TV 특집 프로그램

| 방영 TV | 프로그램명 | 제목 | 방영일 |
|---|---|---|---|
| KBS | 특별생방송 | 우리아이들이 위험하다(1부, 2부) | 2012년 1월 11일 |
| | 행복한 교실 | 도 넘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새로운 비상구를 찾다 (1~4부) | 2012년 1월 4일, 11일, 18일, 25일 |
| | 추적 60분 | 학교가 제일 미워요, 폭력을 방치하는 학교 | 2012년 2월 8일 |
| | 스페셜 | 교실 속 거짓말 같은 이야기 | 2012년 3월 18일 |
| | 학교폭력 | 교육이 답이다(1부, 2부) | 2012년 5월 16일, 23일 |
| MBC | PD수첩 | 학교폭력, 10대들의 권력 구조 | 2012년 2월 23일 |
| | 스페셜 | 10대 감정보고서, 위기의 아이들 | 2012년 3월 23일 |
| EBS | 60분 부모 | 왕따, 학교폭력을 말하다(1부, 2부) | 2012년 1월 9일, 10일 |
| | | 비상대토론(1부, 2부) | 2012년 1월 20일 |
| | 특별 생방송 | 학교폭력 예방, 실천이 중요하다 | 2012년 2월 15일 |
| | 특집 | 세계의 교육현장 독일, 학교 안에 답이 있다 | 2012년 2월 26일 |
| | 특집 | 세계의 교육 현장 독일, 위기 청소년의 새로운 가족, 하임 | 2012년 2월 26일 |

출처: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편(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지사.

#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 개발 :
#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연구과정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프로그램을 검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자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강은주 (동평여자중학교),
김정숙 (부산참교육 학부모회),
임애정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원형은 (부산인권상담센터),
홍봉선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와주신 보조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정수연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학과)
김지원 (신라대학교 가족·노인복지학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병록 (명진중학교 교장),
김경자 (명진중학교 국어교사),
이신영 (명진중학교 도덕교사)

**도와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금명여자고등학교
명진중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부

##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